

#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 :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나원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오윤해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 노혜진 | 강서대학교 교수        |
|       |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       | 황안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보고서 2025-55

###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공감과어울림 세종인쇄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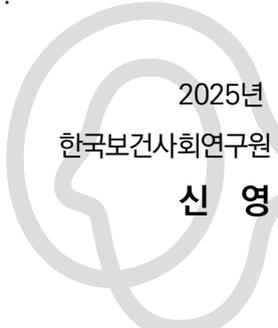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30-1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55>

---

## 발|간|사

최근 청년층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 전세사기, 코인 등 다양한 개인, 사회적 요인으로 시작된 부채가 취업 지연과 불안정 노동, 낮은 소득 수준과 연결되어 장기 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단순한 개인의 금융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단순한 부채 경감 수단이 아닌,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투자형 사회보장정책으로 재조명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오윤해 박사,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박사, 황안나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김영룡 법무사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한상휘 상담관이 채무조정제도의 특성과 청년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과 발표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FGI 및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전문가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청년층의 금융취약성 완화와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포용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                                       |           |
|---------------------------------------|-----------|
| 요 약 .....                             | 1         |
| <b>제1장 서론 .....</b>                   | <b>5</b>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7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11        |
| <b>제2장 이론적 배경 .....</b>               | <b>13</b> |
| 제1절 분석대상 .....                        | 15        |
| 제2절 채무조정제도 소개 .....                   | 25        |
| <b>제3장 청년의 금융현황과 신용특성 .....</b>       | <b>41</b> |
| 제1절 분석자료 .....                        | 43        |
| 제2절 청년의 대출 및 연체 현황 .....              | 56        |
| 제3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 금융변화 .....           | 85        |
| 제4절 소결 .....                          | 95        |
| <b>제4장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의 효과 분석 .....</b> | <b>99</b> |
| 제1절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                | 101       |
|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과 비이용 청년 특성 .....     | 113       |
|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 125       |
| 제4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상세 특성 .....         | 134       |
| 제5절 소결 .....                          | 140       |

---

|   |            |
|---|------------|
| <b>제5장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의 질적 분석</b> .....      | <b>143</b> |
| 제1절 FGI 설계 .....                          | 145        |
| 제2절 채무조정제도의 한계 .....                      | 147        |
| 제3절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                     | 161        |
| 제4절 소결 .....                              | 190        |
| <br>                                      |            |
| <b>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b> .....              | <b>193</b> |
| 제1절 요약 .....                              | 195        |
| 제2절 정책적 제언 .....                          | 200        |
| <br>                                      |            |
| <b>참고문헌</b> .....                         | <b>205</b> |
| <br>                                      |            |
| <b>부록</b> .....                           | <b>211</b> |
| [부록 1]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설문지 ..... | 211        |
| <br>                                      |            |
| <b>Abstract</b> .....                     | <b>247</b> |

# 표 목차



|   |    |
|---|----|
| 〈표 2-1〉 기존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                     | 20 |
| 〈표 2-2〉 청년보장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분석 매트릭스 .....           | 24 |
| 〈표 2-3〉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 31 |
| 〈표 2-4〉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                          | 32 |
| 〈표 2-5〉 청년 채무조정 주요 내용 .....                       | 33 |
| 〈표 2-6〉 성과지표 .....                                | 34 |
| 〈표 2-7〉 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 36 |
| 〈표 3-1〉 분석대상 모수 현황 .....                          | 45 |
| 〈표 3-2〉 통계청 장래 인구수 대비 분석대상 모수 현황 .....            | 46 |
| 〈표 3-3〉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                      | 47 |
| 〈표 3-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        | 49 |
| 〈표 3-5〉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현황 추이 .....                   | 50 |
| 〈표 3-6〉 연령별 신용체크카드 개설 현황 추이 .....                 | 52 |
| 〈표 3-7〉 연령별 햇살론카드 개설 현황 추이 .....                  | 53 |
| 〈표 3-8〉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55 |
| 〈표 3-9〉 대출 보유 현황 .....                            | 56 |
| 〈표 3-10〉 대출 보유 건수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58 |
| 〈표 3-11〉 금액대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59 |
| 〈표 3-12〉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61 |
| 〈표 3-13〉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 순위(2024년 12월 기준) .....     | 63 |
| 〈표 3-14〉 서민금융 종류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64 |
| 〈표 3-1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66 |
| 〈표 3-16〉 고위험 대출 현황 .....                          | 67 |
| 〈표 3-17〉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68 |
| 〈표 3-18〉 장기연체 현황(90일 이상) .....                    | 73 |
| 〈표 3-19〉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74 |
| 〈표 3-20〉 금액대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76 |

|  |     |
|--|-----|
| 〈표 3-21〉 연체종류별 연체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77  |
| 〈표 3-22〉 연체 해제 현황 .....                              | 79  |
| 〈표 3-23〉 채무불이행 등록 현황 .....                           | 80  |
| 〈표 3-24〉 채무불이행 보유 대출금액 현황 .....                      | 81  |
| 〈표 3-25〉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83  |
| 〈표 3-26〉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대출액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85  |
| 〈표 4-1〉 본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                         | 105 |
| 〈표 4-2〉 성과지표의 종류와 설정 방법 .....                        | 108 |
| 〈표 4-3〉 표본의 구성 .....                                 | 111 |
| 〈표 4-4〉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내용 요약 .....     | 112 |
| 〈표 4-5〉 1년 전 채무자의 재무·심리 상태와 연속형 성과지표의 집단별 기초통계 ..... | 121 |
| 〈표 4-6〉 이항변수 형태 성과지표의 기초통계 .....                     | 122 |
| 〈표 4-7〉 통제변수의 기초통계 .....                             | 123 |
| 〈표 4-8〉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 .....            | 129 |
| 〈표 4-9〉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I .....           | 130 |
| 〈표 4-10〉 다양한 모형에서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효과의 추정치 비교 .....         | 131 |
| 〈표 4-11〉 각 성과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종류 .....          | 133 |
| 〈표 4-12〉 성과지표별 채무조정 이용효과 추정값과 해석 .....               | 141 |
| 〈표 5-1〉 FGI 구성과 운영 .....                             | 146 |
| 〈표 5-2〉 FGI 질문지 .....                                | 147 |
| 〈표 5-3〉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와 한계 .....                         | 148 |
| 〈표 5-4〉 금융취약청년 및 재기지원 이용자의 통합지원모델을 위한 방안 .....       | 162 |
| 〈표 5-5〉 예방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                     | 167 |
| 〈표 5-6〉 기존 채무조정제도 및 사업의 장점 .....                     | 169 |
| 〈표 5-7〉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 .....                            | 177 |
| 〈표 5-8〉 전반적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                        | 182 |
| 〈표 5-9〉 통합적 지원과 연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 190 |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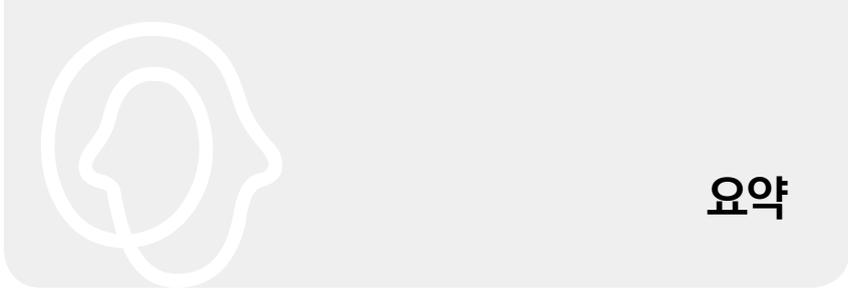


|   |     |
|---|-----|
| [그림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                        | 9   |
|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                            | 12  |
| [그림 2-1] 청년 취약 유형 개수에 따른 취약 유형 출현율(%) .....       | 21  |
| [그림 2-2] 개인회생 절차 .....                            | 28  |
| [그림 2-3] 개인채무조정 절차 .....                          | 30  |
| [그림 2-4]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절차 .....                 | 40  |
| [그림 3-1]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55  |
| [그림 3-2]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70  |
| [그림 3-3] 청년(29~34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    | 71  |
| [그림 3-4] 40대(40~49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   | 72  |
| [그림 3-5]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      | 88  |
| [그림 3-6]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  | 89  |
| [그림 3-7]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 90  |
| [그림 3-8]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 91  |
| [그림 3-9]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        | 92  |
| [그림 3-10]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   | 93  |
| [그림 3-11]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 94  |
| [그림 3-12]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 95  |
| [그림 4-1]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대출 .....   | 114 |
| [그림 4-2]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월소득 .....  | 115 |
| [그림 4-3]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소비성향 ..... | 116 |
| [그림 4-4]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고용지표 변화 .....            | 117 |
| [그림 4-5]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심리·건강지표 변화 .....         | 118 |
| [그림 4-6]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사회·가족지표 변화 .....         | 119 |
| [그림 4-7] 상세특성 1: 심리·사회적 경험 .....                  | 135 |
| [그림 4-8] 상세특성 2: 대출용도 (복수응답) .....                | 137 |
| [그림 4-9] 상세특성 3: 연체해결 방식 (복수응답) .....             | 138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4-10] 상세특성 4: 연체 미해결자의 재정상태 ..... | 139 |
| [그림 5-1]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설계 .....    | 163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정책은 형평성과 사회적 보호를 증시하는 정책 영역으로 단기적 효율성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정책의 본질적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애이행과 사회참여 기반 강화를 증시하는 사회투자적 관점이 확대되면서, 부채 부담, 고용 불안, 사회적 고립 등 경제·사회적 위험이 증첩된 청년의 금융취약성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는 주로 단기적 재정성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통합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를 사례로 하여, 해당 제도가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자립에 미치는 효과를 사회투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데이터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등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청년의 금융현황과 신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0~2025년 한국평가데이터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신용개설, 대출, 연체, 채무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FGI)를 결합한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다중대출 보유 비중이 높고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생활·진입형 금융에

## 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장기연체 증가 폭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3년 미만의 중기 연체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5년 이상 장기연체 비중이 높은 등 연령대별 연체 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고용상태 개선, 근로시간 증가, 소득 회복 가능성 등 경제적 성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와 사회참여 의식, 가족관계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채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자립 의지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청년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도 접근성 부족, 복잡한 절차, 사회적 낙인, 사후지원 체계의 미흡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채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사후적 채무조정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투자형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금융취약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 법률지원 강화와 개인회생 절차의 표준화, 채무조정 이후 금융교육·고용지원·심리상담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채무조정 이력과 신용회복 경로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 성과를 신용회복, 재연체 감소, 고용복귀 등 사회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채무조

정제도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재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금융취약청년,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청년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치 지향적 성격을 지니며 비효율성을 감수하면서도 형평성과 사회적 보호를 증시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기의 성과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보다는 사회보장 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단기적, 양적 지표로 평가하는 기존의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강영철, 이종환, 2010; 강영철, 박경돈, 2009; 원종학 등, 2010; 오윤섭 외, 2017, p.1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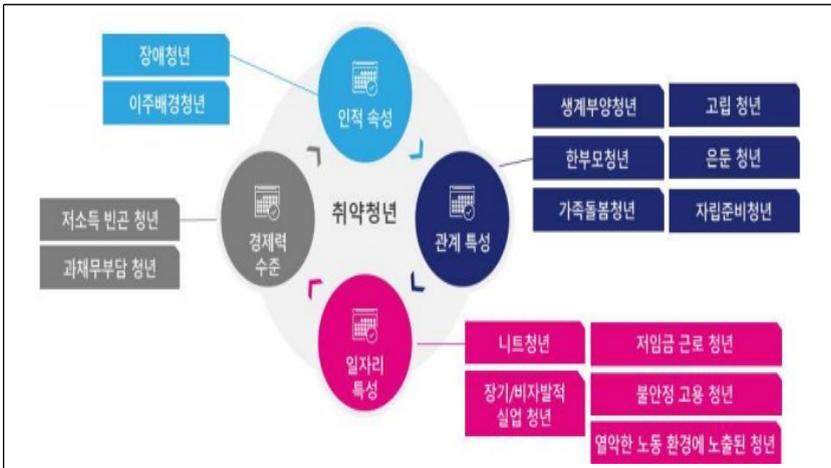
사회보장정책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강영철, 박경돈, 2009; 오윤섭 외, 2017, p.36에서 재인용). 첫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은 투입-활동-결과 간의 인과성 구조를 증시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목표관리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강조한다. 투입과 과정의 합법성보다는 결과 지향을 위해 필요한 관리의 재량과 새로운 관리방식이 강조된다(강영철, 박경돈, 2009; 오윤섭 외, 2017, p.36에서 재인용). 둘째, 사회개발론적 접근은 단순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생산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주목한다. 인간개발과 인적자본투자, 고용증진을 위한 투자, 사회적 자본 투자, 개인과 공동체의 자산에 대한 투자, 경제적 참여에 대한 장애

제거 투자,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식을 강조한다(강영철, 박경돈, 2009; 오윤섭 외, 2017, p.37에서 재인용). 셋째, 사회투자적 접근은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회통합과 삶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중시한다. 사회투자정책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서비스 생산영역과 총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영역으로 구분하고 특히 전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강조한다(오윤섭 외, 2017, pp.37~38). 전통적인 복지는 소외계층의 생활수준, 안전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와 관련하여 생존적인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지원 성격이 강하다(오윤섭 외, 2017, p.42). 반면에 사회투자적 성격이 강한 복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주류로서 경제활동에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은 고용에 적합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경제활동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오윤섭 외, 2017, p.42).

이러한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청년은 미래 사회와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야 할 세대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차원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의 취약성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고용 불안, 주거 빈곤, 과중한 부채, 관계 자본의 결핍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김성아 외, 2023, pp.15~16). 특히 금융취약청년의 경우, 부채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 상호작용하며 생애이행 과정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청년의 금융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순한 부채 경감이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경제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회복시키는 사회적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채무조정제도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주로 단기적 재정성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투자 효과 즉, 경제활동 역량 회복·사회통합·생애 전환 지원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출처: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김성아 외, 20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16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성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층의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보장정책의 평가체계에 투자적 관점을 반영하는 보다 확장된 분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목적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이 주로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 대응에 집중해 왔다면 최근에는 청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성과와 장기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투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그 효과를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단기적·경제적 중심 평가방식만으로는 중장기적 사회성과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부채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부채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삶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제도는 여전히 도덕적 해이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의 사회적 효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사회투자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병행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 신용평가데이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경감, 소득 및 고용 변화, 신용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성분석에서는 제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그룹인터뷰(FGI)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제도의 사례, 삶의 질 변화, 운

영상 한계와 개선 과제를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취약 청년 채무조정제도를 단순한 채무구제 정책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재기, 사회적 자립, 정신건강 회복,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회투자적 사회보장정책으로 바라보고 그 효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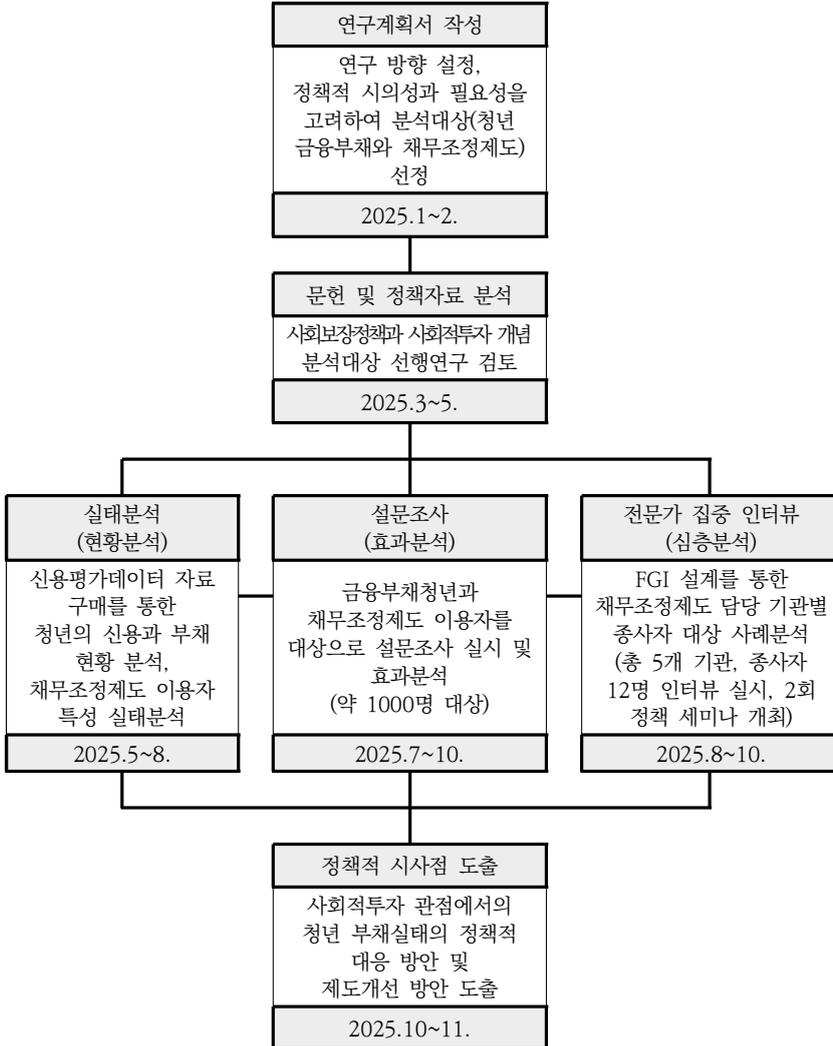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금융취약청년 채무조정제도의 사회적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사회적투자와 금융취약청년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채무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여 본 연구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다음으로 현황 분석에서는 전국민 대상 신용평가데이터를 활용하여, 타 연령과 다른 청년의 부채실태와 장기연체 현황 등 금융취약성의 실태를 파악한다. 청년이 금융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이용청년과 미이용 청년 간, 그리고 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과 차별화된 청년의 경제적 효과(부채 경감, 소득·고용 변화, 신용 개선 등), 사회적 효과(생활 안정, 사회 참여, 가족관계 등), 심리적 효과(스트레스 완화, 자립 의지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제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정량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투자 관점의 금융취약청년 채무조정제도의 다차원적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1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분석대상

제2절 채무조정제도 소개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분석대상

#### 1. 사회적투자 개념과 신사회적 위험군

##### 가. 사회적투자(Social Investment) 개념<sup>1)</sup>

‘사회적투자’는 저출산·고령화, 신빈곤의 출현과 사회적 양극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을 과거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김연명 외, 2009, p.553). 김연명 외(2009)에 따르면, 미래의 복지정책 방향은 세입과 지출을 강조하는 전통적 사민주의(Traditional Social Democracy) 정책에서 탈피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달성이라는 전통적 접근보다는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포용의 원칙을 강조한다(김연명 외, 2009, p.553).<sup>2)</sup>

현재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가 경험하는 사회문제는 과거와 명

- 
- 1) 김연명 외, (2009),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집. 참고하여 작성함.
  - 2) 이 답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노동당이 추진해온 복지개혁을 특징짓는 용어로서, 크게 3가지 맥락에서 기원을 추적할 수 있음.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1994년 영국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재집권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노동당이 사회정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인 「사회정의: 국가재건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음(김연명 외, 2009, p.554). 학문적으로는 1998년 제기된 기든스의 제3의 길 논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1997년 현 노동당 집권을 기점으로 하여 추진된 온 일련의 복지개혁 정책을 지칭함.

백한 차이를 보인다. 베버리지 세대가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 중 빈곤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의 문제는 그간의 복지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현대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가족 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의 변화, 신빈곤층의 출현과 사회적 배제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였다(김연명 외, 2009, p.557).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라는 베버리지식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였다(김연명 외, 2009, p.557).

김연명 외(2009)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사회적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문제이다. 둘째,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사회계층간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셋째, 가족 기능의 변화이다. 베버리지 세대가 상정했던 고전적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을 두었지만, 이러한 복지국가 성장전략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자녀양육, 노인부양 등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다른 곳(남성, 사적 부분, 국가 등)에서 찾도록 요구한다(Esping-Andersen, 1999: ch.4, 8; 김연명 외, 2009, pp.558~559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신빈곤의 출현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이다.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국가 간 경쟁시스템의 강화를 수반한다. 개별 국가는 국제자본을 유치, 지속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조세부담률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에 비해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

약되는 노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술발달과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 등 불안전성에 노출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장애와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의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Mishra, 1999; Esping-Andersen, 2002; Rieger & Liebfried, 2003; 김연명 외, 2009, p.560에서 재인용).

Bonoli(2005)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여성과 청년, 저숙련자(women, the young and the low skilled)를 제시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구철회 외, 2019, p.9에서 재인용). 실제로 청년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청년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여서 국내 연구에서도 최근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확산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분류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청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김태완 외, 2023, p. 15). 2025년 10월 기준 20대(20~29세) 청년 실업률은 5.8%에 달하고<sup>3)</sup>, 중장년층(40대와 50대)의 실업률과 비교하여 약 3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업과 일자리의 낮은 질 문제 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주거 빈곤,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이어지며(박수명, 2013; 전병주, 2013; 이태진 외, 2016), 새로운 빈곤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주정, 2015). 그뿐만 아니라 청년이 경험하는 위험은 청년 1인

3)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 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20~29세 연령의 실업률은 2015년 9.0%, 2020년 9.0%, 2024년 5.8%인 것으로 나타남. 30~39세 연령의 실업률은 2015년 3.1%, 2020년 3.5%, 2024년 2.7%이며, 40대와 50대 연령대도 2015~2024년 사이 약 2%대 수준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검색일: 2025.10.10.).

을 넘어 청년이 속한 가족의 위협으로, 그리고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미래의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기에 그 심각성의 더욱 크다(김영란, 2014; 구철회 외, 2019, p.9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보장제도의 안전망 또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언론과 학계에서는 은둔·고립 청년, 영케어러(young carer), 경제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 외국인 근로자, 1인 가구(특히 노인), 과다 채무가구, 정서적 취약계층 등을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는 청장년층으로 근로연령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근로연령 대상 소득보장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신사회적 위험군 “금융취약청년”

김태완 외(2023)는 현세대 청년이 경제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와 달리,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청년세대를 설명하는 사회적 담론은 양가적이다. 한편으로는 ‘MZ세대’, ‘소확행’ 등 자기주도적이고 소비문화에 민감한 세대로 묘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N포세대’, ‘헬조선’과 같은 용어로 대변되며 사회·경제적 좌절과 불안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담론은 청년세대가

과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태완 외, 2023, p.48).

최근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다중채무자와 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증가이다. 연령별 가계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10명 중 약 3명이 20대 청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년층 부채 확대의 배경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상징되는 자산시장 참여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곽윤경 외, 2022). 이는 단순한 투기적 행태가 아니라, 구조적 소득 불평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0점(전혀 심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심하다)으로 평가하는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6.82점을 기록하였으며, 소득 대물림에 대한 인식은 7.23점으로 나타나 부모 세대의 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정세정 외, 2025, p.25). 이처럼 심화된 불평등 인식 속에서 청년층은 미래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무리한 금융 레버리지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과도한 대출은 자산 가치 하락과 부채 부담의 동시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청년층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중시킨다(김태완 외, 2023, pp.62~63).

청년의 부채는 대체로 불안정한 소득, 고용 불안, 주거비 부담, 사회진입 지연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형 부채의 성격을 띤다. 즉, 단기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생계 유지, 학업 지속, 가족 부양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금융취약청년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중첩된 복

합적 취약성(complex vulnerability)을 동반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금융취약청년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년의 금융 취약성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며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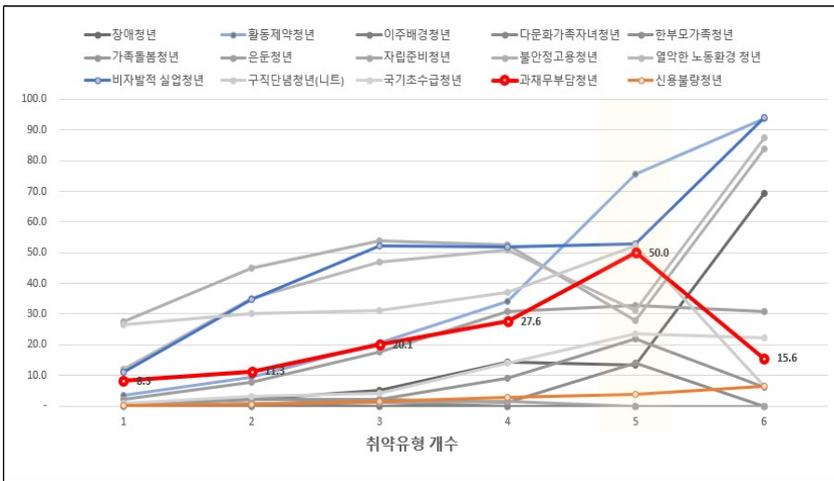
〈표 2-1〉 기존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 구분                  | 조작적 정의   | 활용지표   |
|---------------------|--|--|
| ① 상환 능력 대비 채무 과중 여부 | 가구원 1인당 총채무액, 순부채 비율, 소득 대비 지출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등이 활용된다(Betti, Dourmashkin, Rossi & Yin, 2007). d'Alessio와 Iezzi(2013)는 이탈리아 은행 연구에서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30% 혹은 50%를 초과하거나, ▲무담보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거나, ▲상환 후 잔여소득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 과중채무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에 따른 기준선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활용 가능 (30% 혹은 50% 이상의 경우 금융취약청년) |
| ② 연체·채납 경험          |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해외 문헌에서는 금융취약성 측정의 대표 지표로 사용된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et al., 2008). 유럽연합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 2020)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친인척 차입, 생활요금 등에서 두 건 이상 연체한 경우를 금융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  | 연체 일수 and 연체 건수                              |
| ③ 다중채무 보유 여부        | 한국은행(2021)은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3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차주를 금융취약자로 정의한다. 이는 이탈리아 은행 및 여러 해외 연구에서 금융취약성을 식별하는 방식 중 하나로도 활용된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 소득수준 and 신용점수 and 3건 이상 채무보유                 |
| ④ 정책적 지원 여부         |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취약군으로 식별할 수 있다(노혜진 외, 2022; 백아름 외, 2022; 신규수, 2019; 탁장한·박정민, 2017). Dobbie & Song(2020)은 미국 비영리기관 MMI의 채무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금융취약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보았다.   |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

출처: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김성아 외, 2023, pp. 13~14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김성아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개의 취약성을 경험하는 청년이 31.1%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며, 2개의 취약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11.4%, 3개의 취약성은 3.1%로 취약 유형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범주의 청년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 출현율이 높지 않더라도 취약 유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복합 취약 청년의 비중이 적지 않다(김성아 외, 2023, p. 39).

[그림 2-1] 청년 취약 유형 개수에 따른 취약 유형 출현율(%)



출처: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김성아 외, 2023, p.41. <표 3-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2-1]에서 다중 취약성을 의미하는 ‘취약 유형 5개 집단’을 살펴 보면, 활동제약청년(75.5%), 비자발적 실업청년(52.9%), 구직단념청년(52.1%), 과재무부담청년(50.0%)의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은둔청년(32.8%), 열악한 노동환경 청년(31.0%), 불안정

고용청년(27.7%) 역시 5개의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이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다중 취약성을 지닌 청년은 활동 제약이나 실업 상태를 중심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사회적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과채무부담청년은 단순히 부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아니라, 실업·불안정 고용·사회적 고립 등 다른 취약 요인과 밀접하게 결합한 다차원적 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부채로 인한 상환 압박과 신용 악화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지연되거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한정되는 등 경제적 회복력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청년의 생애이행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다.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청년보장제도 평가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보장 제도는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청년이 경험하는 위험 역시 핵심 사회적 위험으로 다루지 못해 왔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반성과 정책적 대안으로 2013년 유럽연합(EU)은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해당 제도는 EU 전체 회원국으로 확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3; 구첵희 외, 2019, p. 1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자산형성, 참여·권리 등에 대한 영역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청년사회보장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과 공통

점을 가진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모든 청년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부터, 저소득·장애·이주배경 등 취약성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구철회 외, 2019, p.10). 한편 청년사회보장은 기존 사회보장이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청년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진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제공, 취업 연계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과 차별성을 가진다(구철회 외, 2019, p.11).

유럽연합은 유럽사회기금(ESF)과 청년고용이니셔티브(YEI)를 통해 청년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1억 유로(약 19조 6,383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집행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원과 별도로 개별 회원국 역시 청년보장제도 추진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3)는 청년보장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0.5~1.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구철회 외, 2019, p.87 재인용). 한편 ILO는 2017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청년보장제도 운영 국가들과 공동으로 청년보장제도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Social Cost-Benefit Analysis, SCBA)을 위한 주요 평가요소를 논의하는 협력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청년보장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분석 매트릭스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7, <표 4-3>; 구철회 외, 2019, p.87 재인용). 이후 이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유럽연합(EU) 및 개별 회원국은 청년보장제도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 대비 산출된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 및 NEET(비취업·비교육·비훈련) 문제 완화를 통해 창출된 사

회적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구철회 외, 2019, pp.86~87)

〈표 2-2〉 청년보장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분석 매트릭스

| 구분 |                 | 산출식  | 자료원                |
|----|-----------------|--|--------------------|
| 편익 | 복지지출 감소         | (청년보장제도 수혜자 중 고용된 인원수(순효과))×(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연간 복지급여 수령액 차이)×(고용 유지기간 또는 생애 근로연수) | YG 효과추정치, EU SILC  |
|    |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 (청년보장제도 수혜자 중 고용된 인원수(순효과))×(연평균 납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고용 유지기간 또는 생애 근로연수)      | YG 효과추정치, EU SILC  |
|    | 산출(경제효과)        | (청년보장제도 총투입비용)×(케인즈 승수 효과, Keynesian multiplier)                             | 청년보장제도 행정자료        |
|    | 건강              | (고용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삶의 질 변화)×(삶의 질의 가치)                                   | EU SILC            |
|    | 반사회적 행동 감소      | (NEET 비율의 변화)×(반사회적 행동 탄력성)×(연간 반사회적 사건 수)×(사건당 사회적 비용)                      | 행정자료(경찰 등), EU LFS |
|    | 사회통합            | (정부가 청년 수혜자에게 이전한 총 금전적 이전액(순효과))×(소득 재분배 효과 추정치)                            | EU SILC            |

출처: “청년층 사회보장 강화방안 연구,” 구철회 외, 2019, p.87.

이와 같이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는 행정통계와 사회조사자료 (EU-SILC, EU-LFS 등)를 연계하여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제도 단위로 행정자료가 분절되어 있고, 고용·복지·보건 등 영역별 데이터 간 연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Social Cost-Benefit Analysis, SCBA)을 통해 청년보장정책의 종합적 효과를 산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보장제도 매트릭스의 핵심 산출요소인 △복지지출 절감 △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건강 수준 개선(QALY) △반사회적 행동 감소 △사회통합 효과 등은 중·장기적 관찰과 개별 정책효과의 파급경로 추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 수준의 장기 패널데이터가 제한적이며, 청년정책 수혜자별 고용·소득·건강·심리 변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체계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며,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제2절 채무조정제도 소개

### 1. 채무조정제도

#### 가. 채무조정제도의 개요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각 제도는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 조정과 사적 조정으로 구분된다.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로 채무조정 효과가 발생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노혜진, 2025, p.118).

## 나. 공적 채무조정제도

법원에 따른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최장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신용회복위원회, n.d.-d).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 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신용회복위원회, n.d.-d).

개인회생제도는 신청과정에서 5가지 자격요건이 있다. 첫째,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둘째,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래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신용회복위원회, n.d.-f).

개인회생의 절차는 [그림 2-2]와 같이 신청서 제출 → 법원의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면책 결정의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과정에서 청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행하기도 한다. 수임료를 제외한 신청 비용으로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고 기본 10회분 송달료를 부담하

며,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한다. 또한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n.d.-b).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에 관한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연간 총 129,498건이다.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서울회생법원에서 관할 법원 사건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4년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2,324건 중 39세 이하 청년의 신청 비중이 전체 신청자 중에서 41.8%를 차지한다(서울회생법원, 2025b, p.4). 이들의 채무액은 20대는 약 6,407만원, 30대는 8,999만원 수준이고 월수입은 20대는 223만원, 30대는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변제율은 20대는 38%, 30대는 40% 수준으로 전체 연령 변제율(34.2%)보다 높다(서울회생법원, 2025b, p.13).

[그림 2-2] 개인회생 절차



출처: 서울회생법원. (n.d.-b).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에서 2025.10.02. 인출.

다음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울 때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지급불능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

고,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이 되면 배당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 다. 사적 채무조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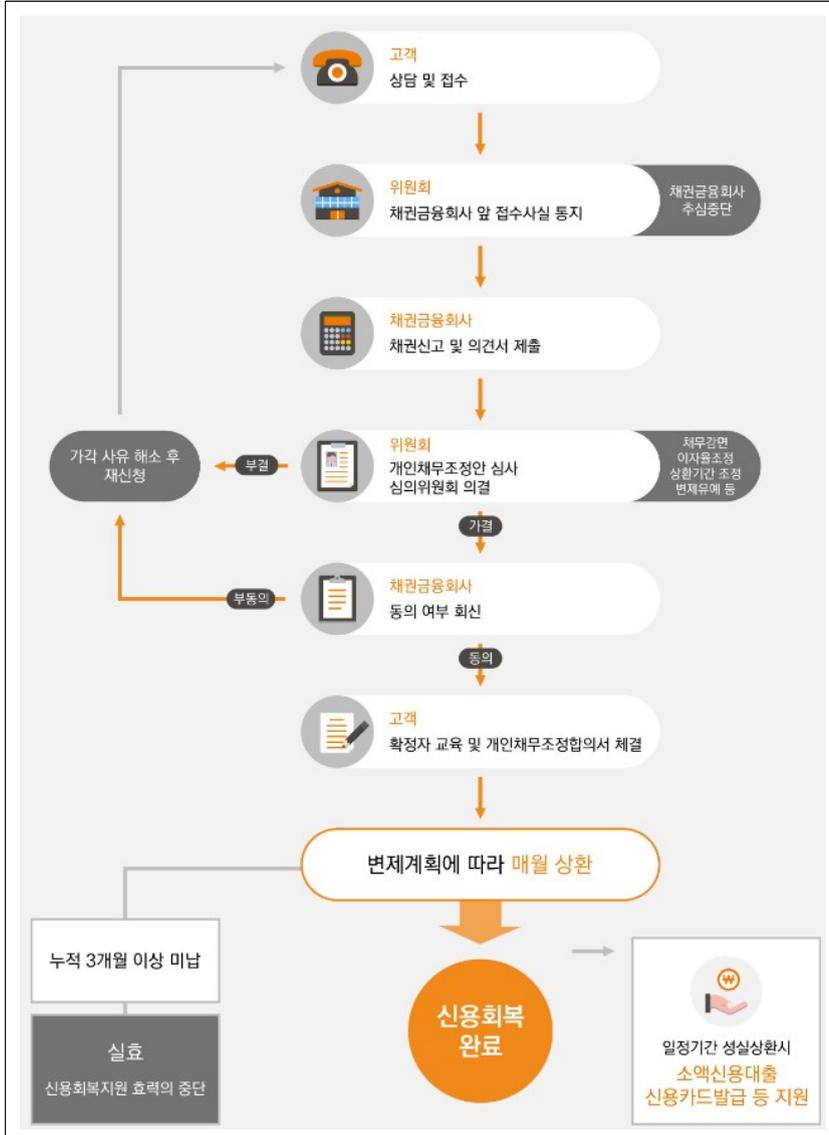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채무감면, 이자율 감소,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적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고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인데, 이는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희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인데, 이 제도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신용회복위원회, n.d.-d).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는 상담 및 신청→채권 금융회사 통보→채무 내역 신고 및 심사→채무조정안 산출→심의 및 금융회사 동의→최종 동의 및 합의서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9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대학생과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채무조정제도 이용과정에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이내로 상환 유예 특례가 적용되고, 미취업 청년은 최장 5년 이내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두 집단 모두 유예 이자가 면제된다(신용회복위원회, n.d.-e).

30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림 2-3] 개인채무조정 절차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n.d.-b).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에서 2025.10.02. 인출.

## 라. 채무조정제도의 비교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가장 명확한 차이는 대상 채무자와 대상 채권과 변제기간, 채무감면 정도이다. 첫째, 이용대상을 보면, 사적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연체 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하나, 공적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상환가능성과 고정소득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한다. 둘째, 대상 채권 측면에서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제한이 없고 개인회생제도는 세금이나 건보료 체납도 포함한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셋째, 기간을 보면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변제기간이 짧고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10년 이내로 길다. 넷째, 채무감면 정도를 보면,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원금에서 70%가 감면되는 반면,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감면율이 41% 수준이다(신용회복위원회, n.d.-d).

<표 2-3>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 공적 채무조정                       |                          | 사적 채무조정   |                                 |                       |
|--------|-------------------------------|--------------------------|---|---------------------------------|-----------------------|
|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사전 채무조정                         | 신속 채무조정               |
| 주체     | 법원                            |                          | 신용회복위원회   |                                 |                       |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 상환불능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 이하           |
| 대상 채권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불가)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 불가) |                                 |                       |
| 채무액    | 제한 없음                         | 무담보 10억<br>담보 15억        | 무담보 5억<br>담보 10억  |                                 |                       |
| 변제 기간  | -                             | 3~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 10년 이내                |
| 채무 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원금감면 100%)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

3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공적 채무조정 |      | 사적 채무조정       |         |         |
|-------|---------|------|---------------|---------|---------|
|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사전 채무조정 | 신속 채무조정 |
| 법적 효력 | 판결 효력   |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n.d.-d).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게시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제도별 특징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제도 이용 비용, 독촉 중지까지 소요 기간, 신청까지 소요 기간, 신청의 접근성, 신용카드 사용 차원에서 보면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반면, 채무감면 정도, 상환기간의 단축, 조정 가능 채무의 범위, 채무자 동의 절차 측면에서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이 더 많다.

<표 2-4>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           | 공적 채무조정                      | 사적 채무조정   |
|-----------|------------------------------|---|
| 이용 비용     | 수입료 발생                       | 5만원(수급자 면제)                                     |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 신청 소요기간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 보증인 독촉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 공공기록 등재여부 | 개인회생: 3~5년<br>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1년 단기 공유<br>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미등재             |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 채무 감면     | 개인회생: 평균 원금의 70% 감면          | 채무조정: 평균 원금의 41% 감면                             |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 장기 상환   |
| 조정가능 채무   | 모든 채무 지원 가능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debt/relief/advant/info.do>) 게시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마.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

청년정책 사업 중 생활·복지·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청년 채무조정사업은 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근거로 하여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율이 65%에서 70%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추진되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연체 채무자로,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5, pp. 30~31).

〈표 2-5〉 청년 채무조정 주요 내용

| 구분     | 프리워크아웃 청년 특례                         | 개인워크아웃 청년 특례   |
|--------|--------------------------------------|--|
| 분할상환   | -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 이자율 조정 | - 약정이자율 70% 인하                       | - 이자 전액감면  |
| 채무감면   | - (연체가산이자) 전액 감면<br>* 원금·정상이자 감면은 없음 |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br>-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br>- (상각채권원금) 70% 감면     |
| 상환전 유예 | - 최장 3년 상환유예                         | - (대학생)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br>-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 유예이자   | -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 2%)                 | -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 신청비    | - 면제                                 | - 면제   |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p. 30., 관계부처 합동 2025.4. (<https://www.youthcenter.go.kr/bbs02View/50/10270?srchParam=&curPageNum=1&srchParamEtc1=&srchParamEtc2=&srchParamEtc3=&srchParamEtc4=>, 2025.8.10. 인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채무조정 지원자 수”로 설정된 산출(output)지표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결과, 실제로 몇 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2,509명, 2023년 14,361명, 2024년 13,23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12,9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2024년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3,230명 중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10,464명으로, 이 가운데 대학생은 140명, 미취업 청년은 10,324명이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확정자는 2,766명이며, 이 중 대학생은 58명, 미취업 청년은 2,708명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채무조정제도가 주로 개인워크아웃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목표치의 산출근거는 청년층 인구 대비 대학생, 미취업 청년 비중을 고려한 채무조정 지원자 비율로 제시되어 있는데, 단순히 인구 대비 비중보다는 성과 측정 산식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년 채무조정 특례 지원자 수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에 해당한다.

〈표 2-6〉 성과지표

| 성과목표<br>(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5 목표치<br>산출근거                              | 측정<br>산식                        | 자료수집 방법<br>또는 자료출처 |
|---------------|--------|--------|--------|--------|--|---------------------------------|--------------------|
|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
| 채무조정<br>지원자 수 | 12,509 | 14,361 | 13,230 | 12,900 | 청년층 인구<br>대비 대학생,<br>미취업청년<br>채무조정<br>지원자 비중 | 대학생, 미취업<br>청년 채무조정<br>특례 지원자 수 | 신용회복<br>위원회 실적     |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p. 31., 관계부처 합동, 2025.4. <https://www.youthcenter.go.kr/bbs02View/50/10270?srchParam=&curPageNum=1&srchParamEtc1=&srchParamEtc2=&srchParamEtc3=&srchParamEtc4=>, 2025.8.10. 인출

일반인 대상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할 때, 청년 채무조정 특례는 여러 측면에서 지원 강도가 강화되어 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분할상환·채무감면·유예이자 측면에서는 일반과 청년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자율 조정에서 청년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일괄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일반(30~70% 인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상환 전 유예기간은 일반이 최장 1년까지 가능한 반면, 청년은 최장 3년까지 인정되며, 신청비 또한 일반은 납부해야 하나 청년은 면제되어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살펴보면, 분할상환 조건은 일반과 청년 간 차이가 없고, 이자·연체이자 및 미상각채권원금 감면 범위 또한 동일하다. 다만 상각채권원금의 경우 청년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상환 전 유예기간도 일반은 최장 1년에 불과하지만, 청년은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받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미취업 청년은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상환유예기간 중 청년은 이자가 전액 면제되지만, 일반은 연 2%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비 또한 청년은 면제되므로,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제도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종합하면, 청년 채무조정 특례는 일반인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자율 감면 폭 확대, 상각채권원금 감면 범위 상향, 상환유예기간의 대폭 연장, 유예이자 및 신청비 면제와 같은 차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한편 일반 제도 대비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6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표 2-7〉 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 개인워크아웃  |  |
|-----------|--------------------------|--------------------|---|--|
|           | 일반                       | 청년                 | 일반  | 청년   |
| 분할상환      | - 최장 10년<br>원리금분할상환      | - 좌동               | - 최장 10년<br>원금분할상환  | - 좌동   |
| 이자율<br>조정 | - 약정이자율의<br>30~70%인하     | - 약정이자율의<br>70% 인하 | -   | -  |
| 채무감면      | - (연체이자)전액<br>감면         | - (연체이자)<br>전액 감면  | - (이자·연체이자)<br>전액감면<br>- (미상각채권원금)<br>0~30% 감면<br>- (상각채권원금)<br>20~70% 감면 | - 좌동<br>- 좌동<br>- (상각채권원금)<br>최대 70% 감면  |
| 상환전<br>유예 | - 최장 1년                  | - 최장 3년            | - 최장 1년   | - (대학생) 재학기간<br>상환유예 및 졸업<br>후 취업시까지<br>최장 4년 상환유예<br>- (미취업청년)<br>취업시까지 최장<br>5년 상환유예 |
| 유예이자      | - 상환유예기간 중<br>이자납입(연 2%) | - 좌동               | - 상환유예기간 중<br>이자납입(연 2%)  | - 상환유예기간 중<br>이자 면제  |
| 신청비       | - 신청비 납부                 | - 신청비 면제           | - 신청비 납부  | - 신청비 면제   |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p. 32., 관계부처 합동, 2025.4. (<https://www.youthcenter.go.kr/bbs02View/50/10270?srchParam=&curPageNum=1&srchParamEtc1=&srchParamEtc2=&srchParamEtc3=&srchParamEtc4=>, 2025.8.10. 인출)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약 6,900여개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이며, 추진절차는 1)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2)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 작성 및 심의, 3)채권금융회사 동의, 4)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의 과정을 거친다.

### 3. 통합지원사업

#### 가. 통합지원사업의 개요

채무액에 초점을 둔 채무조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재기 지원을 하는 센터나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통합적 재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나. 청년동행센터

청년동행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청년채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에 별도로 개소한 시설이다.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통한 금융위기 예방사업, 청년 채무조정 상담과 지원, 희생청년 재기지원 등 3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n.d.).

특히 서울희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무길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 이수한 청년들은 변제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한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중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자에게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상담 등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한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n.d.). 예방, 채무조정 지원,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고 있다. 특히 금융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25, p.2).

#### 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청년들의 현명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자체사업으로 광주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150만원을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로 대출하는 꿈틀은행을 운영하고 협력사업으로는 광주청년 금융복지지원사업인 광주청년드림은행을 수탁하여 운영 중이다(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n.d.).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광주청년드림은행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부채 해소지원을 위해 1:1로 금융상담을 90분씩 2회기 진행하면서 재무구조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연체해소 및 채무조정을 위해 금전 지원을 하며, 주거, 심리, 직업훈련 등 자원을 연계한다. 지원 과정에서 기관방문이나 신청단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 이행의 확인 및 독려를 위해 3개월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한다. 더불어 금융피해와 생활경제 문제에 법률지원을 하고, 금융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그 외에 청년금융복지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청년특화공간 운영,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광주청년드림은행, 2024, p.13).

## 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통해 종합상담, 채무조정,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방문목적 확인 후 참여기관의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게 된다. 전국에 총 25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통합지원센터가 51개소, 미소지점 164개소, 민간사업수행기관 36개소이다(서민금융진흥원, n.d.-a).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채무상담 중 금융·고용·복지 상담을 희망하면, 공공 보장기관으로 상담을 연계한다. 공공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 신용에 관한 문제로 채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상담을 연결하는 상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민금융진흥원, n.d.-a).

주요 사업은 자금지원, 채무조정 지원, 고용복지 연계, 종합상담이다. 첫째, 자금지원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뀐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둘째,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고용복지 연계로는 지자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긴급복지생계지원,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비 지원,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연계한다. 넷째, 1:1 신용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재산형성지원, 창업운영 컨설팅 등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절차는 [그림 2-4]와 같다(신용회복위원회, n.d.-c).

40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림 2-4]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절차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n.d.-c)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20&CONTENTS\\_NO=1](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20&CONTENTS_NO=1)에서 2025.8.25. 인출



# 제3장

## 청년의 금융현황과 신용특성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청년의 대출 및 연체 현황

제3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 금융변화

제4절 소결



# 제 3 장 청년의 금융현황과 신용특성

## 제1절 분석자료

### 1. 분석개요

본 장에서는 청년의 대출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연령별, 연도별 채무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 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의 금융취약성 회복에 미치는 소요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분석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한국평가데이터(이하, KoDATA)<sup>4)</sup>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이며, 이 자료는 전국 단위의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취합된 대규모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차주의 개별 금융거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 없이 대규모 통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KoDATA는 국책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최대 기업 DB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평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04.9월 중소기업 전문 CB 설립 위원회 구성으로, 2007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4년 금융위원회 지정 민간 최초 '기술 신용평가(TCB)기관 선정, 2020년 개인CB, 개입사업자CB 업무 개시하여 현재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신용정보 구축/관리 기관임(한국신용평가데이터 홈페이지, (n.d). KoDATA 홍보관. <http://www.kodata.co.kr/cr/CRPRS03R0.do>)(검색일: 2025.9.10.)

## 나. 분석 범위

연령 구분은 20대, 30대, 19~34세 청년(청년층을 별도 분리),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절의 내용적 범위에는 연령별 신용개설정보 현황, 대출 현황, 연체 현황, 채무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채무조정 제도가 청년의 금융취약성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전국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지역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KoDATA의 차주별 자료에 거주지역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4년으로 설정하며, 신용과 부채 현황분석은 2020~2024년은 12월 자료를 이용하였고, 실증 분석은 기간을 확장하여 2015년 12월~2024년 12월, 2025년 6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다. 분석대상

### 1) 분석대상 모수

본 절의 분석대상 모수는 KoDATA에 등록된 전국민 신용정보 자료 전수이며, 연도별 규모는 2020년 약 3,361만 명, 2021년 3,428만 명, 2022년 3,501만 명, 2023년 3,571만 명, 2024년 3,620만 명, 2025년 3,640만 명이다. 분석대상을 성별로 구분하면 시점에 따라 분석대상 성별 인구가 차이가 나지만 모든 분석 시점에서 남성은 51.1%, 여성은 48.9% 수준으로 확인된다.

〈표 3-1〉 분석대상 모수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 남                    | 여                    |
|----------|------------|----------------------|----------------------|
| 2020.12. | 33,611,391 | 17,181,699<br>(51.1) | 16,429,692<br>(48.9) |
| 2021.12. | 34,275,293 | 17,528,731<br>(51.1) | 16,746,562<br>(48.9) |
| 2022.12. | 35,012,596 | 17,888,716<br>(51.1) | 17,123,880<br>(48.9) |
| 2023.12. | 35,706,807 | 18,237,293<br>(51.1) | 17,469,514<br>(48.9) |
| 2024.12. | 36,195,627 | 18,490,940<br>(51.1) | 17,704,687<br>(48.9) |
| 2025.6.  | 36,397,056 | 18,598,623<br>(51.1) | 17,798,433<br>(48.9) |

주1: ()안은 분석대상 수 전체 대비 해당 성별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분석대상의 모수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한 결과, KoDATA에 포함된 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의 약 80% 이상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말 기준 KoDATA 분석대상은 3,361.1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 4,173.2만 명 대비 80.5% 수준이었다. 이후 분석대상 규모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 82.0%, 2022년 83.8%, 2023년 85.2%, 2024년 86.0%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 말 기준에는 3,639.7만 명으로 4,212.5만 명의 86.4%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표 3-2〉 통계청 장래 인구수 대비 분석대상 모수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KoDATA 분석대상 | 통계청 인구수 <sup>1)</sup> | 인구수 대비<br>분석대상 비율(%) |
|----------|-------------|-----------------------|----------------------|
| 2020.12. | 33,611,391  | 41,732,018            | 80.5                 |
| 2021.12. | 34,275,293  | 41,780,410            | 82.0                 |
| 2022.12. | 35,012,596  | 41,768,081            | 83.8                 |
| 2023.12. | 35,706,807  | 41,906,511            | 85.2                 |
| 2024.12. | 36,195,627  | 42,066,202            | 86.0                 |
| 2025.6.  | 36,397,056  | 42,124,907            | 86.4                 |

주: 통계청 인구수는 19~79세 장래인구 추계값이며, 80세 이상은 제외함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 2025.08.23.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2025.7.13.추출);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2)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분석대상 모수를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대의 경우, 2020년 약 4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422만 명, 2023년에는 42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37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30대는 2020년 625만 명 수준에서 점차 줄어 2023년에는 61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4년에는 623만 명, 2025년에는 627만 명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청년층(19~34세)은 2020년 705만 명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25년에는 701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40대는 2020년 746만 명에서 2025년 712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50대는 2020년 747만 명에서 2025년 79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인구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 2020년 821만 명에서 2025년 1,136만 명으로 늘어났다.

전 연령 대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2020년 21.0%에서

2025년 19.3%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40대 역시 22.2%에서 19.6%로, 50대는 22.2%에서 21.7%로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24.4%에서 31.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전체 인구 중 금융거래 경험 및 신용개설을 보유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청년과 중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3〉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4,209,180<br>(12.5) | 6,255,177<br>(18.6) | 7,053,729<br>(21.0) | 7,461,031<br>(22.2) | 7,473,876<br>(22.2) | 8,212,127<br>(24.4)  |
| 2021.12. | 4,209,918<br>(12.3) | 6,171,943<br>(18.0) | 7,137,844<br>(20.8) | 7,428,874<br>(21.7) | 7,589,314<br>(22.1) | 8,875,244<br>(25.9)  |
| 2022.12. | 4,224,973<br>(12.1) | 6,138,038<br>(17.5) | 7,274,625<br>(20.8) | 7,428,573<br>(21.2) | 7,686,400<br>(22.0) | 9,534,612<br>(27.2)  |
| 2023.12. | 4,248,643<br>(11.9) | 6,156,929<br>(17.2) | 7,400,025<br>(20.7) | 7,354,986<br>(20.6) | 7,844,491<br>(22.0) | 10,101,758<br>(28.3) |
| 2024.12. | 4,140,646<br>(11.4) | 6,230,879<br>(17.2) | 7,377,089<br>(20.4) | 7,218,212<br>(19.9) | 7,916,321<br>(21.9) | 10,689,569<br>(29.5) |
| 2025.6.  | 3,733,655<br>(10.3) | 6,273,294<br>(17.2) | 7,015,519<br>(19.3) | 7,122,361<br>(19.6) | 7,906,123<br>(21.7) | 11,361,623<br>(31.2) |

주: ()안은 분석대상 전연령 인구 대비 해당 연령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KoDATA 분석대상(이하, 신용정보 보유자)의 연령별 대표성을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 내외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KoDATA 분석 대상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거래 경험이나 신용개설 여부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20대의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짧고, 신용카드 발급 제한, 사회 초년생의 금융 접근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KoDATA DB에 반영되지 않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등 주요 생애주기적 사건과 함께 금융거래가 일상화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대표성이 90% 내외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40대와 50대는 거의 전 연령층이 금융거래를 수행하고 있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90% 이상의 높은 대표성을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도 2020년 81.5%에서 2025년 93.2%까지 대표성이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고령층의 금융 이용 확대, 연금수급과 금융자산 관리의 필요성 증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oDATA 자료는 연령별로 편차가 일부 존재하나, 청년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A   | 4,209,180       | 6,255,177       | 7,053,729      | 7,461,031       | 7,473,876       | 8,212,127          |
|          | B   | 7,648,584       | 7,174,782       | 10,956,387     | 8,257,903       | 8,575,336       | 10,075,413         |
|          | A/B | 55.0            | 87.2            | 64.4           | 90.4            | 87.2            | 81.5               |
| 2021.12. | A   | 4,209,918       | 6,171,943       | 7,137,844      | 7,428,874       | 7,589,314       | 8,875,244          |
|          | B   | 7,475,612       | 6,989,477       | 10,782,063     | 8,158,318       | 8,539,374       | 10,617,629         |
|          | A/B | 56.3            | 88.3            | 66.2           | 91.1            | 88.9            | 83.6               |
| 2022.12. | A   | 4,224,973       | 6,138,038       | 7,274,625      | 7,428,573       | 7,686,400       | 9,534,612          |
|          | B   | 7,221,348       | 6,872,945       | 10,611,782     | 8,097,011       | 8,603,509       | 10,973,268         |
|          | A/B | 58.5            | 89.3            | 68.6           | 91.7            | 89.3            | 86.9               |
| 2023.12. | A   | 4,248,643       | 6,156,929       | 7,400,025      | 7,354,986       | 7,844,491       | 10,101,758         |
|          | B   | 7,038,443       | 6,874,383       | 10,562,983     | 7,993,159       | 8,596,363       | 11,404,163         |
|          | A/B | 60.4            | 89.6            | 70.1           | 92.0            | 91.3            | 88.6               |
| 2024.12. | A   | 4,140,646       | 6,230,879       | 7,377,089      | 7,218,212       | 7,916,321       | 10,689,569         |
|          | B   | 6,828,197       | 6,913,023       | 10,443,964     | 7,852,297       | 8,705,899       | 11,766,786         |
|          | A/B | 60.6            | 90.1            | 70.6           | 91.9            | 90.9            | 90.8               |
| 2025.6.  | A   | 3,733,655       | 6,273,294       | 7,015,519      | 7,122,361       | 7,906,123       | 11,361,623         |
|          | B   | 6,580,263       | 6,975,568       | 10,250,350     | 7,717,016       | 8,660,370       | 12,191,690         |
|          | A/B | 56.7            | 89.9            | 68.4           | 92.3            | 91.3            | 93.2               |

주1: A는 분석 대상 모수(=신용정보 보유자)

2: B는 통계청 인구수로, 19~79세 장래인구 추계값임(80세 이상은 제외)

3: A/B는 통계청 인구수 대비 분석대상 모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72, 2025.08.23,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2025.7.13.추출);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2. 신용개설정보

### 가. 신용개설정보 현황

#### 1) 신용카드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신용카드 개설 건수가 2020년 약 2,137만 건에서 2025년 약 1,111만 건으로 줄어들었

고, 1인당 평균 개설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2020년 약 3,523만 건에서 2025년 약 3,321만 건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은 2020년 5.6건, 2025년 5.3건으로 약간의 감소가 관찰된다. 한편, 19~34세 청년 집단에서도 20대의 감소 영향으로 1인당 평균이 2020년 5.3건에서 2025년 4.0건으로 감소하였다. 20~30대의 신용카드 개설 건수의 감소 원인은 금융거래 구조의 변화(간편결제, 모바일결제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40대는 2020년 대비 2025년에 신용카드 개설건수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1인당 개설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신용카드 개설건수가 2020년 대비 2025년에 증가하였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신용카드 개설이 약 4,237만 건에서 6,211만 건으로 46.6% 증가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표 3-5>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현황 추이

(단위: 건)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21,374,327<br>(5.1) | 35,234,677<br>(5.6) | 37,288,593<br>(5.3) | 42,188,037<br>(5.7) | 41,706,865<br>(5.6) | 42,371,701<br>(5.2) |
| 2021.12. | 20,397,216<br>(4.8) | 34,747,806<br>(5.6) | 36,729,263<br>(5.1) | 42,204,495<br>(5.7) | 42,674,869<br>(5.6) | 46,961,541<br>(5.3) |
| 2022.12. | 18,828,186<br>(4.5) | 34,301,709<br>(5.6) | 35,650,266<br>(4.9) | 42,242,949<br>(5.7) | 43,363,232<br>(5.6) | 51,306,600<br>(5.4) |
| 2023.12. | 16,676,633<br>(3.9) | 33,910,052<br>(5.5) | 33,714,544<br>(4.6) | 41,735,102<br>(5.7) | 44,238,524<br>(5.6) | 54,901,549<br>(5.4) |
| 2024.12. | 14,030,879<br>(3.4) | 33,692,143<br>(5.4) | 31,077,395<br>(4.2) | 40,822,349<br>(5.7) | 44,582,013<br>(5.6) | 58,410,973<br>(5.5) |
| 2025.6.  | 11,111,126<br>(3.0) | 33,217,085<br>(5.3) | 27,877,209<br>(4.0) | 40,144,961<br>(5.6) | 44,448,741<br>(5.6) | 62,105,854<br>(5.5) |

주1: ()안은 연령별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신용카드 개설 건수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2) 신용체크카드

일반적으로 신용체크카드는 본인의 은행 계좌 잔액 내에서만 결제하는 카드를 말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의 신용체크카드 개설은 2020년 368만건에서 2025년 288만건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발급 건수도 1건이 채 되지 않은 0.8~0.9건 수준이다. 30대는 2020년 291만건에서 2025년 437만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1인당 0.5건에서 2025년 0.7건으로 증가하였다. 즉, 2020년에는 2명 중에 1명이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며, 2025년에는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수준이다. 40대는 2020년 166만건에서 2025년 216만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대의 절반 수준이며, 1인당 0.2건~0.3건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역시, 20대와 비교해 각각 50%,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1인당 0.1~0.2건으로 10명 중 1~2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용·체크카드 개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 및 고령층에서는 신용·체크카드 개설 비중이 낮게 확인된다. 이는 중장년 및 고령층이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일반 신용카드 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청년층은 간편성과 소비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용도와 금융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일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연령별 신용체크카드 개설 현황 추이

(단위: 건)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3,688,840<br>(0.9) | 2,919,567<br>(0.5) | 5,416,151<br>(0.8) | 1,664,533<br>(0.2) | 949,825<br>(0.1)   | 409,932<br>(0.0)   |
| 2021.12. | 3,676,754<br>(0.9) | 3,248,574<br>(0.5) | 5,687,909<br>(0.8) | 1,778,011<br>(0.2) | 1,050,731<br>(0.1) | 486,009<br>(0.1)   |
| 2022.12. | 3,622,681<br>(0.9) | 3,592,380<br>(0.6) | 5,916,394<br>(0.8) | 1,896,889<br>(0.3) | 1,139,390<br>(0.1) | 563,488<br>(0.1)   |
| 2023.12. | 3,569,012<br>(0.8) | 3,884,842<br>(0.6) | 6,039,931<br>(0.8) | 1,992,640<br>(0.3) | 1,226,299<br>(0.2) | 635,265<br>(0.1)   |
| 2024.12. | 3,345,861<br>(0.8) | 4,150,599<br>(0.7) | 5,911,817<br>(0.8) | 2,072,480<br>(0.3) | 1,306,343<br>(0.2) | 716,331<br>(0.1)   |
| 2025.6.  | 2,880,443<br>(0.8) | 4,373,238<br>(0.7) | 5,473,251<br>(0.8) | 2,167,433<br>(0.3) | 1,371,233<br>(0.2) | 802,757<br>(0.1)   |

주1: ()안은 연령별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신용체크카드 개설 건수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3) 햇살론카드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서민금융진흥원, n.d.-c).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및 카드사가 협력하여 발급하는 구조로, 신청대상은 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이수한 자, ② 연간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 ③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자이다(금융위원회, n.d.).

햇살론 카드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40대 연령층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활동 인구 100명 중 1명이 햇살론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년층과 저신용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신용이력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적 신용카드로서 햇살론카드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7〉 연령별 햇살론카드 개설 현황 추이

(단위: 건)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51,425<br>(0.01) | 43,497<br>(0.01) | 73,041<br>(0.01) | 31,017<br>(0.00) | 11,037<br>(0.00) | 2,520<br>(0.00)    |
| 2021.12. | 54,463<br>(0.01) | 46,670<br>(0.01) | 78,656<br>(0.01) | 34,787<br>(0.00) | 13,405<br>(0.00) | 3,298<br>(0.00)    |
| 2022.12. | 54,390<br>(0.01) | 51,507<br>(0.01) | 82,400<br>(0.01) | 39,734<br>(0.01) | 16,592<br>(0.00) | 4,307<br>(0.00)    |
| 2023.12. | 51,765<br>(0.01) | 56,023<br>(0.01) | 82,961<br>(0.01) | 44,412<br>(0.01) | 20,243<br>(0.00) | 5,689<br>(0.00)    |
| 2024.12. | 46,666<br>(0.01) | 59,600<br>(0.01) | 80,570<br>(0.01) | 47,488<br>(0.01) | 23,411<br>(0.00) | 7,003<br>(0.01)    |
| 2025.6.  | 39,426<br>(0.01) | 62,534<br>(0.01) | 75,261<br>(0.01) | 49,523<br>(0.01) | 25,693<br>(0.00) | 8,279<br>(0.01)    |

주1: ( )안은 연령별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햇살론카드 개설 건수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4) 신용카드 개수별 카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연령별 신용카드 개수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신용카드 보유 패턴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20대는 신용카드 1개 보유자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수의 카드를 보유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30대는 2개 보유자가 25.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개 보유자가 23.3%로 나타나, 사회진입과

함께 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년층(19~34세 전체)으로 보면, 신용카드 1개 보유자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2개 보유자가 25.1%로 뒤를 이어, 1~2개 카드 보유가 주된 패턴으로 확인된다.

40대와 50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2개 보유자가 21.8%, 3개 보유자가 21.2%로 각각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며, 카드 다중 보유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또한 2개 보유자가 21.7%, 3개 보유자가 20.8%로 나타나, 2~3개 수준의 카드 보유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확인되었다. 한편,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20대와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가 1개 보유자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개 보유자가 24.3%를 차지하였다. 이는 고령층이 다수의 카드를 유지하기보다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카드를 보유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청년층은 신용카드 1~2개 보유가 가장 일반적이며, 40~50대 중년층은 2~3개 다중 보유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다시 1~2개 카드 중심의 보수적 보유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생애주기별 소비 및 금융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8〉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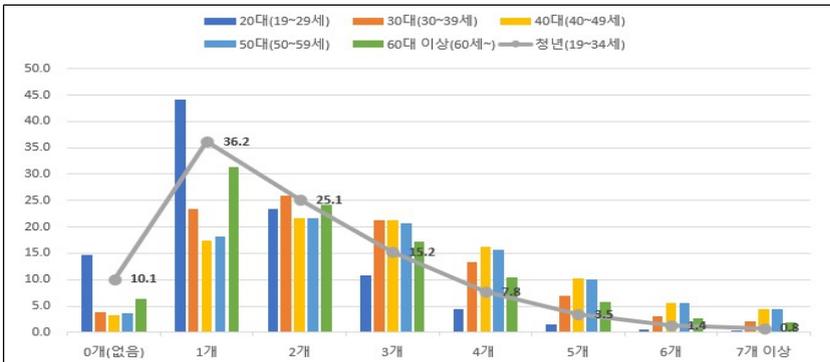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0개   | 608,916<br>(14.7)    | 241,064<br>(3.9)     | 748,602<br>(10.1)    | 236,733<br>(3.3)     | 297,324<br>(3.8)     | 671,974<br>(6.3)      |
| 1개   | 1,829,277<br>(44.2)  | 1,454,061<br>(23.3)  | 2,667,503<br>(36.2)  | 1,260,329<br>(17.5)  | 1,435,298<br>(18.1)  | 3,344,628<br>(31.3)   |
| 2개   | 965,917<br>(23.3)    | 1,616,111<br>(25.9)  | 1,850,865<br>(25.1)  | 1,570,502<br>(21.8)  | 1,720,123<br>(21.7)  | 2,594,893<br>(24.3)   |
| 3개   | 449,079<br>(10.8)    | 1,324,156<br>(21.3)  | 1,121,290<br>(15.2)  | 1,532,847<br>(21.2)  | 1,644,225<br>(20.8)  | 1,840,147<br>(17.2)   |
| 4개   | 182,105<br>(4.4)     | 836,474<br>(13.4)    | 572,057<br>(7.8)     | 1,166,273<br>(16.2)  | 1,241,810<br>(15.7)  | 1,124,134<br>(10.5)   |
| 5개   | 67,745<br>(1.6)      | 435,103<br>(7.0)     | 254,569<br>(3.5)     | 737,771<br>(10.2)    | 790,906<br>(10.0)    | 609,855<br>(5.7)      |
| 6개   | 23,987<br>(0.6)      | 195,683<br>(3.1)     | 101,757<br>(1.4)     | 398,603<br>(5.5)     | 436,353<br>(5.5)     | 296,325<br>(2.8)      |
| 7개이상 | 13,620<br>(0.3)      | 128,227<br>(2.1)     | 60,446<br>(0.8)      | 315,154<br>(4.4)     | 350,282<br>(4.4)     | 207,613<br>(1.9)      |
| 전체   | 4,140,646<br>(100.0) | 6,230,879<br>(100.0) | 7,377,089<br>(100.0) | 7,218,212<br>(100.0) | 7,916,321<br>(100.0) | 10,689,569<br>(100.0) |

주1: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주2: 각 연령대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건수 기준으로 상위 2개 항목은 주황색으로, 하위 2개 항목은 초록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그림 3-1]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제2절 청년의 대출 및 연체 현황

### 1. 대출 현황

#### 가. 대출 보유 현황

##### 1) 연도별 대출 보유 현황

〈표 3-9〉는 연도별 대출 보유 현황을 나타낸다. 2024년 12월 기준 연령별 대출 보유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의 63.1%가 대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60.7%, 50대는 59.4%, 20대는 52.5%, 60대 이상은 41.8%가 대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12월과 비교할 때 2025년 6월 기준 대출 보유 비율의 감소 폭은 청년층이 1.7%p로 가장 작았으며, 60대 이상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2020년 이후에도 대출 보유 비율이 55~57% 수준을 유지하여 절반 이상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60대 이상은 5년 전보다 4.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42%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고령층의 대출 의존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9〉 대출 보유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2020.12. | 2,309,304<br>(54.9) | 3,900,975<br>(62.4) | 4,033,250<br>(57.2) | 4,853,490<br>(65.1) | 4,638,039<br>(62.1) | 3,804,898<br>(46.3) |
| 2021.12. | 2,354,851<br>(55.9) | 3,920,519<br>(63.5) | 4,177,706<br>(58.5) | 4,827,440<br>(65.0) | 4,680,729<br>(61.7) | 4,007,153<br>(45.1)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2022.12.     | 2,306,007<br>(54.6) | 3,835,708<br>(62.5) | 4,176,474<br>(57.4) | 4,754,499<br>(64.0) | 4,647,233<br>(60.5) | 4,142,238<br>(43.4) |
| 2023.12.     | 2,283,747<br>(53.8) | 3,789,603<br>(61.6) | 4,188,192<br>(56.6) | 4,665,412<br>(63.4) | 4,692,248<br>(59.8) | 4,298,359<br>(42.6) |
| 2024.12.     | 2,172,718<br>(52.5) | 3,781,040<br>(60.7) | 4,096,660<br>(55.5) | 4,553,359<br>(63.1) | 4,699,501<br>(59.4) | 4,462,925<br>(41.8) |
| 2025.6.      | 1,970,087<br>(52.8) | 3,769,840<br>(60.1) | 3,893,593<br>(55.5) | 4,489,279<br>(63.0) | 4,703,078<br>(59.5) | 4,743,350<br>(41.7) |
| 5년간<br>대출 증감 | 2.1%p               | 2.3%p               | 1.7%p               | 2.0%p               | 2.6%p               | 4.6%p               |

주: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표 3-10〉은 2024년 12월 기준 연령별 대출 보유 건수 현황을 나타낸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을 1건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52.3%, 30대는 41.6%가 1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대출을 2건 보유한 비중이 17.8%이며, 7건 이상 보유한 비중도 14.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중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년(19~34세)도 20대의 특성과 유사한 패턴으로, 1건 보유가 41.1%, 2건이 18.7%이며, 7건 이상이 1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0대와 50대는 약 40%가 1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2건 보유 비중이 약 22%, 3건 보유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7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7.5~8.5%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은 2건 보유가 21.3%, 3건 보유가 10.4%, 7건 이상 보유가 4.6%로 나타났다.

〈표 3-10〉 대출 보유 건수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1개    | 876,594<br>(40.3) | 1,571,299<br>(41.6) | 1,685,073<br>(41.1) | 1,714,808<br>(37.7) | 1,879,611<br>(40.0) | 2,332,359<br>(52.3) |
| 2개    | 387,088<br>(17.8) | 795,162<br>(21.0)   | 767,814<br>(18.7)   | 1,039,364<br>(22.8) | 1,060,072<br>(22.6) | 949,134<br>(21.3)   |
| 3개    | 226,371<br>(10.4) | 440,607<br>(11.7)   | 435,007<br>(10.6)   | 624,010<br>(13.7)   | 623,879<br>(13.3)   | 465,385<br>(10.4)   |
| 4개    | 164,118<br>(7.6)  | 270,965<br>(7.2)    | 296,138<br>(7.2)    | 382,834<br>(8.4)    | 381,639<br>(8.1)    | 259,223<br>(5.8)    |
| 5개    | 112,244<br>(5.2)  | 178,626<br>(4.7)    | 202,218<br>(4.9)    | 243,970<br>(5.4)    | 242,355<br>(5.2)    | 155,408<br>(3.5)    |
| 6개    | 87,174<br>(4.0)   | 125,239<br>(3.3)    | 152,777<br>(3.7)    | 161,642<br>(3.5)    | 157,593<br>(3.4)    | 97,508<br>(2.2)     |
| 7개 이상 | 319,129<br>(14.7) | 399,142<br>(10.6)   | 557,633<br>(13.6)   | 386,731<br>(8.5)    | 354,352<br>(7.5)    | 203,908<br>(4.6)    |

주1: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2: 각 연령대별 대출 보유 건수의 상위 3개 항목(1~3순위)은 주황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2) 금액대별 대출 보유 건수 현황(2024년 12월 기준)

〈표 3-11〉은 2024년 12월 기준 금액대별 대출 보유 건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연령대별 대출액 총합을 살펴보면, 20대는 81조 원, 30대는 423조 원, 청년층(19~34세)은 265조 원, 40대는 579조 원, 50대는 537조 원, 60대 이상은 536조 원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20대의 총 대출 규모는 30대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며,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60대 이상에서도 총 대출 규모가 536조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연령이 높아져도 대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2,000조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액대별 대출 보유 건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500만 원 미만’

(30.6%)과 '1,000~3,000만 원 미만'(23.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1억~3억 원 미만'이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층(19~34세)은 '500만 원 미만'(21.7%)과 '1,000~3,000만 원 미만'(21.8%)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40대는 '1억~3억 원 미만'이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50대 역시 동일 구간이 24.8%를 차지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대출 금액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1,000~3,000만 원 미만'이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20대는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500만 원 미만, 1,000~3,0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높고, 30~50대는 중대형 규모(1억~3억 원 미만)의 대출 비중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다시 중소규모(1,000~3,000만 원 미만) 대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11〉 금액대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500만원 미만          | 665,401<br>(30.6) | 387,225<br>(10.2)   | 889,875<br>(21.7) | 353,337<br>(7.8)    | 403,148<br>(8.6)    | 496,194<br>(11.1)   |
| 500~1000만원<br>미만  | 352,488<br>(16.2) | 259,153<br>(6.9)    | 505,350<br>(12.3) | 243,127<br>(5.3)    | 306,598<br>(6.5)    | 399,005<br>(8.9)    |
| 1000~3000만원<br>미만 | 519,156<br>(23.9) | 673,337<br>(17.8)   | 893,172<br>(21.8) | 771,820<br>(17.0)   | 968,060<br>(20.6)   | 1,163,280<br>(26.1) |
| 3000~5000만원<br>미만 | 179,043<br>(8.2)  | 414,647<br>(11.0)   | 393,776<br>(9.6)  | 548,225<br>(12.0)   | 621,723<br>(13.2)   | 581,565<br>(13.0)   |
| 5000~1억원<br>미만    | 202,826<br>(9.3)  | 631,928<br>(16.7)   | 520,647<br>(12.7) | 851,215<br>(18.7)   | 910,273<br>(19.4)   | 739,683<br>(16.6)   |
| 1~3억원 미만          | 230,338<br>(10.6) | 1,083,744<br>(28.7) | 745,818<br>(18.2) | 1,337,884<br>(29.4) | 1,163,894<br>(24.8) | 822,964<br>(18.4)   |
| 3~5억원 미만          | 20,761<br>(1.0)   | 272,180<br>(7.2)    | 127,112<br>(3.1)  | 339,110<br>(7.4)    | 233,262<br>(5.0)    | 159,898<br>(3.6)    |
| 5억원 이상            | 2,705<br>(0.1)    | 58,826<br>(1.6)     | 20,910<br>(0.5)   | 108,641<br>(2.4)    | 92,543<br>(2.0)     | 100,336<br>(2.2)    |
| 대출액 합계<br>(조원)    | 81                | 423                 | 265               | 579                 | 537                 | 536                 |

주1: (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주2: 각 연령대별 대출 보유 건수의 상위 2개 항목(1~2순위)은 주황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자료: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3)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2024년 12월 기준)

연령대별 대출종류별 대출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대는 대출 중 학자금대출 비율이 39.0%, 신용대출이 37.2%로 가장 높으며, 지급보증 담보대출(26.9%)과 전세자금담보대출(15.3%) 또한 주요 대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학업 및 초기 사회진입 과정에서 학자금과 생활자금 중심의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0대는 신용대출이 50.2%로 가장 높으며,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21.6%), 주택담보대출(21.3%), 전세자금담보대출(1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30대에서는 신용 기반의 대출과 주거 관련 대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19~34세)도 신용대출이 41.9%이며, 학자금대출(29.3%),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24.9%), 전세자금담보대출(18.8%)이 높게 나타나,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의 학업, 생활, 주거 관련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40대는 신용대출(57.6%)과 주택담보대출(32.1%), 50대는 신용대출(55.7%)과 주택담보대출(33.7%), 60대 이상은 신용대출(46.5%)과 주택담보대출(34.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 특징을 종합하면 청년층은 학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감소하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2〉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신용대출)<br>신용대출                          | 808,123<br>(37.2) | 1,897,796<br>(50.2) | 1,718,154<br>(41.9) | 2,623,460<br>(57.6) | 2,615,784<br>(55.7) | 2,076,000<br>(46.5) |
| (신용대출)<br>학자금대출                         | 846,534<br>(39.0) | 497,575<br>(13.2)   | 1,199,184<br>(29.3) | 86,017<br>(1.9)     | 40,478<br>(0.9)     | 2,863<br>(0.1)      |
| (신용대출)<br>전세자금대출                        | 639<br>(0.0)      | 2,554<br>(0.1)      | 1,750<br>(0.0)      | 3,625<br>(0.1)      | 2,726<br>(0.1)      | 3,973<br>(0.1)      |
| (담보대출)<br>예적금담보대출                       | 145,591<br>(6.7)  | 262,784<br>(7.0)    | 286,720<br>(7.0)    | 249,749<br>(5.5)    | 221,276<br>(4.7)    | 210,518<br>(4.7)    |
| (담보대출)<br>유가증권(주식,<br>채권, 펀드 등)<br>담보대출 | 7,011<br>(0.3)    | 34,551<br>(0.9)     | 20,133<br>(0.5)     | 77,472<br>(1.7)     | 94,131<br>(2.0)     | 49,182<br>(1.1)     |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                        | 86,871<br>(4.0)   | 804,323<br>(21.3)   | 393,125<br>(9.6)    | 1,463,027<br>(32.1) | 1,581,613<br>(33.7) | 1,530,860<br>(34.3) |
| (담보대출) 주택외<br>부동산(토지, 상가<br>등) 담보대출     | 10,958<br>(0.5)   | 66,226<br>(1.8)     | 37,633<br>(0.9)     | 155,965<br>(3.4)    | 316,334<br>(6.7)    | 540,434<br>(12.1)   |
| (담보대출)<br>지급보증(보증서)<br>담보대출             | 585,336<br>(26.9) | 817,487<br>(21.6)   | 1,019,245<br>(24.9) | 782,857<br>(17.2)   | 532,145<br>(11.3)   | 287,263<br>(6.4)    |
| (담보대출)<br>보증자리론                         | 19,593<br>(0.9)   | 234,263<br>(6.2)    | 109,318<br>(2.7)    | 361,438<br>(7.9)    | 216,885<br>(4.6)    | 120,485<br>(2.7)    |
| (담보대출) 학자금<br>(지급보증담보)<br>대출            | 14<br>(0.0)       | 6,846<br>(0.2)      | 2,331<br>(0.1)      | 235<br>(0.0)        | 49<br>(0.0)         | 70<br>(0.0)         |
| (담보대출)<br>전세자금(보증서,<br>질권 등) 대출         | 332,399<br>(15.3) | 722,430<br>(19.1)   | 770,210<br>(18.8)   | 371,418<br>(8.2)    | 215,838<br>(4.6)    | 136,602<br>(3.1)    |
| (담보대출)<br>전세보증금<br>담보대출                 | 2,335<br>(0.1)    | 9,721<br>(0.3)      | 7,160<br>(0.2)      | 11,639<br>(0.3)     | 11,443<br>(0.2)     | 11,768<br>(0.3)     |
| (담보대출) 기타<br>담보대출                       | 159,352<br>(7.3)  | 246,998<br>(6.5)    | 291,606<br>(7.1)    | 265,649<br>(5.8)    | 231,751<br>(4.9)    | 134,003<br>(3.0)    |
| (할부금융) 신차<br>할부금융                       | 106,098<br>(4.9)  | 278,945<br>(7.4)    | 248,600<br>(6.1)    | 366,385<br>(8.0)    | 461,461<br>(9.8)    | 313,151<br>(7.0)    |
| (할부금융) 중고차<br>할부금융                      | 56,302<br>(2.6)   | 105,175<br>(2.8)    | 110,464<br>(2.7)    | 115,401<br>(2.5)    | 106,995<br>(2.3)    | 67,257<br>(1.5)     |

6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할부금융) 기타<br>할부금융 | 4,706<br>(0.2)   | 11,150<br>(0.3)   | 10,314<br>(0.3)  | 15,387<br>(0.3)   | 22,582<br>(0.5)     | 30,872<br>(0.7)   |
| (리스) 금융 리스        | 2,580<br>(0.1)   | 14,704<br>(0.4)   | 8,762<br>(0.2)   | 20,636<br>(0.5)   | 15,188<br>(0.3)     | 9,128<br>(0.2)    |
| (리스) 운용 리스        | 7,892<br>(0.4)   | 24,858<br>(0.7)   | 19,675<br>(0.5)  | 32,347<br>(0.7)   | 27,370<br>(0.6)     | 14,660<br>(0.3)   |
| 카드론               | 168,944<br>(7.8) | 420,603<br>(11.1) | 362,207<br>(8.8) | 869,043<br>(19.1) | 1,055,831<br>(22.5) | 916,293<br>(20.5) |
| 대출 보유자 전체         | 2,172,718        | 3,781,040         | 4,096,660        | 4,553,359         | 4,699,501           | 4,462,925         |

주: ()안은 대출 보유자 중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 종류별로 중복 보유한 경우 복수 항목에 중복 포함될 수 있음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표 3-13〉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유형은 학자금대출(39.0%), 신용대출(37.2%),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26.9%), 전세자금대출(15.3%), 카드론(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20대 청년 1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9명은 학자금대출을, 37명은 신용대출을, 27명은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을, 15명은 전세자금대출을, 약 8명은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개인이 여러 유형의 대출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각 비율은 중복을 포함한 대출 유형별 보유 현황을 의미한다.

한편 청년(19~34세)의 경우 신용대출(41.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학자금대출(29.3%),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24.9%), 전세자금대출(18.8%), 주택담보대출(9.6%)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비교하면 학자금대출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이 상위 5개 대출 유형에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청년층이 학업 단계에서 벗어나면서 신용 기반 대출과 주거 관련 대출로

점차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신용대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약 32~34% 수준, 카드론이 19~2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론이 40대 이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은 중·고령층이 생활자금이나 소비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성·고금리 신용대출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3〉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 순위(2024년 12월 기준)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1순위 | (신용대출)<br>학자금대출<br>39.0%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50.2%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41.9%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57.6%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55.7%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46.5%                            |
| 2순위 | (신용대출)<br>신용대출<br>37.2%                      | (담보대출)<br>지급보증<br>(보증서)<br>담보대출<br>21.6%     | (신용대출)<br>학자금대출<br>29.3%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br>32.1%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br>33.7%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br>34.3%                          |
| 3순위 | (담보대출)<br>지급보증<br>(보증서)<br>담보대출<br>26.9%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br>21.3%                    | (담보대출)<br>지급보증<br>(보증서)<br>담보대출<br>24.9%     | 카드론<br>19.1%                                | 카드론<br>22.5%                             | 카드론<br>20.5%                                       |
| 4순위 | (담보대출)<br>전세자금<br>(보증서, 질권<br>등) 대출<br>15.3% | (담보대출)<br>전세자금<br>(보증서, 질권<br>등) 대출<br>19.1% | (담보대출)<br>전세자금<br>(보증서, 질권<br>등) 대출<br>18.8% | (담보대출)<br>지급보증<br>(보증서)<br>담보대출<br>17.2%    | (담보대출)<br>지급보증<br>(보증서)<br>담보대출<br>11.3% | (담보대출)<br>주택의<br>부동산(토지,<br>상가 등)<br>담보대출<br>12.1% |
| 5순위 | 카드론<br>7.8%                                  | (신용대출)<br>학자금대출<br>13.2%                     | (담보대출)<br>주택담보대출<br>9.6%                     | (담보대출)<br>전세자금<br>(보증서, 질권<br>등) 대출<br>8.2% | (할부금융)<br>신차<br>할부금융<br>9.8%             | (할부금융)<br>신차<br>할부금융<br>7.0%                       |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4) 서민금융<sup>5)</sup> 종류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서민금융상품 이용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출을 보유한 20대 중 17.1%가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30대는 11.9%, 청년층(19~34세)은 15.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서민금융 대출 이용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민금융 대출 보유자 중에서는 청년층(19~34세)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Youth’의 비중이 20대에서 62.7%, 청년 전체에서 4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햇살론 Youth’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중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창업 1년 이하의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대출자 중 ‘햇살론 youth’ 이용률은 7.1%<sup>6)</sup>(20대는 10.7%) 수준에 불과하다.

〈표 3-14〉 서민금융 종류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서민금융<br>대출자 수<br>(전체 대출자 중<br>비율) | 370,512<br>(17.1) | 451,506<br>(11.9) | 628,440<br>(15.3) | 417,725<br>(9.2) | 357,279<br>(7.6) | 255,975<br>(5.7)   |
| 햇살론 <sup>15)</sup>                | 40,586<br>(11.0)  | 66,310<br>(14.7)  | 77,158<br>(12.3)  | 65,014<br>(15.6) | 48,776<br>(13.7) | 28,794<br>(11.2)   |

5) 신용평점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 및 보증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제도임(서민금융진흥원, n.d.-b)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Yoos.do>)(검색일: 2025.8.10.)

6) 청년(19~34세) 대출보유자(4,096,660명) 대비 햇살론 youth 이용자(290,975명)의 비율임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햇살론17           | 1,870<br>(0.5)    | 6,375<br>(1.4)    | 5,108<br>(0.8)    | 7,214<br>(1.7)    | 5,923<br>(1.7)    | 4,168<br>(1.6)     |
| 햇살론 youth       | 232,340<br>(62.7) | 68,710<br>(15.2)  | 290,975<br>(46.3) | -<br>-            | -<br>-            | -<br>-             |
| 햇살론 은행          | 31,441<br>(8.5)   | 67,273<br>(14.9)  | 68,301<br>(10.9)  | 69,800<br>(16.7)  | 46,997<br>(13.2)  | 19,160<br>(7.5)    |
| 햇살론             | 167,997<br>(45.3) | 244,107<br>(54.1) | 305,839<br>(48.7) | 234,140<br>(56.1) | 182,230<br>(51.0) | 96,282<br>(37.6)   |
| 바꿔드림론           | 1<br>(0.0)        | 23<br>(0.0)       | 7<br>(0.0)        | 56<br>(0.0)       | 62<br>(0.0)       | 40<br>(0.0)        |
| 안전망대출1,2        | 20<br>(0.0)       | 301<br>(0.1)      | 139<br>(0.0)      | 512<br>(0.1)      | 389<br>(0.1)      | 208<br>(0.1)       |
| 최저신용자<br>특례보증상품 | 28,622<br>(1.3)   | 34,380<br>(0.9)   | 48,232<br>(1.2)   | 29,400<br>(0.6)   | 18,346<br>(0.4)   | 13,121<br>(0.3)    |

주: ()안은 서민금융 대출자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내며, 대출 종류별로 중복 보유한 경우 복수 항목에 중복 포함될 수 있음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나. 단기카드대출 및 고위험 대출 현황

### 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을 보유한 20대의 8.2%, 30대의 8.4%, 청년(19~34세)의 8.1%가 해당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12.4%, 50대는 15.0%, 60대는 14.1%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대의 경우 보유한 단기카드대출 중 약 30%가 10만~50만 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100만~200만 원 미만 이용자도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청년층 전체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단기카드대출 이용 비중이 약 50~54% 수준으로, 청년층의 단기카드대

출은 대체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현금서비스 이용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현금서비스<br>이용자 수<br>(전체 대출자 중<br>비율) | 177,678<br>(8.2) | 317,181<br>(8.4) | 333,297<br>(8.1) | 564,801<br>(12.4) | 704,988<br>(15.0) | 629,096<br>(14.1)  |
| 10만원 미만                            | 10,561<br>(5.9)  | 13,108<br>(4.1)  | 17,698<br>(5.3)  | 16,403<br>(2.9)   | 16,249<br>(2.3)   | 13,281<br>(2.1)    |
| 10~50만원<br>미만                      | 52,673<br>(29.6) | 70,798<br>(22.3) | 90,379<br>(27.1) | 93,161<br>(16.5)  | 104,370<br>(14.8) | 98,984<br>(15.7)   |
| 50~100만원<br>미만                     | 33,383<br>(18.8) | 49,638<br>(15.6) | 59,345<br>(17.8) | 71,086<br>(12.6)  | 85,095<br>(12.1)  | 81,773<br>(13.0)   |
| 100~200만원<br>미만                    | 35,413<br>(19.9) | 59,853<br>(18.9) | 65,669<br>(19.7) | 96,624<br>(17.1)  | 120,023<br>(17.0) | 115,087<br>(18.3)  |
| 200~300만원<br>미만                    | 17,815<br>(10.0) | 35,582<br>(11.2) | 34,759<br>(10.4) | 65,533<br>(11.6)  | 83,795<br>(11.9)  | 77,071<br>(12.3)   |
| 300~500만원<br>미만                    | 15,875<br>(8.9)  | 38,933<br>(12.3) | 33,772<br>(10.1) | 81,657<br>(14.5)  | 104,979<br>(14.9) | 94,234<br>(15.0)   |
| 500~700만원<br>미만                    | 5,947<br>(3.3)   | 19,159<br>(6.0)  | 14,187<br>(4.3)  | 45,790<br>(8.1)   | 60,874<br>(8.6)   | 52,396<br>(8.3)    |
| 700~1000만원<br>미만                   | 3,502<br>(0.2)   | 14,171<br>(0.4)  | 9,294<br>(0.2)   | 38,337<br>(0.8)   | 51,868<br>(1.1)   | 43,327<br>(1.0)    |
| 1000만원 이상                          | 2,509<br>(0.1)   | 15,939<br>(0.4)  | 8,194<br>(0.2)   | 56,210<br>(1.2)   | 77,735<br>(1.7)   | 52,943<br>(1.2)    |
| 대출액 합계<br>(억원)                     | 2,846            | 8,463            | 6,428            | 22,096            | 29,495            | 22,806             |

주: ()안은 현금서비스 대출자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단기카드대출의 이용 금액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 원 미만이 17.0%, 300만~500만 원 미만이 14.5%, 500만~700만 원 미만이 8.1%로 나타나, 전체의 약 40%

가 100만~700만 원 미만 구간의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일시적인 생활비 보충이나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소액 단기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2) 고위험 대출 현황

〈표 3-16〉은 고위험 대출 현황의 추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KoDATA 개인 신용평점 7등급 이하를 저신용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기에서 고위험 대출은 20대 및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약 절반이 고위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고위험 대출 비중이 약 35%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6〉 고위험 대출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2020.12. | 1,342,148<br>(58.1) | 1,438,325<br>(36.9) | 1,987,989<br>(49.3) | 1,895,092<br>(39.0) | 1,780,943<br>(38.4) | 1,448,679<br>(38.1) |
| 2021.12. | 1,349,297<br>(57.3) | 1,396,246<br>(35.6) | 2,009,933<br>(48.1) | 1,823,125<br>(37.8) | 1,745,002<br>(37.3) | 1,456,659<br>(36.4) |
| 2022.12. | 1,330,802<br>(57.7) | 1,346,006<br>(35.1) | 2,004,136<br>(48.0) | 1,759,285<br>(37.0) | 1,704,877<br>(36.7) | 1,461,132<br>(35.3) |
| 2023.12. | 1,356,366<br>(59.4) | 1,347,832<br>(35.6) | 2,056,510<br>(49.1) | 1,738,032<br>(37.3) | 1,757,624<br>(37.5) | 1,533,229<br>(35.7) |
| 2024.12. | 1,317,996<br>(60.7) | 1,357,689<br>(35.9) | 2,038,140<br>(49.8) | 1,694,117<br>(37.2) | 1,776,739<br>(37.8) | 1,599,482<br>(35.8) |
| 2025.6.  | 1,239,016<br>(62.9) | 1,363,613<br>(36.2) | 1,973,850<br>(50.7) | 1,652,379<br>(36.8) | 1,783,978<br>(37.9) | 1,705,829<br>(36.0) |

주: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다. 신용평점 분포 현황

〈표 3-17〉은 2024년 12월 기준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901~927점 구간(4등급)부터 830~900점(6등급)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961점 이상(1등급)에서 901~927점(4등급)인 고신용 구간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7〉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961점 이상<br>(1등급)             | 2<br>(0.0)        | 50,394<br>(0.8)     | 3,042<br>(0.0)      | 704,948<br>(9.8)    | 1,328,957<br>(16.8) | 2,215,033<br>(20.7) |
| 946점 이상~<br>960점이하<br>(2등급)  | 14,374<br>(0.3)   | 422,109<br>(6.8)    | 126,482<br>(1.7)    | 1,065,707<br>(14.8) | 982,853<br>(12.4)   | 1,447,174<br>(13.5) |
| 928점 이상~<br>945점이하<br>(3등급)  | 127,027<br>(3.1)  | 1,013,503<br>(16.3) | 587,587<br>(8.0)    | 1,184,530<br>(16.4) | 1,334,131<br>(16.9) | 2,019,805<br>(18.9) |
| 901점 이상~<br>927점 이하<br>(4등급) | 740,821<br>(17.9) | 1,585,251<br>(25.4) | 1,611,526<br>(21.8) | 1,284,094<br>(17.8) | 1,160,666<br>(14.7) | 1,629,203<br>(15.2) |
| 864점 이상~<br>900점 이하<br>(5등급) | 883,018<br>(21.3) | 1,177,148<br>(18.9) | 1,578,137<br>(21.4) | 762,268<br>(10.6)   | 746,622<br>(9.4)    | 936,864<br>(8.8)    |
| 830점 이상~<br>863점 이하<br>(6등급) | 747,400<br>(18.1) | 514,249<br>(8.3)    | 1,060,928<br>(14.4) | 398,239<br>(5.5)    | 439,855<br>(5.6)    | 562,042<br>(5.3)    |
| 789점 이상~<br>829점 이하<br>(7등급) | 839,858<br>(20.3) | 321,049<br>(5.2)    | 1,023,915<br>(13.9) | 342,974<br>(4.8)    | 403,028<br>(5.1)    | 726,034<br>(6.8)    |
| 725점 이상~<br>788점 이하<br>(8등급) | 352,514<br>(8.5)  | 385,786<br>(6.2)    | 561,032<br>(7.6)    | 423,653<br>(5.9)    | 445,430<br>(5.6)    | 387,449<br>(3.6)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661점 이상~<br>724점 이하<br>(9등급) | 170,008<br>(4.1) | 296,596<br>(4.8) | 320,440<br>(4.3) | 409,349<br>(5.7) | 425,671<br>(5.4) | 316,846<br>(3.0) |
| 660점 이하<br>(10등급)            | 264,402<br>(6.4) | 459,476<br>(7.4) | 500,592<br>(6.8) | 635,443<br>(8.8) | 641,229<br>(8.1) | 440,943<br>(4.1) |

주1: (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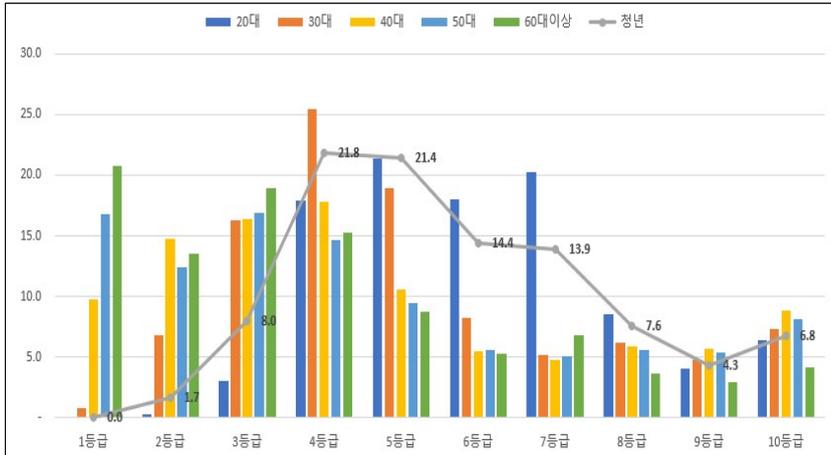
2: 각 연령대별 신용평점 분포에서 상위 2개 항목은 주황색으로, 하위 2개 항목은 초록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특히 20대(19~29세)의 약 5분의 1이 864~900점 구간(5등급)에 분포해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위 신용 구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와 청년 전체(19~34세) 역시 901~927점 구간(4등급)에 속한 비중이 가장 높아 2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5등급이 21.4%로 나타난다. 즉,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전반적으로 중위권 수준(4~5등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고신용 구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50대는 928~945점(3등급, 16.9%)과 961점 이상(1등급, 16.8%)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60대 이상은 특히 961점 이상 최상위 등급에서 20.7%가 분포하여, 고령층일수록 신용도가 높게 유지되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적 요인과도 연결된다. 청년층은 자산 형성과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신용평점이 중·저위권에 집중되는 반면, 중·장년층은 장기간의 소득·자산 축적과 안정적인 신용거래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평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저연령층은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위험에 취약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용도가 향상되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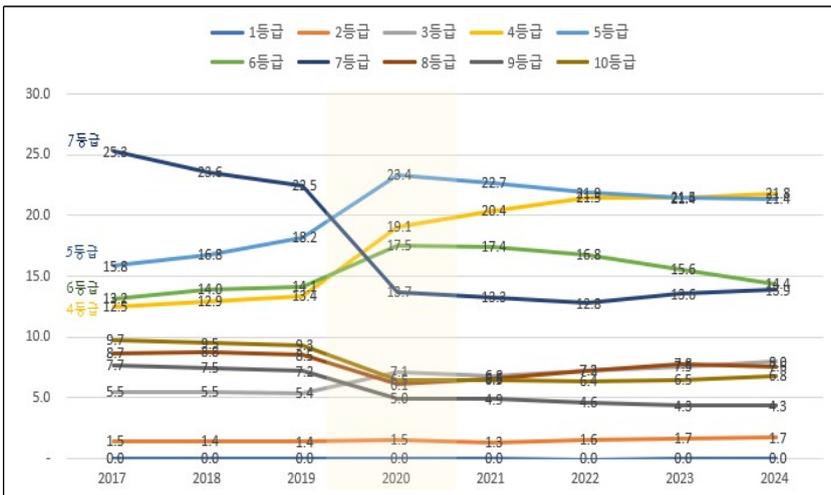
[그림 3-3]을 살펴보면, 2020년에 중하위 등급(7등급)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위 등급(4~6등급)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특히 789~829점 이하(7등급) 비중은 2017년 25.3%에서 2020년 13.7%로 급감한 뒤, 2024년에는 13.9%로 소폭 상승하였다. 725~788점 이하(8등급)는 2017년 8.7%에서 2024년 7.6%로, 9등급은 7.7%에서 4.3%로, 10등급은 9.7%에서 6.8%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8~10등급)의 전체 비중은 2017년 26%에서 2024년 약 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전후로 시행된 신용평가제도 개편(신용등급→신용점수제 전환)과 코로나19 이후의 금융지원 정책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저신용층의 비중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전체의 약 5분의 1을 차

7)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1.1.1.일부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5101>(검색일: 2025.9.3)

지하고 있어 금융시장 내 구조적 취약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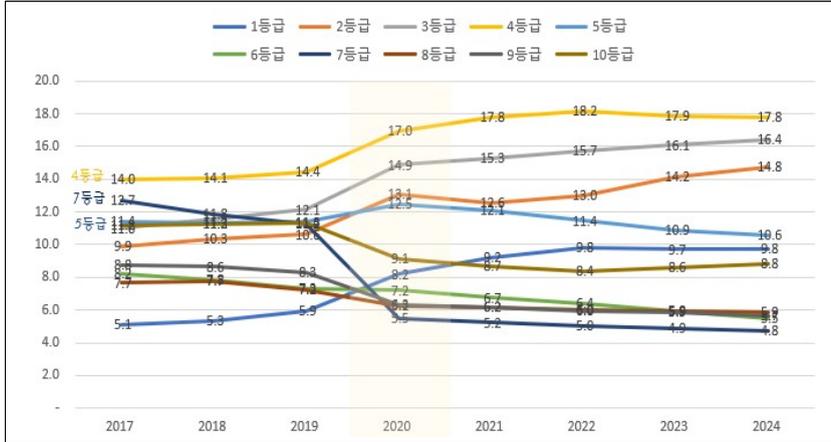
[그림 3-3] 청년(29~34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청년층과의 비교를 위해 40대의 신용평점 변화를 살펴본 결과, 7등급 비중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절반 수준(11.2%→4.8%)으로 감소하였으며, 1등급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4년 9.8%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2020년 이후)에는 1~4등급의 고신용자 비중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40대의 중하위 등급(7등급) 비중은 약 2.3배 감소한 반면 청년층은 같은 기간 약 1.8배 감소하는 데 그쳐, 40대의 신용등급 개선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40대(40~49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2. 연체 현황

### 가. 장기연체 현황(90일 이상)

#### 1)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 현황

90일 이상 장기연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5년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장기연체자 수와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19~34세)은 장기연체자가 127,315명에서 162,71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연체자 비중도 1.8%에서 2.3%로 상승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0.51%p 증가한 것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40대는 장기연체자 수가 214,012명에서 215,58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장기연체자 비중도 2.9%에서 3.0%로 소폭 상승하는 등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장기연체 현황(90일 이상)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2020.12.     | 70,646<br>(1.7) | 141,269<br>(2.3) | 127,315<br>(1.8) | 214,012<br>(2.9) | 204,166<br>(2.7) | 138,913<br>(1.7)   |
| 2021.12.     | 67,254<br>(1.6) | 121,506<br>(2.0) | 119,041<br>(1.7) | 186,309<br>(2.5) | 185,587<br>(2.4) | 136,264<br>(1.5)   |
| 2022.12.     | 71,192<br>(1.7) | 115,368<br>(1.9) | 124,954<br>(1.7) | 173,188<br>(2.3) | 174,591<br>(2.3) | 137,274<br>(1.4)   |
| 2023.12.     | 83,076<br>(2.0) | 132,607<br>(2.2) | 148,311<br>(2.0) | 190,635<br>(2.6) | 192,027<br>(2.4) | 154,471<br>(1.5)   |
| 2024.12.     | 88,639<br>(2.1) | 150,888<br>(2.4) | 165,459<br>(2.2) | 209,082<br>(2.9) | 215,052<br>(2.7) | 179,635<br>(1.7)   |
| 2025.6.      | 81,145<br>(2.2) | 157,616<br>(2.5) | 162,717<br>(2.3) | 215,581<br>(3.0) | 227,415<br>(2.9) | 203,923<br>(1.8)   |
| 5년간<br>연체증가율 | 0.49%p          | 0.25%p           | <b>0.51%p</b>    | 0.16%p           | 0.14%p           | 0.10%p             |

주: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표 3-19〉의 90일 이상 연체자 중 연체 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년 이상~3년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및 청년층(19~34세)에서 해당 구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년층의 경우 약 45%가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연체가 단기간 내 해소되는 일시적 연체라기보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중기 연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9〉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 이상<br>(60세 이상)      |
|-------------------|-------------------------|-------------------------|-------------------------|-------------------------|-------------------------|-------------------------|
| 90일 이상<br>장기연체자   | 88,639<br>(100.0)       | 150,888<br>(100.0)      | 165,459<br>(100.0)      | 209,082<br>(100.0)      | 215,052<br>(100.0)      | 179,635<br>(100.0)      |
| 90일 이상<br>180일 미만 | 10,478<br>(11.8)        | 13,826<br>(9.2)         | 17,779<br>(10.7)        | 17,209<br>(8.2)         | 16,651<br>(7.7)         | 13,236<br>(7.4)         |
| 180일 이상 1년<br>미만  | 15,574<br>(17.6)        | 23,198<br>(15.4)        | 27,532<br>(16.6)        | 30,341<br>(14.5)        | 29,592<br>(13.8)        | 24,127<br>(13.4)        |
| 1년 이상 3년<br>미만    | 41,718<br><b>(47.1)</b> | 65,415<br><b>(43.4)</b> | 75,827<br><b>(45.8)</b> | 82,661<br><b>(39.5)</b> | 79,076<br><b>(36.8)</b> | 61,864<br><b>(34.4)</b> |
| 3년 이상 5년<br>미만    | 15,141<br>(17.1)        | 26,941<br>(17.9)        | 29,160<br>(17.6)        | 35,806<br>(17.1)        | 37,873<br>(17.6)        | 32,374<br>(18.0)        |
| 5년 이상             | 5,728<br>(6.5)          | 21,508<br>(14.3)        | 15,161<br>(9.2)         | 43,065<br><b>(20.6)</b> | 51,860<br><b>(24.1)</b> | 48,034<br><b>(26.7)</b> |

주: ()안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중 기간별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또한, 20대의 경우 약 47%가 '1년 이상~3년 미만' 연체에 해당하며, 그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17.1%, '5년 이상'은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연체가 장기간 누적된 채무라기보다는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불안정이나 금융충격 등으로 발생한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형태가 많음을 의미한다. 즉, 채무가 장기 고착화 단계로 이행하기 이전의 중기 연체 단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5년 이상 장기연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5년 이상 연체 비중이 26.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경우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해소되기보다 장기간 미상환 채무로 누적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층의 연체가 사회 진입기의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기 지속형 연체의 성격을 갖는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연체는 장기간 누적된 채무가 고착화된 구조적 연체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 2) 금액대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

〈표 3-20〉은 2024년 12월 기준 금액대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을 보여준다. 연령별 연체액 총액을 보면, 20대는 1조 5,663억 원, 30대는 5조 816억 원, 청년층(19~34세)은 3조 6,937억 원, 40대는 11조 6,485억 원, 50대는 15조 2,671억 원, 60대 이상은 14조 3,85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 40대로 이동하면서 연체액 총액이 약 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금액 구간을 보면, 20대는 '100만~500만 원 미만' 구간의 장기연체자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0만 원 미만' 구간도 22.4%로 나타났다. 즉, 20대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1,000만~3,000만 원 미만' 구간의 장기연체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는 28.7%, 40대는 27.4%, 50대는 27.0%, 60대 이상은 29.1%로 나타났다. 또한, 40대 이상에서는 '5,000만~1억 원 미만' 구간의 장기연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40대는 14.4%, 50대는 14.5%, 60대 이상은 10.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연체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청년층의 장기연체는 비교적 소액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장년층은 중대형 규모의 채무가 장기간 누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0〉 금액대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90일 이상<br>장기연체자    | 88,639<br>(100.0) | 150,888<br>(100.0) | 165,459<br>(100.0) | 209,082<br>(100.0) | 215,052<br>(100.0) | 179,635<br>(100.0) |
| 100만원 미만           | 19,822<br>(22.4)  | 19,271<br>(12.8)   | 30,769<br>(18.6)   | 18,501<br>(8.8)    | 17,809<br>(8.3)    | 16,548<br>(9.2)    |
| 100~500만원<br>미만    | 27,341<br>(30.8)  | 29,560<br>(19.6)   | 43,875<br>(26.5)   | 29,854<br>(14.3)   | 29,069<br>(13.5)   | 27,743<br>(15.4)   |
| 500~1000만원<br>미만   | 14,030<br>(15.8)  | 19,779<br>(13.1)   | 24,673<br>(14.9)   | 22,194<br>(10.6)   | 22,297<br>(10.4)   | 21,524<br>(12.0)   |
| 1000~3000만<br>원 미만 | 18,995<br>(21.4)  | 43,346<br>(28.7)   | 41,051<br>(24.8)   | 57,209<br>(27.4)   | 58,077<br>(27.0)   | 52,304<br>(29.1)   |
| 3000~5000만<br>원 미만 | 4,930<br>(5.6)    | 18,159<br>(12.0)   | 13,362<br>(8.1)    | 30,951<br>(14.8)   | 31,650<br>(14.7)   | 23,499<br>(13.1)   |
| 5000~1억원<br>미만     | 2,439<br>(2.8)    | 13,987<br>(9.3)    | 8,186<br>(4.9)     | 30,042<br>(14.4)   | 31,162<br>(14.5)   | 19,541<br>(10.9)   |
| 1~3억원 미만           | 853<br>(1.0)      | 5,247<br>(3.5)     | 2,761<br>(1.7)     | 15,525<br>(7.4)    | 18,100<br>(8.4)    | 12,148<br>(6.8)    |
| 3~5억원 미만           | 112<br>(0.1)      | 729<br>(0.5)       | 354<br>(0.2)       | 2,327<br>(1.1)     | 2,974<br>(1.4)     | 2,576<br>(1.4)     |
| 5억원 이상             | 117<br>(0.1)      | 810<br>(0.5)       | 428<br>(0.3)       | 2,479<br>(1.2)     | 3,914<br>(1.8)     | 3,752<br>(2.1)     |
| 연체액 합계<br>(억원)     | 15,663            | 50,816             | 36,937             | 116,485            | 152,671            | 143,855            |

주: ()안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중 금액대별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3) 종류별 연체 보유 현황

〈표 3-21〉은 2024년 12월 기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연체 종류별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가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60세 이상 72.7%), 이는 장기연체자의 주요 원인이 대출 상환 지연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비율이 약 41~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9~34세)의 경우,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가 7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42.5%로 나타났다. 그 외 부실채권 인수 14.8%, 5만 원 이상 카드론 연체 11.5%,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는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1〉 연체종류별 연체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 69,334<br>(78.2) | 122,343<br>(81.1) | 131,195<br>(79.3) | 171,371<br>(82.0) | 172,009<br>(80.0) | 130,545<br>(72.7) |
| 주택자금대출 9개월 이상 연체  | 464<br>(0.5)     | 1,685<br>(1.1)    | 1,176<br>(0.7)    | 3,136<br>(1.5)    | 2,683<br>(1.2)    | 2,170<br>(1.2)    |
| 5만원이상 카드론 연체      | 8,257<br>(9.3)   | 24,868<br>(16.5)  | 19,052<br>(11.5)  | 57,270<br>(27.4)  | 69,864<br>(32.5)  | 68,283<br>(38.0)  |
| 신용카드 대금연체         | 36,560<br>(41.2) | 69,223<br>(45.9)  | 70,311<br>(42.5)  | 112,449<br>(53.8) | 118,889<br>(55.3) | 100,306<br>(55.8) |
| 할부금융 대금연체         | 3,117<br>(3.5)   | 6,976<br>(4.6)    | 6,420<br>(3.9)    | 11,123<br>(5.3)   | 11,787<br>(5.5)   | 9,182<br>(5.1)    |
| 부실채권 인수           | 12,439<br>(14.0) | 22,677<br>(15.0)  | 24,568<br>(14.8)  | 27,050<br>(12.9)  | 24,519<br>(11.4)  | 14,812<br>(8.2)   |
|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2) | 2,077<br>(2.3)   | 3,491<br>(2.3)    | 4,067<br>(2.5)    | 1,005<br>(0.5)    | 564<br>(0.3)      | 115<br>(0.1)      |

주1: ()안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중 해당 대상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종류별로 연체를 중복 보유한 경우 복수 항목에 중복 포함될 수 있음

주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가 포함됨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한편,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5만 원 이상 카드론 연체' 비중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는 9.3%, 30대 16.5%, 청년 11.5%, 40대 27.4%, 50대 32.5%, 60대 이상은 38.0%로,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 연체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고령층에서 단기 고금리성 신용대출을 이용한 후 상황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

#### 4) 연체 해제 현황

앞서 분석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연체 미해제자'에 해당하며, 이는 연체 발생 후 90일이 지나도록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의미한다. 반면, '연체 해제자'는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90일 이내에 상황을 완료하여 연체 상태가 해소된 사람을 말한다.

연체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20대는 2020년 15,760명에서 2024년 71,49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체 해제율 또한 18.2%에서 44.6%로 상승하였다. 즉, 과거에는 연체자 중 약 20%만이 상황을 통해 연체를 해제했다면, 현재는 45% 이상이 연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청년(19~34세)의 경우, 2020년 29,690명에서 2024년 156,381명으로 증가, 연체 해제율은 18.9%에서 48.6%로 확대되었다. 40대는 2020년 40,642명에서 223,069명으로, 50대는 31,358명에서 215,271명으로, 60대 이상은 18,666명에서 171,051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연체 해제율은 각각 16%→51.6%, 13.3%→50.0%, 11.8%→18.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 연령대에서 연체 해제율이 2020년 평균 12~18% 수준

에서 2024년 약 50% 전후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상환유예, 채무조정 확대,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정부의 금융지원정책과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정비로 인해 연체 해제가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 3-22〉 연체 해제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2020.12. | 15,760<br>(18.2) | 32,978<br>(18.9)  | 29,690<br>(18.9)  | 40,642<br>(16.0)  | 31,358<br>(13.3)  | 18,666<br>(11.8)  |
| 2021.12. | 35,788<br>(34.7) | 73,077<br>(37.6)  | 68,436<br>(36.5)  | 95,459<br>(33.9)  | 81,240<br>(30.4)  | 54,638<br>(28.6)  |
| 2022.12. | 52,581<br>(42.5) | 109,245<br>(48.6) | 104,669<br>(45.6) | 143,977<br>(45.4) | 126,893<br>(42.1) | 91,513<br>(40.0)  |
| 2023.12. | 66,157<br>(44.3) | 142,649<br>(51.8) | 136,789<br>(48.0) | 187,775<br>(49.6) | 172,622<br>(47.3) | 130,470<br>(45.8) |
| 2024.12. | 71,495<br>(44.6) | 169,605<br>(52.9) | 156,381<br>(48.6) | 223,069<br>(51.6) | 215,271<br>(50.0) | 171,051<br>(48.8) |

주: ()안은 연체 경험자 중 연체 해제율(%)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나. 채무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

### 1) 채무불이행 등록 현황

채무불이행 등록은 신용정보기관(신용평가회사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공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대는 2020년 4,142명에서 2024년 6,5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0.2%에서 0.3%로 상승하였다. 30대는 2020년 14,233명에서 18,060명으로 증가, 비중은 0.4%에서 0.5%로 상승하였다. 청년층(19~34세)의 경우

2020년 9,038명에서 2024년 14,571명으로 증가, 비중은 0.2%에서 0.4%로 상승하였다. 40대는 2020년 39,957명에서 2024년 40,965명으로 증가, 비중은 0.8%에서 0.9%로 상승하였으며, 50대는 53,749명에서 62,315명으로 증가, 비중은 1.2%에서 1.3%로 상승하였다. 60대 이상은 39,082명에서 62,938명으로 증가, 비중은 1.0%에서 1.4%로 상승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청년층이 0.2%p 증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또한 0.4%p 증가(1.0% → 1.4%)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등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취약 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채무불이행 등록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2020.12. | 4,142<br>(0.2)  | 14,233<br>(0.4) | 9,038<br>(0.2)  | 38,957<br>(0.8) | 53,749<br>(1.2) | 39,082<br>(1.0)  |
| 2021.12. | 4,611<br>(0.2)  | 14,687<br>(0.4) | 10,050<br>(0.2) | 39,335<br>(0.8) | 57,046<br>(1.2) | 45,785<br>(1.1)  |
| 2022.12. | 4,947<br>(0.2)  | 15,115<br>(0.4) | 10,955<br>(0.3) | 39,590<br>(0.8) | 58,717<br>(1.3) | 51,797<br>(1.3)  |
| 2023.12. | 5,746<br>(0.3)  | 16,857<br>(0.4) | 12,862<br>(0.3) | 41,009<br>(0.9) | 62,248<br>(1.3) | 59,096<br>(1.4)  |
| 2024.12. | 6,549<br>(0.3)  | 18,060<br>(0.5) | 14,571<br>(0.4) | 40,965<br>(0.9) | 62,315<br>(1.3) | 62,938<br>(1.4)  |

주: ()안은 대출 보유자 중 채무불이행자 비율(%)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2) 채무불이행자 보유 대출금액 현황

〈표 3-24〉는 채무불이행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람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약 80%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연체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채무 상환 불이행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보유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0~37%), 그중에서도 청년층(19~34세)의 비중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채무불이행 청년 중 약 3명 중 1명 이상이 100만~5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구간의 대출을 보유한 비중이 약 20~2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에도 19.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액 총합을 보면, 20대는 515억 원, 청년층은 1,593억 원, 40대는 2,473억 원, 50대는 2조 5,205억 원, 60대 이상은 1조 2,933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4〉 채무불이행 보유 대출금액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채무불이행자<br>전체          | 6,549            | 18,060            | 14,571            | 40,965            | 62,315            | 62,938            |
| 채무불이행자<br>중 대출보유(명)   | 5,480<br>(100.0) | 15,127<br>(100.0) | 12,261<br>(100.0) | 33,510<br>(100.0) | 49,832<br>(100.0) | 44,232<br>(100.0) |
| 100만원 미만              | 1,062<br>(19.4)  | 2,047<br>(13.5)   | 2,005<br>(16.4)   | 4,026<br>(12.0)   | 5,525<br>(11.1)   | 5,239<br>(11.8)   |
| 100만원 이상<br>500만원 미만  | 2,016<br>(36.8)  | 5,074<br>(33.5)   | 4,303<br>(35.1)   | 11,270<br>(33.6)  | 16,249<br>(32.6)  | 13,221<br>(29.9)  |
| 500만원 이상<br>1000만원 미만 | 1,026<br>(18.7)  | 2,737<br>(18.1)   | 2,280<br>(18.6)   | 5,757<br>(17.2)   | 8,622<br>(17.3)   | 8,000<br>(18.1)   |

8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1000만원 이상<br>3000만원 미만 | 1,086<br>(19.8) | 3,710<br>(24.5) | 2,786<br>(22.7) | 7,881<br>(23.5) | 12,051<br>(24.2) | 10,773<br>(24.4) |
| 3000만원 이상<br>5000만원 미만 | 173<br>(3.2)    | 812<br>(5.4)    | 484<br>(3.9)    | 2,029<br>(6.1)  | 3,096<br>(6.2)   | 2,704<br>(6.1)   |
| 5000만원 이상<br>1억원 미만    | 70<br>(1.3)     | 445<br>(2.9)    | 234<br>(1.9)    | 1,425<br>(4.3)  | 2,317<br>(4.6)   | 2,150<br>(4.9)   |
| 1억원 이상<br>3억원 미만       | 42<br>(0.8)     | 234<br>(1.5)    | 133<br>(1.1)    | 886<br>(2.6)    | 1,542<br>(3.1)   | 1,604<br>(3.6)   |
| 3억원 이상 5억<br>미만        | 5<br>(0.1)      | 34<br>(0.2)     | 20<br>(0.2)     | 125<br>(0.4)    | 238<br>(0.5)     | 300<br>(0.7)     |
| 5억원 이상                 | -<br>(-)        | 34<br>(0.2)     | 16<br>(0.1)     | 111<br>(0.3)    | 192<br>(0.4)     | 241<br>(0.5)     |
| 대출액 합계<br>(억원)         | 515             | 2,473           | 1,593           | 11,166          | 25,205           | 12,933           |

주: (-)안은 채무불이행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해당 금액 구간별 비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3)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현황

신용평가데이터에 등록된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현황(2024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제도 유형별로 그 이용 규모와 연령별 분포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일반(법인)회생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파산면책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신용회복지원, 파산면책, 개인회생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5〉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일반(법인)회생 | 8               | 94              | 41             | 335             | 501             | 333              |
| 신용회복지원   | 8,984           | 15,333          | 17,127         | 17,381          | 13,891          | 8,340            |
| 파산면책     | 703             | 4,429           | 2,291          | 13,796          | 21,589          | 27,416           |
| 개인회생     | 16,449          | 55,470          | 43,966         | 67,586          | 46,626          | 16,520           |
| 합계       | 25,790          | 74,553          | 62,683         | 98,068          | 81,630          | 51,777           |

주: 일반(법인)회생은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자,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파산면책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자,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자를 말함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먼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자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20대 8,984명, 30대 15,333명, 청년층(19~34세) 17,127명, 40대 17,381명, 50대 13,891명, 60대 이상 8,34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 또한 약 1만7천 명 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이 신용회복지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자는 신용회복지원보다 전반적으로 많았다. 20대는 16,449명으로 신용회복지원의 약 1.8배 수준이었으며, 30대는 55,470명으로 3.7배, 청년층은 43,966명으로 2.6배, 40대는 67,586명으로 3.9배, 50대는 46,626명으로 3.4배, 60대 이상은 16,520명으로 약 2배 더 많았다. 즉, 전 연령층에서 신용회복지원보다 약 2~4배 많은 인원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40대의 개인회생 이용 규모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부채 상황 부담이 누적되며 법적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파산면책제도 역시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로, 청년층 이용자가 2,29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파산면책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40대와 50대를 거쳐 60대 이상에서는 27,416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령층에서 장기적 상환불능 상태가 누적되면서 회생보다는 면책 중심의 사후적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청년층은 신용회복지원이나 개인회생 등 상환 중심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령층은 파산면책 등 완전 면책형 제도 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6〉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대출액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신용회복지원 이용자의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20대는 1071억 원, 30대는 3458억 원, 청년층(19~34세)은 2,562억 원, 40대는 4977억 원, 50대는 3775억 원, 60대 이상은 17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40~50대)의 대출규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대출규모는 신용회복지원 이용자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구체적으로 20대는 2104억 원으로 신용회복지원의 약 2배, 30대는 1조 1136억 원으로 3.2배, 청년층은 7044억 원으로 2.8배, 40대는 2조 5467억 원으로 5.2배, 50대는 1조 5682억 원으로 4.2배, 60대 이상은 4297억 원으로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대에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대출규모가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보다 2배 이상 크며, 특히 30~50대 연령층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고, 그만큼 상환불능에 따른 법적 회생 절차 이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파산면책 이용자의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30대가 1384억 원으로 40대(544억 원)보다 높았으며, 50대는 3026억 원, 60대 이상은

18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여전히 일정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며, 장기적인 상환불능 상태가 누적되어 법적 면책 절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6〉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대출액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20대<br>(19~29세) | 30대<br>(30~39세) | 청년<br>(19~34세) | 40대<br>(40~49세) | 50대<br>(50~59세) | 60대이상<br>(60세이상) |
|----------|-----------------|-----------------|----------------|-----------------|-----------------|------------------|
| 일반(법인)회생 | 1               | 102             | 36             | 464             | 643             | 447              |
| 신용회복지원   | 1,071           | 3,458           | 2,562          | 4,977           | 3,775           | 1,790            |
| 파산면책     | 12              | 1,384           | 43             | 544             | 3,026           | 1,851            |
| 개인회생     | 2,104           | 11,136          | 7,044          | 25,467          | 15,692          | 4,297            |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제3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 금융변화

### 1. 분석 가설 및 분석 모형 설정

본 절의 실증분석에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금융취약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반회생,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등으로 구성되는데, 본 절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반회생을 제외하고, 신용회복지원(사적), 개인회생(공적)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평가데이터인 전국민 실제 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 경험이 평균적인 신용평점, 연체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신용

회복지원, 개인회생)의 이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용평점과 연체율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연령구조에 따라 이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신용평점은 신용평가데이터(KoDATA)가 제공하는 신용평점 원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대출연체율은 개인별 대출액 대비 연체액으로 계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서 Jordà(2005)가 제안한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Method)를 이용하고자 한다. 국소투영법은 설명변수의 충격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따라 종속변수의 반응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비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 금융접근성 지표는 신용평점, 대출연체율로 설정하도록 한다.

$$c_{it+h} = \alpha_h^{type} + \theta_h^{type} p_{it}^{type} + \gamma_{type}' X + \epsilon_{it+h}^{type}$$

$$m_{it+h} = \alpha_h^{type} + o_h^{type} p_{it}^{type} + \Gamma_{type}' X + e_{it+h}^{type}$$

여기서  $c_{it}$ 는 신용평점 로그값,  $m_{it}$ 는 대출연체율,  $p_{it}^{type}$ 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나타내며, 유형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비조건부 분석과 연령을 19~34세 청년층, 35~49세, 50대, 36~59세 중장년층,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한 조건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분석 결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가입할 경우 각 조건에 따라 얼마만에 어느 정도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가 각 연령에게 더 효과가 좋으며, 특히 청년층에 유리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분석을 위해서 수행한 데이터 가공에 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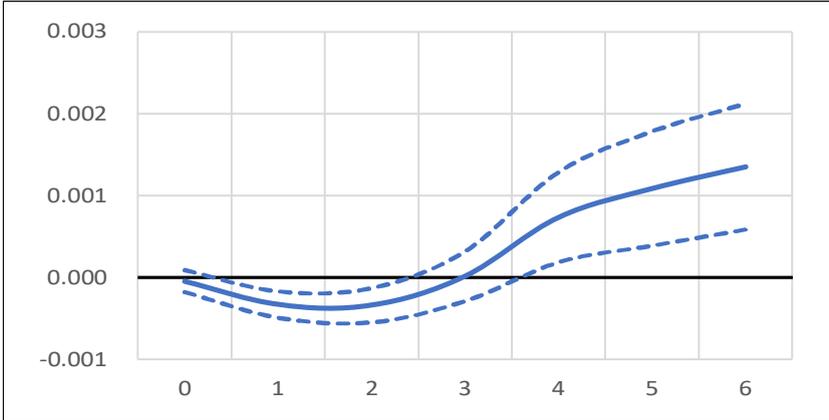
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경험 충격이 개인의 금융취약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며, 이를 위해서 KODATA 원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로 총 11개년 자료이다. 원자료의 총 관측점은 339,972,060개인데, 이는 연산을 위한 컴퓨터의 물리적 공간으로 자료 로딩, 연산 수준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적 자료 구조를 거시적 자료 구조로 변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해당 신용회복지원제도 경험 여부에 따라서 기대되는 평균적인 신용점수 등을 산정하였으며, 이 값에 기초하여 충격반응 함수를 추정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하여 연령 코호트를 형성하였다.

## 2. 분석 결과

다음은 신용회복지원(사적)의 경험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 연령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 초기에는 신용점수 개선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입 이후 약 4년의 시차를 두고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 가입 충격이 발생한 4년 이후 기대되는 신용점수의 회복은 약 1.000735 점으로 추정된다.<sup>8)</sup>

8) 4년차 로그값은 0.000735이며, 신용점수 개선값은  $\exp(0.000735)$ 로 산출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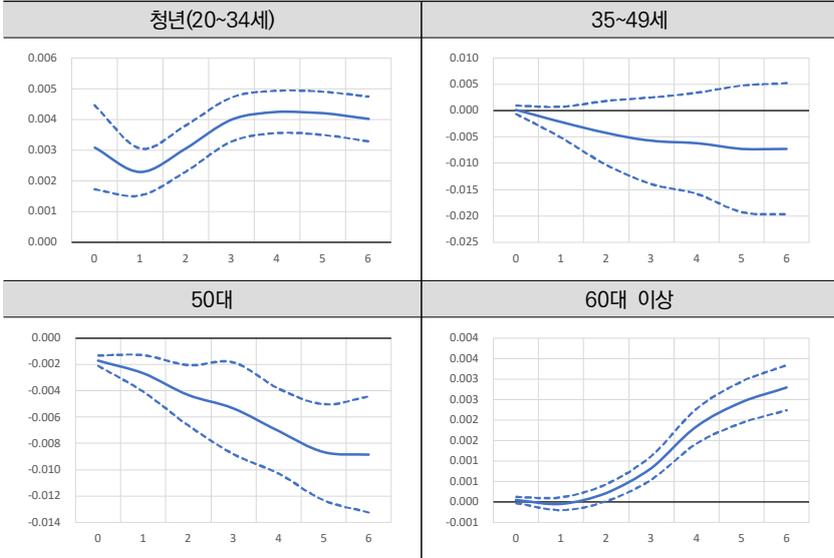
[그림 3-5]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의 경험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신용회복지원 가입이 신용점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5~49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신용점수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대는 오히려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가입 이후 당해연도부터 2년 후까지는 신용점수의 회복 개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 약 3년 이후부터 신용점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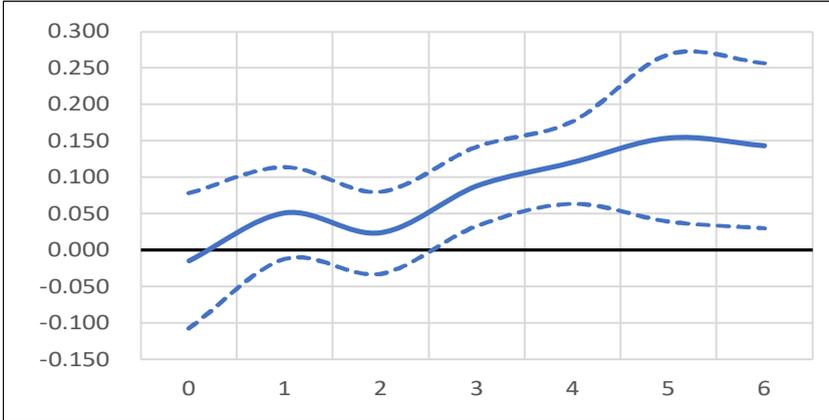
[그림 3-6]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신용회복지원(사적)의 경험이 대출연체율(대출액 대비 연체액)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연령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 초기에는 대출연체율 개선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입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대출연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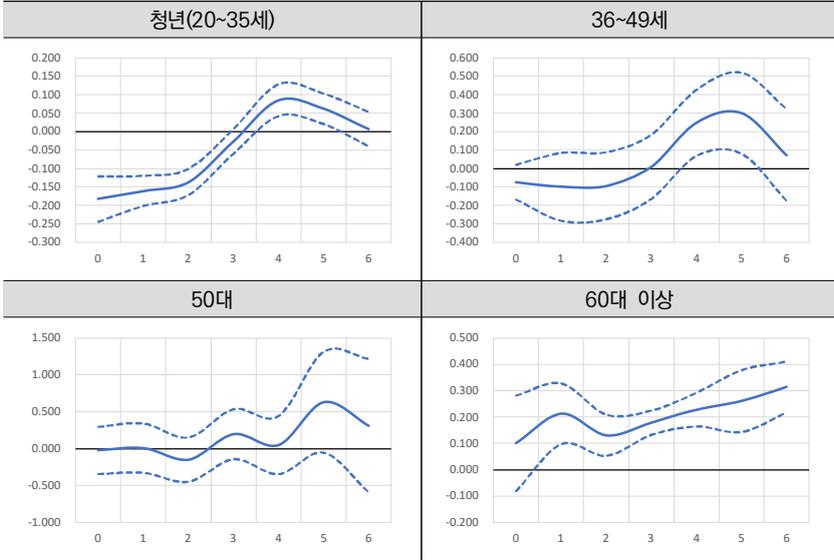
[그림 3-7]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의 경험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신용회복지원 가입 직후 대출연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약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출연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4~5년차에는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6~49세는 약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체율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4~5년차에는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대는 연체율 변화에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가입 이후 오히려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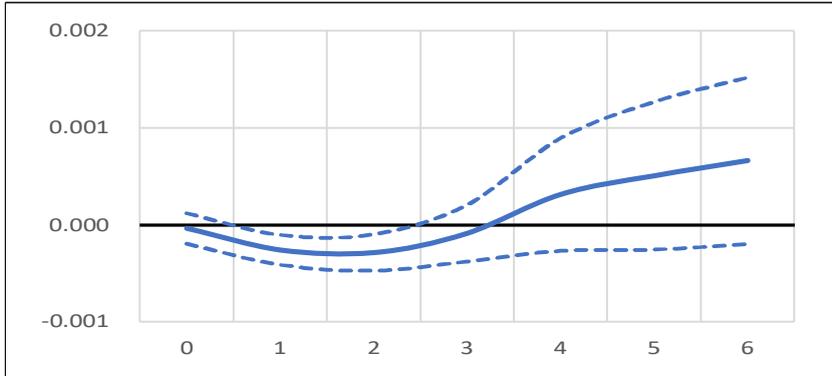
[그림 3-8]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개인회생(공적)의 경험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지원(사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점수의 회복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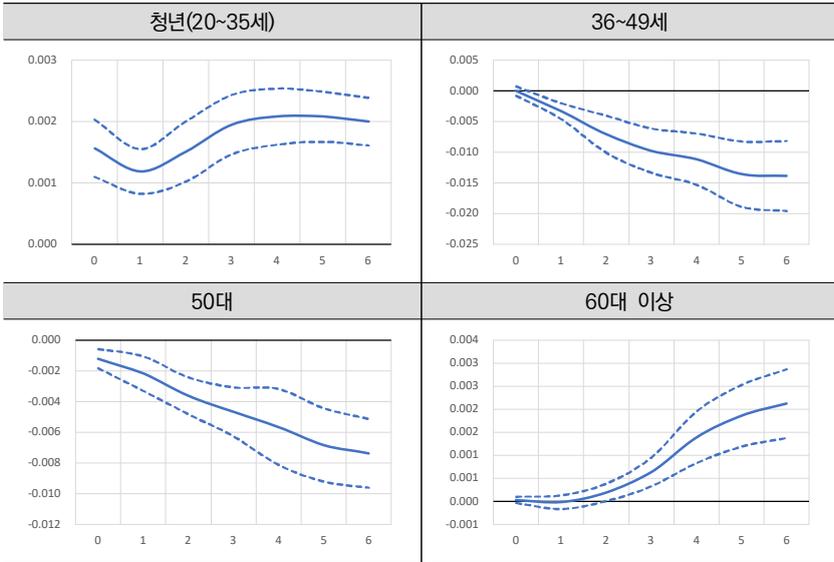
[그림 3-9]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청년층은 개인회생 이후 신용점수 회복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영향은 4~5년 이후에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6~49세, 50대는 개인회생 이후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약 3~4년의 시차를 두고 신용점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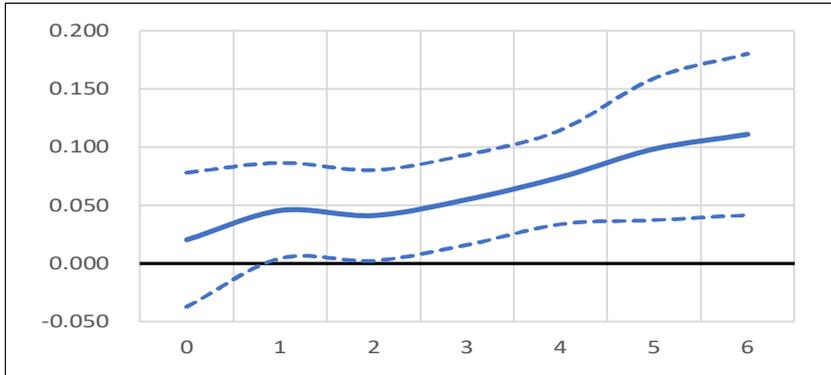
[그림 3-10]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연령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이후에도 대출연체율이 감소하는 영향을 발견되지 않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서 오히려 대출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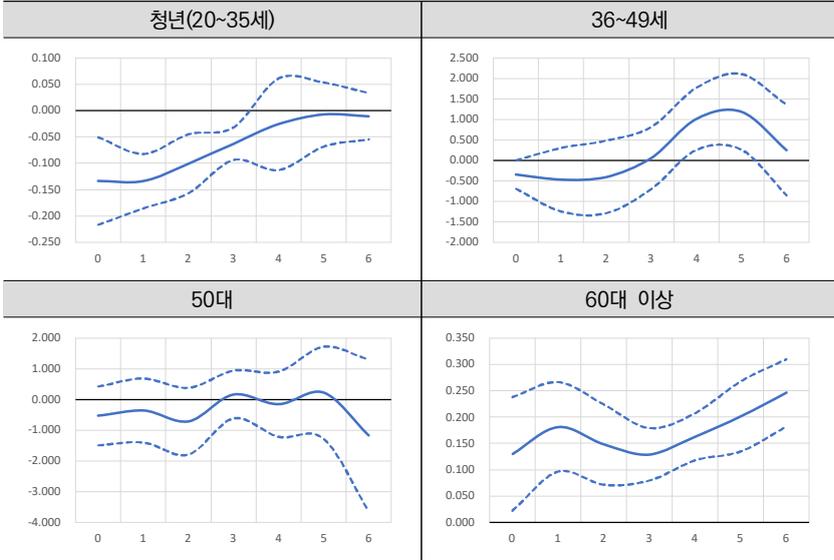
[그림 3-11]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은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청년층은 개인회생 이후 대출연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체율 하락 효과는 약 3년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인회생 이후에는 향후 6년 이내에서는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았다. 반면, 36~49세는 개인회생 이후 3년 이내에는 대출연체율 하락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4~5년차에는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대의 경우는 개인회생이 연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영향을 발견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개인회생 이후 오히려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2]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주: 가로축은 제도 가입 충격 발생 이후 시차, 세로축은 충격반응을 나타냄  
출처: KoDATA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2020~2025년 한국평가데이터 전수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 개설, 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을 연령대별로 검토하였다. 다음은 주요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신용 개설 현황에서는 청년층이 신용·체크카드 개설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 및 고령층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개설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난다. 햇살론카드 개설 역시 40대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년층은 주로 신용카드 12개를, 40~50대는 2~3개를, 60대 이상은 1~2개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연

령층은 4~5등급 등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평점 비중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2등급 고신용 비중이 확대되었다.

둘째, 대출 현황에서는 40대가 대출 보유 인구 비중 63.1%로 가장 높으며 30대 60.7%, 50대 59.4%, 20대 52.5%, 60대 이상 41.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청년층은 대출 보유 건수가 7개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위험 대출 집중이 확인되며, 대출액 합계는 20대 81조원, 30대 423조원, 청년 265조원, 40대 579조원, 50대 537조원, 60대 이상 536조원으로 30대부터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출 금액 분포는 20대는 500만원 미만과 1000~3000만원 미만이 많고 30~50대는 1~3억원, 60대 이상은 1000~3000만원 미만에 집중되었다. 대출 종류는 청년층이 학자금·신용·전세자금대출에 집중되는 반면 40대 이상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민금융상품 중에서는 전 연령에서 햇살론 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20대와 청년층에서 햇살론 youth 비중이 각각 62.7%, 46.3%로 매우 높다. 현금서비스는 2030대는 10~5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고 40대 이상은 100~200만원 구간 비중이 높아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셋째, 연체 현황에서는 전 연령에서 장기연체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며 청년층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0.5%p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90~180일 미만 장기연체는 금리 상승기였던 2022~2023년에 모든 연령에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거나 청년층 비중이 여전히 높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연체 역시 청년층에서 가장 높으며 1~3년 장기연체는 20~30대 청년에 집중되었다. 3~5년 연체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감소하며 5년 이상 장기연체는 30대부터 비중이 높아지고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넷째, 채무 불이행 및 신용회복 현황에서는 20~30대 및 청년에 비해 중장년층에서 채무 불이행 빈도와 대출금액이 더 크며 50대가 가장 높다.

그러나 연체 해제율은 전 연령에서 2025년 기준 50% 전후까지 상승하며 신용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은 개인회생 모두 중장년층에서 많으며 청년층은 신용회복지원 협약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제도의 동태적 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제도 가입 직후에는 신용평점 개선 효과가 없었으나 약 4년 후부터 회복이 이루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회복 효과가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36~49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50대는 오히려 하락이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은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점진적 회복이 관찰되었다. 대출연체율은 전체적으로 가입 3년 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청년층은 가입 직후부터 3년간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36~49세와 50대는 유의한 변화가 없고, 60대 이상은 연체율이 상승했다. 둘째, 개인회생 제도는 전반적으로 신용점수 회복 효과가 미미했다. 청년층은 일정한 회복 경향을 보였으나, 36~49세와 50대는 신용점수가 하락했고 60대 이상은 3~4년 후에야 개선되었다. 대출연체율의 경우 청년층만이 약 3년간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본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제도 모두 청년층에서 신용점수 회복과 연체율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중·장년층에서는 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연령층에서는 개인회생 이후에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재활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4장

###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의 효과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과 비이용 청년 특성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상세 특성

제5절 소결



## 제4장

#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의 효과 분석

### 제1절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 1. 채무조정제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

채무조정제도의 운영에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된다. 채무자가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선임 등에 상당한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회생법원 운영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제도 존속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에도 상당한 세금이 소요된다. 더욱이 채무조정제도가 확대되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잠재적 채무자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의 간접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무조정제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점차 채무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기저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보다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 합의가 자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가진다. 첫째, 과다 채무자가 신규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가계부실의 심화를 방지한다. 둘째, 채무자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한계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산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시켜 국가 경제의 총생산성 손실을 막는다. 셋째, 과도한 채무 압박이 야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 이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

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가족 해체, 극단적 선택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도 실증분석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으로 채무자의 소비가 회복되고(Gross and Souleles, 2002), 장기적인 연평균 소득이 증가(Dobbie et al., 2017)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채무 스트레스 완화로 사망률의 감소(Dobbie et al., 2017)나 자아존중감·우울·행복 지표의 개선(신진욱 외, 2020),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채무조정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의 규모가 작거나 불안정하고 자산 형성이나 경력관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필요성이 더 높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청년이 학업·취업준비·대인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효과도 더 높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4세 청년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가설 설정

본 장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에게 재무건전성, 노동생산성, 심리안정 및 건강증진, 가족·사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연구가설1.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증진된다.

- 1.1. 총대출량 및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더 많이 감소한다.
- 1.2.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 1.3. 지출습관 개선으로 소득대비 소비 비중을 더 많이 줄인다.

연구가설2.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증진된다.

- 2.1. 승진이나 신규취업의 고용상태 개선을 더 많이 경험한다.
- 2.2.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 2.3. 근로의욕이 더 많이 증가한다.

연구가설3.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정서·신체 모두 더 건강해진다.

- 3.1. 우울감이 더 많이 감소한다.
- 3.2. 건강상태가 더욱 개선된다.

연구가설4.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대인관계와 가정이 더욱 안정된다.

- 3.1. 대인관계가 더 개선된다.
- 3.2. 가족관계가 더 안정된다.
- 3.3. 결혼 및 출산의지가 더 높아진다.

### 3. 분석방법 설계

####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자료를 확보한다. 엄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어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수년 간 광범위한 표본의 다양한 실측 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를 활용한다면 제도 이용

자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 미이용자를 대조군으로 매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설문조사가 현재 가용한 최선의 방법인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표본을 확보하고, 이들과 최대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미이용자 표본을 대조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 기준

### 1) 실험군

본 장의 분석 대상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이다. 이를 위해서 1년 반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이용 중이거나 완료한 19~34세 청년으로 실험군을 구성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이용 전·후를 비교해야 하는데 1년 반 이전보다 더 오래전에 제도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과거의 부채, 소득 정보를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1년 전 정보와 현재 정보를 비교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는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이후 개시 및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점을 반영하여 1년이 아닌 1년 반의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인 경우는 신청자도 적고, 채무조정의 감면 정도가 약하여 성과 차이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대조군

대조군이 되는 제도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을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만

족하는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①소득이 낮아 세후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② 2건 이상의 여러 대출을 보유하며 ③ 30일 이상의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청년(19~34세)이다. 이러한 기준은 2장 2절에서 제시한 금융취약성의 정의에 따라, 다수 선행연구에서 금융취약성을 소득수준, 연체일수,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등으로 정의하는 것과 일관된다.

〈표 4-1〉 본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 구분   | 조작적 정의  | 활용지표  |
|------|---|---|
| 본 연구 | 1) 소득 (4인가족 중위 50%) 으로 월평균 기준 300만원 이하<br>2)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연체일수 30일 이상 <sup>※</sup> ②<br>3)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차주 <sup>※</sup> ③ | 소득수준 하위 30% and 연체일수 <sup>②</sup> and 다중채무 보유 여부 <sup>③</sup> |

출처: 연구진 작성

저소득의 기준을 세후 월소득 30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인 304.8만원, 즉 4인가족 월소득 중위값(6,097,773원)의 하위 50%와 유사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4). 한편, 본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21)이 다중채무자를 3건 이상 보유자라고 정의한 것과 달리 2건 이상 보유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아직 신용도, 자산, 소득수준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장기 연체의 기준으로 30일을 설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의 지원자격이 30일 이상 연체이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체일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 다. 성과지표의 선정과 설정 방법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친 지표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나,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과 비교하여 대출, 소득, 소비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우울감 관련 지표는 응답자가 보고한 지난 1년 중 연체가 가장 심각했던 시점과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며, 고용상태, 노동시간, 대인관계 등 사회·경제적 성과지표는 지난 1년간의 변화 또는 만족도 개선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채무조정제도의 다양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는 크게 가계 재무건전성과 관련되는 경제적 지표, 고용지표, 심리·건강지표, 가족·사회 지표의 5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총 14가지의 세부 지표가 있으며 <표 4-2>는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소개한다.

본연구에서 경제적 성과는 ①총대출감소, ②신용대출감소 ③ 소득 증가, ④소득대비 소비 비율 감소를 선정하였다. 총대출, 신용대출, 소득처럼 값이 큰 변수의 증가율이나 감소율은 로그화된 값의 차이를 통해 구성하였다. 증가율은  $\ln(\text{현재값}) - \ln(\text{과거값})$ , 감소율은  $\ln(\text{과거값}) - \ln(\text{현재값})$ 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0의 값을 로그화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쌍곡사인(inverse hyperbolic sine, asinh) 함수,  $\text{asinh}(y) = \ln(y + \sqrt{y^2 + 1})$ 의 로그근사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소득, 부채 관련 변수들이 연속변수로 조사되었으나, 설문 응답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보고한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감안하

여, 부채 감소 여부와 소득 증가 여부와 같은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보완적 성과지표로 활용하였다.

고용지표에서는 5가지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지난 1년 간 승진이나 신규취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승진여부, 신규취업 여부, 그리고 이 두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고용개선 여부'로 정의하여 3개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1년간 노동시간 증가나 고용의지 증가의 만족도에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2가지 변수를 추가 구성하였다. 노동시간 증가와 고용의지 증가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은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게는 제도 이용 전과 현재를, 미이용자에게는 1년 전과 현재의 변화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항목은 '매우 악화'부터 '매우 개선'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약간 개선' 또는 '매우 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개선), 그 외(변화 없음, 악화)는 0(개선되지 않음)으로 설정하였다.

〈표 4-2〉 성과지표의 종류와 설정 방법

| 분류       | 지표  | 설정 방법   |
|----------|---|---|
| 경제적 지표   | ① 총대출<br>② 신용대출<br>감소율·여부                             | 현재(2025년 8월)과 1년 전(2024년 8월)의 신용·담보 대출 모두를 포함한 총대출의 로그 근사소득의 차이값을 음수화하여 대출 감소율을 구성함. 대출이 감소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성함.                                   |
|          | ③ 월평균 소득<br>증가율·여부                                    | 최근과 1년 전(2024년 6월~8월)의 3개월간 월급,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월평균 세후 소득액의 로그 근사 소득의 차이값으로 소득증가율을 구성함. 소득이 증가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성함.                                    |
|          | ④ 소득대비<br>소비비율<br>감소분·여부                              | 최근 3개월과 1년전 3개월(2024년 6월~8월)의 월평균 소비와 소득 정보로 $100 \times (\text{소득}/\text{소비})$ 비중을 비교하여, (전년 비중 - 현재 비중)으로 감소분을 산출하고, 이 비중이 감소한 경우 1을 갖는 더미 변수를 생성함. |
| 고용 지표    | 1년 간<br>⑤ 고용개선<br>(승진/신규취업)<br>여부                     | 1년 전과 고용상태 변화를 조사하여 ① 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 또는 신규취업 혹은 ② 현 직장에서 승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구성   |
|          | ⑥ 노동시간<br>⑦ 노동의지<br>증가 여부                             | 1년 간 노동의지 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약간 개선' 또는 '매우 개선'의 응답을 1로, 그 외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성함.   |
| 심리·건강 지표 | ⑧ PHQ9<br>우울척도<br>⑨ 극단충동<br>감소량·여부<br>⑩ 건강상태<br>개선 여부 | 최근 2주간과 지난 1년 중 연체가 가장 길게 지속된 2주간 두 시점의 PHQ9 우울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감소량과 감소여부를 구성함.<br>우울척도는 0~27의 구간 (① 전혀없음:0점 ② 1~6일: 1점 ③ 일주일 이상:2점 ④ 거의 매일:3점)             |
| 사회·가족 지표 | ⑪ 대인관계<br>⑫ 가족관계<br>⑬ 결혼의지<br>⑭ 출산의향<br>증가 여부         | 전년 대비 올해 사회적 관계나 결혼 및 출산의지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약간 개선' 또는 '매우 개선'의 응답을 1로, 그 외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성함.  |

주1: 만족도 변화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제도 이용 전을, 미이용자는 1년 전을 기준으로 현재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5개의 응답 중 '약간 개선' 또는 '매우 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개선)로, 그 외(변화 없음, 악화)는 0의 값을 설정하였다.

2: PHQ9는 흥미 상실/우울감/수면 및 식욕 변화/피로감/ 집중력 저하/부정적인 자기 인식(죄책감, 실패감)/심하게는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의 9개 문항의 빈도를 조사하고 총합으로 0~27점의 우울점수를 구성하며, 점수가 클수록 우울정도가 심함.

출처: 연구진 작성

심리·건강 지표는 정신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3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표준화된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요 우울장애를 선별하고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설문 문항이다.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의 빈도를 물으며, 흥미 상실/우울감/수면 및 식욕 변화/피로감/ 집중력 저하/부정적인 자기 인식(죄책감, 실패감)/심하게는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을 포함한다. 9개 문항의 응답을 기반으로 0-27점의 규모의 총점을 구성하며, 해당 점수가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PHQ-9 중에서 자해나 자살 충동과 같은 극단적 충동에 대한 문항이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채무조정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의 종속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1년 간 건강상태의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여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였다.

사회·가족 지표로는 대인관계, 가족관계의 개선 여부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혼의지나 출산의향의 개선여부 총 4가지 정보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제도 미이용자는 1년 전, 이용자는 제도 이용 전과 비교하여 해당 사항의 만족도가 '매우 개선'이나 '약간 개선'이면 1의 값을, 그 외의 응답을 0의 값을 갖는다.

#### 4.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소개

#####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사설계 방식을 적용한 연구표본을 선별하고,

이들에게서 성과지표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자 “Research & Research” 조사업체를 통해 2025년 9월 15일 ~ 10월 10일까지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조사는 본 분석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취약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제도이용 경험이나 심리, 가구의 재무특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이 증장년층에 비해 보이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증장년층도 표본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나. 표본의 구성

연구 표본은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의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여 채무자가 조사에 응할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 청년과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청년동행센터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에 배너를 추가하거나 이용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8명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최근 1년 반(2024-03-01~2025-08-31)의 기간에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완료된 제도 이용자 765명과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 400명(39.7%)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자를 구분하면 19~34세 청년 400명(39.7%), 35~49세의 중년 이용자 200명(19.8%), 50~59세의 장년 이용자 165명(16.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한 채무조정제도별로 구분하면 표본은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306명(30.4%), 사

전채무조정 이용자 202명(20%), 법원 개인회생 이용자 216명(21.4%)과 법원 개인파산 이용자 41명(4.1%)으로 구성된다.

〈표 4-3〉 표본의 구성

| 연령별 구분 | 인원  | 비중    | 제도별 구분  | 인원  | 비중    |
|--------|-----|-------|---------|-----|-------|
| 청년 이용자 | 400 | 39.7% | 개인워크아웃  | 306 | 30.4% |
| 중년 이용자 | 200 | 19.8% | 사전채무조정  | 202 | 20.0% |
| 장년 이용자 | 165 | 16.4% | 법원 개인회생 | 216 | 21.4% |
| 미이용 청년 | 243 | 24.1% | 법원 개인파산 | 41  | 4.1%  |
|        |     |       | 미이용 청년  | 243 | 24.1% |

출처: 연구진 작성

#### 다.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의 내용은 표본 선정을 위한 스크린 문항을(SQ) 비롯하여, 부채구조와 원인(A), 채무조정제도 종류별 이용자의 경험과 평가(B), 제도 미이용자의 특성과 상황(C), 재무 정보와 개인과 가구의 특성(D), 심리·행동경제학적 특성(E), 정부정책·건강·삶에 대한 태도(F)를 포함한다. 영역별 설문 문항의 수와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은 〈표 4-4〉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112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표 4-4〉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내용 요약

| 구분 | 문항 수 |    | 조사목적                | 대상 /인원              | 조사 내용  |   |
|----|------|----|---------------------|---------------------|--|---|
|    | 대    | 소  |                     |                     |  |   |
| SQ | 13   | 1  | 표본 선정               | 전체/<br>1,008        | 연령·이용집단 구분, 스크리닝(대출 보유수, 최근 1년 최장 연체기간, 현재 부채 원리금)   |   |
| A  | 16   | 7  | 대출량·종류 연체상황·이유 부채구조 | 전체/<br>1,008        | 대출 종류(A1), 잔액(신용·정책보증·담보, A2 일련), 금리(A2-d), 학자금·정책서민금융 원금·잔액(A2-e/f), 1년 전 잔액(A3), 마지막 대출 용도·대출투자 동기·대상·규모(A4), 상환부담으로 포기한 항목(A5), 최초 연체 시점·사유(A6~A7), 연체 해결 방법·이후 상태(A8), 채무불이행 경험·가족 경험·(A9~A11) |   |
| B  | BA   | 11 | 1                   | 신복위 이용자의 특성과 경험     | 신복위 이용자 /508   | 이용 제도 종류(워크아웃/사전조정), 신청 시기(BA2), 지원 확정까지 기간(BA3), 조정 전 원리금·감면액(BA4-1/2), 변제기간·월 변제금(BA4-3/4), 이행상태(BA5), 선택 이유(BA6), 적절성 종합평가(BA7-S), 이용상 어려움(BA8), 타 제도 선이용 경험·미이용 이유(BA9/BA9-1), 보완점(BA10~BA11) |
|    | BB   | 11 | 1                   | 법원 개인회생 이용자의 특성과 경험 | 개인회생 이용자 /216  | 개시·인가까지 기간(BB2~BB3), 신청 당시 총채무·감면액(BB4-1/2), 변제기간·월 변제금(BB4-3/4), 이행상태(BB5), 선택 이유(BB6), 조정안 적절성 종합평가(BB7-S), 타 제도 경험·미이용 이유(BB8/BB8-1), 이용상 어려움·운영 개선·보완점(BB9~BB11)                              |
|    | BC   | 10 | 1                   | 법원 개인파산 이용자의 특성과 경험 | 개인파산 이용자 /41   | 신청 시기(BC1), 개시·면책까지 기간(BC2~BC3), 신청 당시 총채무·면책액·잔존채무(BC4-1~3), 현재 절차 상태(BC5), 선택 이유(BC6), 제도·결과 적절성 종합평가(BC7-S), 이용상 어려움(BC8), 타 제도 경험·미이용 이유(BC9/BC9-1), 보완사항                                     |
|    | B    | 3  | 0                   | 이용자 공통 특성           | 이용자 /765   | 상환 가능성 변화(B1), 사후 지원 필요(B2), 향후 3년 경제목표(B3)   |
| C  | 7    | 2  | 비이용자 특성과 상황         | 비이용자 /243           | 미신청 이유(C1-b), 연체 해결 방식(1·2순위 및 통합, C2_1~3), 해결 여부별 현재 상태(C2-a/b), 자각 인식(C3), 향후 신청 의향(C4), 제도 개선 필요(C5)  |   |
| D  | 18   | 4  | 자산·소득 가구·개인특성       | 전체/<br>1,008        | 혼인상태(D1), 학력(D2), 부모동거(D3), 자녀 수(미취학/학령기, D3-1-1/2), 거주 주택 유형(D4), 직업·근속(D5·D5-a) 등  |   |
| E  | 9    | 11 | 심리·행동경제             | 전체/<br>1,008        | 위험·시간선호, 낙인감·심리부담, 신용행태 인식, 소비·저축 규범 등(요인 항목)  |   |
| F  | 23   | 2  | 정부정책·건강·미래설계        | 전체/<br>1,008        | 정부지원 체감·개선 요구,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제약, 재무·진로·가구 계획 등   |   |

출처: 연구진 작성

## 라.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과 기초통계는 〈부록〉에 소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효과평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과 비이용 청년 특성

### 1. 연구표본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응답 중 '작년 대출총액'을 0으로 보고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 386명을 실험집단으로 미이용 금융취약청년 231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금융취약청년과 대비하여,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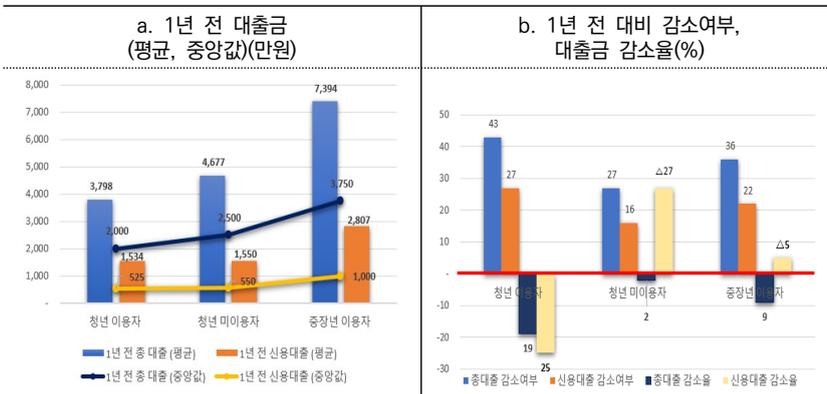
추가 분석으로 채무조정제도 이용 중장년 350명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통제변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의 분석결과는 청년과 중장년 제도이용자 간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제도이용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성과지표 비교 및 기초통계

### 가. 경제적 지표: 대출, 소득, 소비비율

〈표 4-5〉에서 대출, 소득, 소비, 우울점수 등의 1년 전 평균값과 1년간 감소율( $\ln(\text{과거값}) - \ln(\text{현재값})$ ) 및 증가율( $\ln(\text{현재값}) - \ln(\text{과거값})$ )의 평균을 각 집단별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이용자, 미이용 청년, 중장년 이용자의 1년 전의 총대출량의 평균은 각각 3797.7만원, 4677.1만원, 7393.6만원이며, 신용대출의 평균은 각각 1534.3만원, 1549.5만원, 2807만원이다. 신용 거래 기간이 길고 축적된 자산이 많은 중장년 제도 이용자가 청년 제도 이용자에게 비해 신용대출과 총대출금이 모두 월등히 많다. 또한, 제도 미이용 청년은 이용 청년과 평균 신용대출량은 비슷한 반면, 총대출금은 1000만원 가량 더 많다.

[그림 4-1]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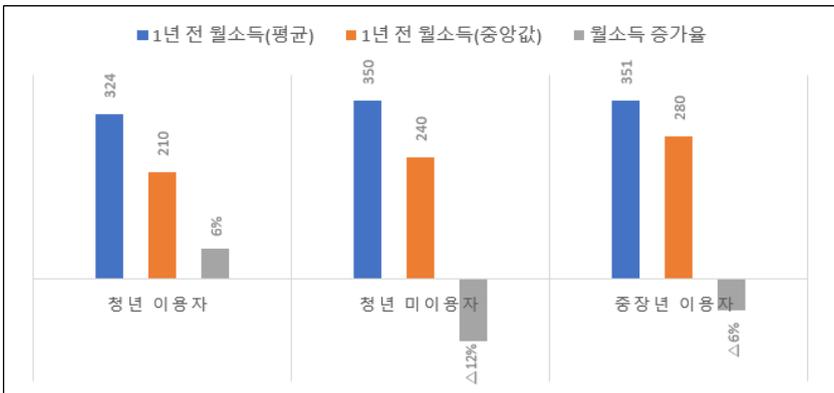
주: [그림 4-1b]의 “1년 전 대비 대출금 감소율”은  $\ln(\text{과거값}) - \ln(\text{현재값})$ 으로 산출하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부호를 반전하여 제시함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평균적인 총대출 감소율은 청년 제도 이용자에서 19%, 미이용 청년에서는 2% 정도로 나타나, 제도 이용청년에서 대출량이 더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신용대출 감소율은 제도이용 청년에서는 25.1%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규모를 줄이는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제도 미이용자에서는  $\Delta 26.7\%$ 로 나타나 신용대출을 오히려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에서 총대출과 신용대출이 감소한 채무자의 비중도 제도 이용 청년 집단에서 각각 43%,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에서 총대출과 신용대출이 감소한 채무자의 비중은 각각 27%, 16%로 제도 이용 중장년층의 36%, 2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4-2]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월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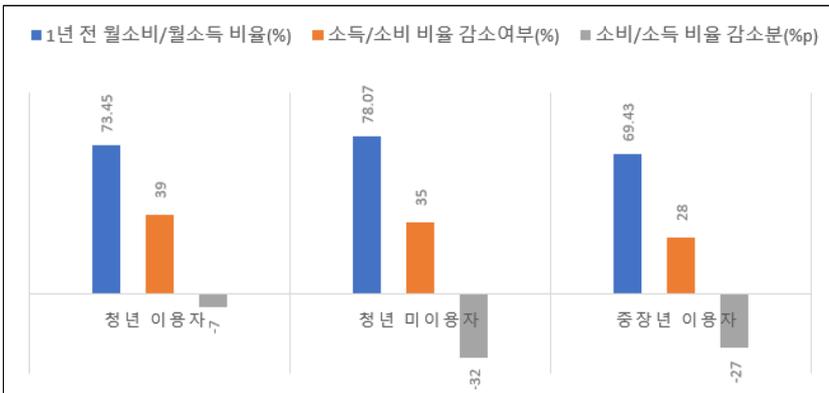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전년도 평균 월소득은 제도 이용 청년의 324만원과 미이용 청년의 350만원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월소득 증가율의 평균은 제도 이용 청년과 미이용자 청년 집단에서 각각 5.7%와  $\Delta 11.5\%$ 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안정적으로 노동

을 공급하며 소득을 늘리는 반면, 연체 상황에 있으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청년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전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월소득 대비 월소비 비중의 평균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은 73.4%, 제도 미이용 청년은 78.1%로, 제도 미이용 청년의 1년 전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 이용 중장년층의 소비비중은 69.4%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의 소비성향이 청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소비감소율의 평균은 제도 이용 청년과 미이용 청년에서 각각  $\Delta 7\text{p}$ ,  $\Delta 32\text{p}$  감소하였고, 제도 이용 중장년층에서는  $\Delta 27\text{p}$  감소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전년에 비해 소비 비중이 줄었으나, 제도 이용 청년의 소비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필수적인 생계비 지출 등 소비를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3]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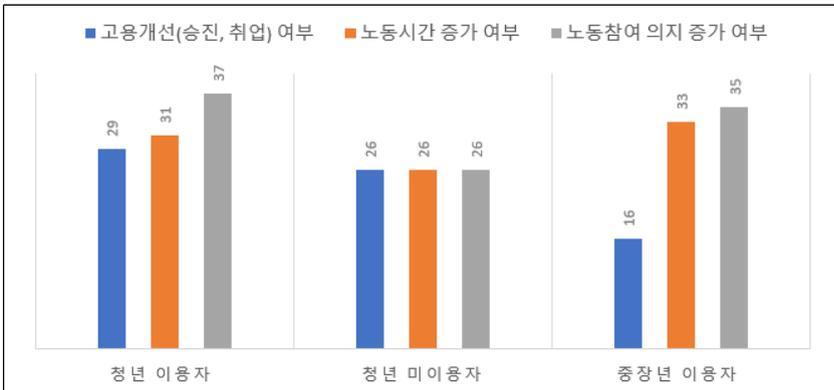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6〉에서 소득 대비 소비비율이 감소한 채무자의 비중을 확인하면 채무조정제도 이용청년에서 39%로 제도 미이용 청년의 35%와 제도 이용 중장년층의 28%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나. 고용지표: 신규취업·승진, 노동 시간·참여 의지

〈표 4-6〉에 제시된 1년간의 고용성과를 살펴보면, 신규취업과 승진을 경험한 채무자의 비중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경우 각각 16%와 13%로, 제도 미이용 금융취약청년의 15%와 11%에 비해 다소 높으나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중장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경우 두 비중이 모두 8%로, 청년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노동시간이 증가하거나 노동참여 의지가 높아진 채무자의 비중은 청년 제도 이용자에서 각각 31%와 37%, 중장년 제도 이용자(각 33%, 3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중 제도 미이용자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각 26%, 26%)을 보였다.

[그림 4-4]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고용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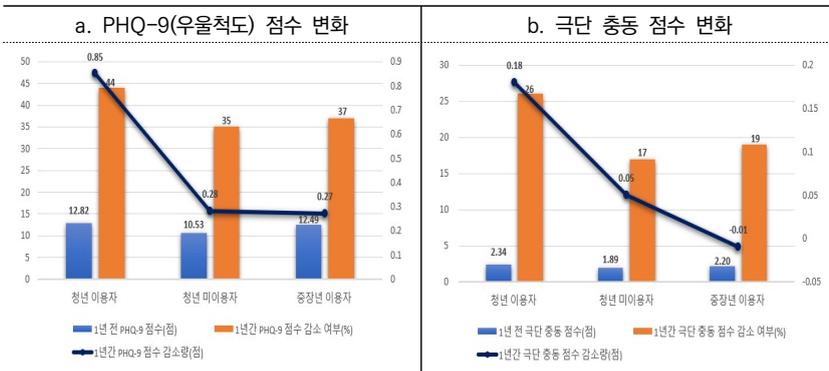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다. 심리·건강지표: PHQ-9 우울점수, 건강상태 개선

〈표 4-5〉에 제시된 1년 전 PHQ-9 우울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 제도 미이용 청년, 제도 이용 중장년층의 점수는 각각 12.8점, 10.5점, 1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청년, 중장년 모두)들이 제도 미이용 청년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참고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15,000여 명 청년의 평균 PHQ-9 점수는 3.2점(‘우울 아님’ 수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제도 이용자 및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심리·건강지표 변화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1년간 우울점수의 평균 감소폭은 세 집단에서 각각 0.8점, 0.3점, 0.3점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우울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도(PHQ-9)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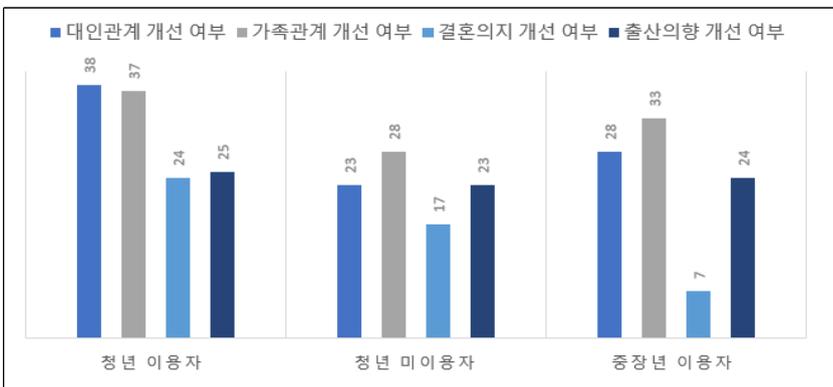
자의 비중은 각각 44%, 35%, 37%로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 중 1년 후 우울도가 감소했다고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자해 등 극단적 충동 점수의 평균은 세 집단에서 각각 2.3점, 1.9점, 2.2점으로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점수 감소폭은 각각 0.18점, 0.05점, -0.01점으로 나타나 제도 이용 청년에서 가장 큰 개선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채무자의 비중(〈표 4-6〉 참조)은 각각 33%, 22%, 30%로, 연령에 관계없이 제도 이용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라. 사회·가족지표: 대인·가족 관계, 결혼·출산 의지 개선

〈표 4-6〉에 따르면, 1년간 대인관계나 가족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채무자의 비중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에서 각각 38%와 37%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4-6]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사회·가족지표 변화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반면, 제도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 집단에서는 각각 23%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지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문항 특성상 제도 이용 증장년층에서 7%로 낮게 나타난 반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은 24%로, 미이용 청년(1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출산의지가 증가한 비중은 세 집단 모두에서 25%, 23%, 24%로 유사하게 나타나, 제도 이용 여부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4-5〉 1년 전 채무자의 재무·심리 상태와 연속형 성과지표의 집단별 기초통계

| 1년 전 상태 | 구분                 |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 (386명) |        | 제도 비이용 금융취약 청년 (231명) |        | 채무조정제도 중장년 이용자 (350명)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                    | 중양값                  |        | 중양값                   |        | 중양값                   |         |
| 재무      | 1년 전 총 대출 (만원)     | 3797.7               | 2000.0 | 4677.1                | 2500.0 | 7393.6                | 11576.3 |
|         | 1년 전 신용대출 (만원)     | 1534.3               | 525.0  | 1549.5                | 550.0  | 2807.0                | 4410.7  |
| 심리      | 1년 전 월소득 (만원)      | 324.0                | 210.0  | 350.2                 | 240.0  | 351.2                 | 538.3   |
|         | 1년 전 월소비/소득 (%)    | 73.45                | 66.67  | 78.07                 | 66.7   | 69.43                 | 36.37   |
| 성과 지표   | 1년 전 PHQ-9 점수      | 12.82                | 13.00  | 10.53                 | 10.00  | 12.49                 | 7.00    |
|         | 1년 전 극단 총동 점수      | 2.34                 | 2.00   | 1.89                  | 2.00   | 2.20                  | 1.01    |
| 성과 지표   | 총 대출 감소율 (0~1)     | 0.19                 | 0.00   | 0.02                  | 0.00   | 0.09                  | 0.82    |
|         | 신용대출 감소율 (0~1)     | 0.25                 | 0.00   | -0.27                 | 0.00   | -0.05                 | 2.75    |
|         | 월소득 증가율 (0~1)      | 0.06                 | 0.00   | -0.12                 | 0.00   | -0.06                 | 1.15    |
|         | 소비/소득 비율 감소분 (0~1) | -0.07                | 0.00   | -0.32                 | 0.00   | -0.27                 | 0.95    |
| 심리      | PHQ-9 점수 감소량       | 0.85                 | 0.00   | 0.28                  | 0.00   | 0.27                  | 4.14    |
|         | 극단 총동 점수 감소량       | 0.18                 | 0.00   | 0.05                  | 0.00   | -0.01                 | 0.81    |

주1: 소득이 0인 관측치가 39, 18, 9명임에 따라 소비/소득 지표의 관측치는 각각 명, 명, 명임.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전년도 총대출이 0이라고 응답한 관측치를 배고 기초통계량을 계산함.

주2: PHQ-9 우울척도 점수는 9가지 증상의 빈도를 질문하여 우울의 강도를 0~3점수화 한 후 9개 응답의 합으로 구성함. 각 증상의 경험 빈도를 각각 0점 (전혀 없음)에서 3점(거의 매일)으로 점수화하여, 그 총합으로 우울 심각도를 평가함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6〉 이항변수 형태 성과지표의 기초통계

| 구분          | 세부 지표           |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 (386명) |      | 제도 비이용 금융취약 청년 (231명) |      | 채무조정제도 중장년 이용자 (350명)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경제 지표<br>재무 | 총 대출 감소 여부      | 0.43                 | 0.50 | 0.27                  | 0.45 | 0.36                  | 0.48 |
|             | 신용대출 감소 여부      | 0.27                 | 0.45 | 0.16                  | 0.36 | 0.22                  | 0.41 |
|             | 월소득 증가 여부       | 0.41                 | 0.49 | 0.43                  | 0.5  | 0.36                  | 0.48 |
|             | 소비/소득 비율 감소 여부  | 0.39                 | 0.49 | 0.35                  | 0.48 | 0.28                  | 0.45 |
| 고용 지표       | 신규 취업 여부        | 0.16                 | 0.37 | 0.15                  | 0.36 | 0.08                  | 0.27 |
|             | 승진 여부           | 0.13                 | 0.34 | 0.11                  | 0.31 | 0.08                  | 0.27 |
|             | 고용개선(승진, 취업) 여부 | 0.29                 | 0.45 | 0.26                  | 0.44 | 0.16                  | 0.37 |
|             | 노동시간 증가 여부      | 0.31                 | 0.46 | 0.26                  | 0.44 | 0.33                  | 0.47 |
| 심리 건강       | 노동참여 의지 증가 여부   | 0.37                 | 0.48 | 0.26                  | 0.44 | 0.35                  | 0.48 |
|             | PHQ-9 점수 감소 여부  | 0.44                 | 0.50 | 0.35                  | 0.48 | 0.37                  | 0.48 |
|             | 극단 충동 점수 감소 여부  | 0.26                 | 0.44 | 0.17                  | 0.38 | 0.19                  | 0.40 |
|             | 건강상태 개선 여부      | 0.33                 | 0.47 | 0.22                  | 0.41 | 0.3                   | 0.46 |
| 사회 가족       | 대인관계 개선 여부      | 0.38                 | 0.49 | 0.23                  | 0.42 | 0.28                  | 0.45 |
|             | 가족관계 개선 여부      | 0.37                 | 0.48 | 0.28                  | 0.45 | 0.33                  | 0.47 |
|             | 결혼의지 개선 여부      | 0.24                 | 0.43 | 0.17                  | 0.38 | 0.07                  | 0.25 |
|             | 출산의향 개선 여부      | 0.25                 | 0.43 | 0.23                  | 0.42 | 0.24                  | 0.43 |

주1: 고용변화 항목은 1년 전과 비교한 고용상태의 변화를 조사한 문항에서 승진 혹은 신규취업이 되었다고 한 경우를 활용하였음.

2: 만족도 변화 항목은 '약간 개선' 또는 '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의 값으로 변환하였음.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3. 통제변수 비교

〈표 4-7〉은 효과분석을 위한 실증계량 모형에 활용된 통제변수의 기초 통계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대출구조와 수도권 거주여부, 고용형태의 변수가 강건성 확인 모형에서 추가되었으나, 기본 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1년 전 총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담보대출의 비중, 주식 등 금융투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비중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부채의 구

조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이다. 신용대출의 비중은 세집단에서 48.4%, 46.6%, 47.1%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담보대출의 비중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중장년 이용자에서 26.7%로 제도 이용 청년의 18.7%나 제도 미이용 청년의 17.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담보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중장년층에서 청년보다 더욱 많이 축적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금융투자에 차입금을 이용한 비중은 제도 미이용 청년과 중장년 제도 이용자가 각각 18.1%, 19.5%로 유사한 수준이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집단에서는 27.4%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4-7〉 통제변수의 기초통계

| 구분                     |                  | 채무조정제도<br>청년 이용자<br>(386명) |       | 제도 미이용<br>금융취약 청년<br>(231명) |       | 채무조정제도<br>중장년 이용자<br>(350명)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1년 전 신용대출 비중 (%)       |                  | 48.37                      | 36.34 | 46.62                       | 41.56 | 47.09                       | 35.71 |
| 1년 전 담보대출 비중 (%)       |                  | 18.71                      | 29.81 | 17.90                       | 32.92 | 26.73                       | 33.28 |
| 1년 전 차입금 금융투자 비중(%)    |                  | 27.40                      | 77.65 | 18.10                       | 75.60 | 19.49                       | 46.53 |
| 배우자 유무 (유 1, 무 0)      |                  | 0.24                       | 0.43  | 0.27                        | 0.44  | 0.71                        | 0.46  |
|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1, 무 0)  |                  | 0.44                       | 0.50  | 0.37                        | 0.48  | 0.17                        | 0.37  |
| 고졸이하 여부                |                  | 0.39                       | 0.49  | 0.19                        | 0.40  | 0.15                        | 0.36  |
| 성별 (남성 1, 여성 0)        |                  | 0.52                       | 0.50  | 0.45                        | 0.50  | 0.66                        | 0.47  |
| 주택 보유 여부 (자가 주택 1)     |                  | 0.29                       | 0.46  | 0.34                        | 0.47  | 0.39                        | 0.49  |
| 과거 90일 이상 연체 경험 여부     |                  | 0.50                       | 0.50  | 0.32                        | 0.47  | 0.45                        | 0.50  |
| 채무불이행 가족원 여부 (유 1 무 0) |                  | 0.43                       | 0.50  | 0.20                        | 0.40  | 0.35                        | 0.48  |
| 대출<br>구조               | 대부업 대출 보유 여부     | 0.13                       | 0.34  | 0.04                        | 0.19  | 0.10                        | 0.30  |
|                        | 신용카드 단기대출 보유 여부  | 0.30                       | 0.46  | 0.16                        | 0.37  | 0.32                        | 0.47  |
|                        | 장학재단 대출 보유 여부    | 0.21                       | 0.41  | 0.30                        | 0.46  | 0.04                        | 0.20  |
|                        | 햇살론 대출 보유 여부     | 0.34                       | 0.47  | 0.19                        | 0.40  | 0.30                        | 0.46  |
|                        | 2023년 이전 연체시작 여부 | 0.20                       | 0.40  | 0.19                        | 0.40  | 0.22                        | 0.41  |
| 수도권 거주 여부              |                  | 0.63                       | 0.48  | 0.64                        | 0.48  | 0.67                        | 0.47  |
| 고용<br>형태               | 정규직 여부           | 0.46                       | 0.50  | 0.58                        | 0.50  | 0.48                        | 0.50  |
|                        | 비정규직 여부          | 0.16                       | 0.37  | 0.13                        | 0.34  | 0.25                        | 0.43  |
|                        | 임시일용직 여부         | 0.11                       | 0.32  | 0.07                        | 0.26  | 0.08                        | 0.27  |
|                        | 자영업 여부           | 0.03                       | 0.17  | 0.05                        | 0.22  | 0.10                        | 0.30  |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이(44%) 제도 미이용 청년에(37%) 비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이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에서 39%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29%, 제도 미이용 청년의 34%, 제도 이용 중장년 표본의 39%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성의 비중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중장년 표본에서 6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오래된 과거에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채무자의 비중은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에서 50%로 매우 높았고 제도 미이용 청년에서는 32%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자들이 오랜기간 연체 상황을 견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청년표본의 43%, 미이용 청년표본의 20%, 제도 이용 중장년 표본의 35%가 본인 말고도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가족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하여, 채무불이행의 고통을 가족이 함께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통제변수 정보에서 대부업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나이와 관계없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집단에서 매우 13%와 10%, 32%와 30%로 매우 높아 채무자들이 부채구조가 악화된 후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1. 분석결과

본 연구는 효과분석을 위해 총 22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본 장 제1절에서 제시한 5개 분류의 성과지표와 극단적 충동 점수 감소 관련 변수 2개를 포함한 것이다. <표 4-8>과 <표 4-9>는 22개 회귀식의 추정 결과를 공통의 통제변수를 적용하여 각각 11개씩 제시한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첫째,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OLS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계수를 보고하였다. 둘째,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인 경우 Logit 모형을 적용하였다. Logit 모형의 결과는 추정계수의 함수인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델타방법론(Delta method)으로 근사 추정된 값을 보고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표로 McFadden의 pseudo  $R^2$  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의 첫 행에 제시된 '채무조정제도 이용'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각 성과지표에서 '미이용 청년'(준거집단) 대비 '이용 청년'이 갖는 평균적인 차이, 즉 제도의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경우, 이는 채무조정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추정계수의 크기(magnitude)가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 4-10>에서는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나 표본을 달리하는 다른 모형에서도 추정계수를 산출하여 기본모형의 추정계수와 비교하였다. 모형 (1)은 <표 4-8>, <표 4-9>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모형 (2)는 대부업신용대출 보유 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유 여부, 학자금 대출 보유 여부, 햇살론 보유 여부,

수도권 더미,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자영업 여부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로 포함한 모형의 추정계수이다. 모형(3)은 2023년에 제도를 신청한 이용자를 제외한 표본에서의 추정 결과이다. 모형(2), 모형(3)에서도 모형(1)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기본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4)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계수를 나타낸다. 모형(1)-(3)의 계수는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제도 이용의 효과를 의미하는 반면, 모형(4)의 추정계수는 제도 이용자들 중에서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해당 결과에서 청년 이용자가 중장년 이용자에 비해 신용대출, 소비비중이 더 많이 감소할 확률이 높고, 승진이나 신규 취업의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제도 이용효과의 방향성과 해석

각 지표별 채무조정제도 성과의 크기는 3항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본 항에서는 전반적인 효과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배경과 주요 요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채무조정제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이자가 가산되거나, 더 고금리 부채로 빚을 상환하는 부채 증가의 악순환을 끊고,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증가율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러한 변화는 소득의 증가보다는 소비의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상환계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역시 일정 횟수 이상 상환을 누락하면 제도 이용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과다채무자가 제도에 진입하여 상환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관리 의지가 강화되어 소비 비중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신용상담이나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조절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청년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노동시간이나 증가하거나 승진·신규취업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만, “노동의지 개선”이라는 주관적인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고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업 완료나 취업훈련 등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고용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 현재 설문조사와 같이 장기간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는 연구설계에서는 해당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청년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우울감 감소, 건강상태 개선, 가족·사회 생활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이는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상환 압박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채무조정제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3. 중장년 이용자 대비 청년 이용자의 효과 차이

〈표 4-10〉의 모형 (4)는 비교집단을 제도 미이용 청년으로 설정한 모형 (1)-(3)과 달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과 청년 이용자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중장년층 이용자에 비해 재무구조, 고용, 심리, 대인관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청년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자는 신용대출의 감소율, 소득대비 소비비중 감소율도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청년 이용자가 중장년 이용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감소할 확률이 9.8%p, 소비비중이 감소할 확률이 12.2%p, 소득이 증가할 확률은 8%p 더 높았다.

또한 청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고용개선의 효과가 유의하게 더 높아, 중장년 이용자에 비해 신규취업할 확률이 5.1%p, 승진할 확률이 4.8%p 더 높았다.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등에서도 청년층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효과가 높아, 청년층이 중장년층 이용자에 비해 우울도가 감소할 확률이 10%p, 대인관계가 개선될 확률이 9.4%p, 결혼의지가 증가할 확률이 10.1%p 더 높았다.

〈표 4-8〉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 종속변수                        | 총대출<br>감소율          | 신용대출<br>감소율        | 총대출<br>감소 여부        | 신용대출<br>감소 여부      | 월소득<br>증가율          | 소비비중<br>감소량         | 소득 증가<br>여부        | 소비비중<br>감소 여부     | 신규취업<br>여부         | 승진<br>여부         | 고용개신<br>여부       |
|-----------------------------|---------------------|--------------------|---------------------|--------------------|---------------------|---------------------|--------------------|-------------------|--------------------|------------------|------------------|
| 제도 이용 청년<br>(이용=1, 미이용=0)   | 0.154**<br>(0.07)   | 0.388*<br>(0.23)   | 0.163***<br>(0.04)  | 0.109***<br>(0.04) | 0.142<br>(0.15)     | 0.266**<br>(0.11)   | -0.053<br>(0.04)   | 0.036<br>(0.05)   | -0.005<br>(0.03)   | 0.008<br>(0.03)  | -0.003<br>(0.04) |
| 전년도 총대출 대비<br>신용대출 비율(%)    | -0.004***<br>(0.00) | 0.012***<br>(0.00) | -0.003***<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 전년도 총대출 대비<br>담보대출 비율(%)    | 0.004***<br>(0.00)  | -0.004<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0<br>(0.00)  |
| 전년 총대출 대비<br>차입금투자 비율(%)    | -0.001***<br>(0.00) | 0.006***<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2**<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 결혼 여부<br>(배우자동거=1)          | 0.115<br>(0.08)     | 0.456*<br>(0.26)   | 0.004<br>(0.04)     | 0.037<br>(0.04)    | -0.547***<br>(0.17) | -0.154<br>(0.13)    | 0.001<br>(0.05)    | -0.037<br>(0.05)  | -0.058<br>(0.04)   | 0.035<br>(0.03)  | -0.013<br>(0.04) |
| 부모님과 동거 여부<br>(이용=1, 미이용=0) | 0.068<br>(0.07)     | 0.252<br>(0.24)    | -0.022<br>(0.04)    | -0.015<br>(0.04)   | -0.238<br>(0.16)    | 0.107<br>(0.12)     | 0.062<br>(0.04)    | 0.002<br>(0.05)   | 0.023<br>(0.03)    | 0.008<br>(0.03)  | 0.036<br>(0.04)  |
| 고졸 학력 이하<br>(전문대졸이상=0)      | 0.041<br>(0.07)     | -0.137<br>(0.24)   | -0.058<br>(0.04)    | -0.079**<br>(0.04) | 0.154<br>(0.16)     | 0.028<br>(0.12)     | 0.040<br>(0.04)    | 0.030<br>(0.05)   | 0.043<br>(0.03)    | 0.002<br>(0.03)  | 0.046<br>(0.04)  |
| 남성 여부<br>(남성=1, 그외=0)       | 0.021<br>(0.06)     | -0.247<br>(0.21)   | 0.031<br>(0.04)     | 0.030<br>(0.03)    | -0.126<br>(0.14)    | -0.033<br>(0.11)    | 0.040<br>(0.04)    | -0.001<br>(0.04)  | -0.068**<br>(0.03) | 0.029<br>(0.03)  | -0.037<br>(0.04) |
| 자기주택 보유 여부<br>(보유=1, 그외=0)  | -0.074<br>(0.07)    | 0.206<br>(0.25)    | -0.011<br>(0.04)    | 0.053<br>(0.04)    | -0.052<br>(0.16)    | -0.105<br>(0.12)    | -0.113**<br>(0.05) | 0.014<br>(0.05)   | 0.024<br>(0.03)    | -0.047<br>(0.03) | -0.021<br>(0.04) |
| 과거 채무불이행<br>경험 (있음=1)       | 0.014<br>(0.07)     | 0.175<br>(0.23)    | -0.062<br>(0.04)    | 0.055<br>(0.04)    | -0.057<br>(0.15)    | -0.264***<br>(0.11) | -0.071*<br>(0.04)  | -0.086*<br>(0.05) | 0.005<br>(0.03)    | 0.029<br>(0.03)  | 0.035<br>(0.04)  |
| 가족원 채무불이행<br>여부 (있음=1)      | 0.065<br>(0.07)     | 0.310<br>(0.25)    | 0.109***<br>(0.04)  | 0.054<br>(0.04)    | -0.006<br>(0.16)    | 0.027<br>(0.12)     | 0.095**<br>(0.05)  | 0.097**<br>(0.05) | 0.043<br>(0.03)    | 0.017<br>(0.03)  | 0.061<br>(0.04)  |
| 관측치                         | 617                 | 617                | 617                 | 617                | 617                 | 551                 | 617                | 546               | 617                | 617              | 617              |
| R-squared                   | 0.125               | 0.085              | 0.092               | 0.060              | 0.034               | 0.031               | 0.020              | 0.015             | 0.031              | 0.029            | 0.013            |
| 추정방법                        | OLS                 | OLS                | Logit               | Logit              | OLS                 | OLS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9〉 재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I

| 종속변수                     | 노동시간 증가여부        | 노동의지 증가 여부        | 우울점수 감소량            | 극단충동 감소량           | 우울 감소 여부            | 극단충동 감소 여부         | 건강상태 개선 여부         | 대인관계 개선 여부         | 가족관계 개선 여부         | 결혼의지 개선 여부        | 출산의향 개선 여부        |
|--------------------------|------------------|-------------------|---------------------|--------------------|---------------------|--------------------|--------------------|--------------------|--------------------|-------------------|-------------------|
| 제도 이용 청년 (이용=1, 미이용=0)   | 0.029<br>(0.04)  | 0.106**<br>(0.04) | 0.784**<br>(0.39)   | 0.146**<br>(0.07)  | 0.127***<br>(0.04)  | 0.109***<br>(0.04) | 0.114***<br>(0.04) | 0.151***<br>(0.04) | 0.087**<br>(0.04)  | 0.060<br>(0.05)   | 0.027<br>(0.04)   |
| 전년도 총대출 대비 신용대출 비율(%)    | -0.001<br>(0.00) | -0.001<br>(0.00)  | -0.018***<br>(0.01) | -0.001<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1<br>(0.00)  |
| 전년도 총대출 대비 담보대출 비율(%)    | -0.000<br>(0.00) | -0.001<br>(0.00)  | -0.022***<br>(0.01) | -0.002**<br>(0.00) | -0.002***<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1<br>(0.00)   | 0.002**<br>(0.00) | 0.000<br>(0.00)   |
| 전년 총대출 대비 차입금투자 비율(%)    | 0.000<br>(0.00)  | 0.000<br>(0.00)   | -0.006***<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0<br>(0.00)   | -0.001**<br>(0.00) | 0.000<br>(0.00)   | -0.000<br>(0.00)  |
| 결혼 여부 (배우자동거=1)          | 0.064<br>(0.04)  | -0.057<br>(0.05)  | -1.140**<br>(0.44)  | -0.140*<br>(0.08)  | -0.063<br>(0.05)    | -0.025<br>(0.04)   | 0.014<br>(0.04)    | 0.047<br>(0.05)    | 0.070<br>(0.04)    |                   | 0.100**<br>(0.04) |
| 부모님과 동거 여부 (이용=1, 미이용=0) | 0.025<br>(0.04)  | -0.023<br>(0.04)  | -0.967**<br>(0.41)  | -0.085<br>(0.07)   | -0.055<br>(0.04)    | -0.028<br>(0.04)   | -0.038<br>(0.04)   | 0.082**<br>(0.04)  | -0.028<br>(0.04)   | -0.042<br>(0.05)  | 0.009<br>(0.04)   |
| 고졸 학력 이하 (전문대졸이상=0)      | 0.031<br>(0.04)  | -0.032<br>(0.04)  | -0.190<br>(0.41)    | -0.015<br>(0.07)   | -0.056<br>(0.04)    | -0.039<br>(0.04)   | 0.015<br>(0.04)    | 0.020<br>(0.04)    | 0.028<br>(0.04)    | 0.001<br>(0.04)   | -0.035<br>(0.04)  |
| 남성 여부 (남성=1, 그외=0)       | 0.004<br>(0.04)  | 0.004<br>(0.04)   | -0.581<br>(0.36)    | -0.007<br>(0.06)   | -0.099**<br>(0.04)  | -0.058*<br>(0.03)  | -0.014<br>(0.04)   | 0.034<br>(0.04)    | 0.010<br>(0.04)    | 0.065<br>(0.04)   | 0.021<br>(0.03)   |
| 자가주택 보유 여부 (보유=1, 그외=0)  | 0.024<br>(0.04)  | -0.018<br>(0.04)  | 0.065<br>(0.42)     | 0.009<br>(0.07)    | 0.052<br>(0.05)     | 0.034<br>(0.04)    | 0.077*<br>(0.04)   | -0.052<br>(0.04)   | 0.028<br>(0.04)    | -0.034<br>(0.05)  | 0.023<br>(0.04)   |
|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있음=1)       | 0.048<br>(0.04)  | 0.047<br>(0.04)   | -0.272<br>(0.40)    | -0.058<br>(0.07)   | -0.012<br>(0.04)    | -0.025<br>(0.04)   | 0.040<br>(0.04)    | 0.033<br>(0.04)    | 0.042<br>(0.04)    | 0.068<br>(0.04)   | 0.069*<br>(0.04)  |
| 가족원 채무불이행 여부 (있음=1)      | -0.009<br>(0.04) | 0.050<br>(0.04)   | 0.242<br>(0.42)     | 0.012<br>(0.07)    | 0.006<br>(0.05)     | 0.028<br>(0.04)    | -0.005<br>(0.04)   | -0.019<br>(0.04)   | 0.039<br>(0.04)    | 0.007<br>(0.05)   | -0.026<br>(0.04)  |
| 관측치                      | 617              | 617               | 617                 | 617                | 617                 | 617                | 617                | 617                | 617                | 463               | 617               |
| R-squared                | 0.016            | 0.022             | 0.054               | 0.021              | 0.034               | 0.028              | 0.019              | 0.037              | 0.027              | 0.043             | 0.025             |
| 추정방법                     | Logit            | Logit             | OLS                 | OLS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Logit             |

출처: 「재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10〉 다양한 모형에서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효과의 추정치 비교

| 성과          | 지표         | 추정 방법 | 제도 미이용 청년과의 비교 모형 |              |                | (4) 중장년 제도 이용자와 비교 모형 |
|-------------|------------|-------|-------------------|--------------|----------------|-----------------------|
|             |            |       | (1) 기본모형          | (2) 통제 변수 추가 | (3) '23년 신청 제외 |                       |
| 부채 감소       | 총대출 감소율    | OLS   | 0.154**           | 0.158**      | 0.166**        | 0.098                 |
|             | 신용대출 감소율   |       | 0.388*            | 0.450**      | 0.383          | 0.464*                |
|             | 총대출 감소 여부  | Logit | 0.163***          | 0.144***     | 0.172***       | 0.060                 |
|             | 신용대출감소 여부  |       | 0.109***          | 0.105***     | 0.115***       | 0.090**               |
| 소득 증가·소비 감소 | 월소득 증가율    | OLS   | 0.142             | 0.242        | 0.105          | -0.036                |
|             | 소비비중 감소량   |       | 0.266**           | 0.287**      | 0.248**        | 0.161*                |
|             | 소득 증가 여부   | Logit | -0.053            | -0.026       | -0.049         | 0.080*                |
|             | 소비비중 감소 여부 |       | 0.036             | 0.045        | 0.032          | 0.122***              |
| 고용·노동 개선    | 신규취업 여부    | Logit | -0.005            | 0.014        | 0.000          | 0.051*                |
|             | 승진 여부      |       | 0.008             | 0.024        | 0.007          | 0.048*                |
|             | 고용개선 여부    |       | -0.003            | 0.039        | -0.001         | 0.097***              |
|             | 노동시간증가 여부  |       | 0.029             | 0.045        | 0.044          | -0.037                |
|             | 노동의지증가 여부  |       | 0.106**           | 0.100**      | 0.126***       | -0.013                |
| 심리·건강 증진    | 우울점수 감소량   | OLS   | 0.784**           | 0.594        | 0.914**        | 0.489                 |
|             | 극단충동 감소량   |       | 0.146**           | 0.133*       | 0.194***       | 0.124*                |
|             | 우울 감소 여부   | Logit | 0.127***          | 0.095**      | 0.125***       | 0.100**               |
|             | 극단충동 감소 여부 |       | 0.109***          | 0.098**      | 0.118***       | 0.059                 |
|             | 건강상태 개선 여부 |       | 0.114***          | 0.118***     | 0.106***       | 0.023                 |
| 가족 사회 안정    | 대인관계 개선 여부 | Logit | 0.151***          | 0.171***     | 0.167***       | 0.094**               |
|             | 가족관계 개선 여부 |       | 0.087**           | 0.089**      | 0.091**        | 0.068                 |
|             | 결혼의지 개선 여부 |       | 0.060             | 0.088*       | 0.039          | 0.101*                |
|             | 출산의향 개선 여부 |       | 0.027             | 0.032        | 0.018          | 0.007                 |

주: 모형 (1)은 기본모형이며, 모형 (2)는 대부업신용대출 보유 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유 여부, 학자금대출 보유 여부, 햇살론 보유 여부, 수도권 더미,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자영업 여부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함. 모형(3)은 2023년에 제도를 신청한 이용자를 제외한 표본에서의 추정 결과임. 모형(2), 모형(3)에서도 모형 (1)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기본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음. 모형 (4)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여 추정된 계수를 나타냄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4. 각 성과지표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

〈표 4-11〉은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으로 하는 〈표 4-8〉, 〈표 4-9〉, 즉 제도 미이용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기본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성과지표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통제변수들을 부호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재무구조, 고용, 건강, 대인관계 등에 신용대출 및 차입투자금 비중, 학력, 가족특성, 과거 채무불이행 여부 등과 같은 통제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표 4-8〉, 〈표 4-9〉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추정계수의 크기와 언급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기 보다는 각 지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는 통제변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방향성을 해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총대출 감소율과 신용대출 감소율 모두 채무자의 총 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거나 차입하여 금융투자를 한 비중이 높을 때 더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고,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채무자의 대출감소율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용대출이 감소할 확률은 차입투자금 비중이 높을 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입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조금이라도 값으며 관리를 더 자주 하지만, 상환금의 규모는 오히려 적음을 나타낸다.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는 경우 소비비중 감소율이 더 낮아지고 소득증가율도 더 낮아지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이 반복되는 채무자의 경우 소득을 더 높이거나, 소득 내에서 소비를 조정할 여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 경우에 소득증가확률과

소비비중 감소확률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가족 내에 또 다른 채무불이행 구성원이 있을 때 청년은 재정적 위기감과 경제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껴서 더 적극적으로 벌고, 더 아끼는 방향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각 성과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종류

| 성과       | 세부 지표      | 음(-)의 영향 통제변수                    | 양(+의 영향 통제변수  |
|----------|------------|----------------------------------|---------------|
| 부채 감소    | 총대출 감소율    | 신용대출 비중, 차입투자 비중                 | 담보대출 비중       |
|          | 신용대출 감소율   | 신용대출 비중, 차입투자 비중                 |               |
|          | 총대출 감소 여부  | 신용대출 비중                          | 채무불이행 가족      |
|          | 신용대출감소 여부  | 고졸이하 여부                          | 차입투자 비중       |
| 소득 증가    | 월소득 증가율    | 결혼 여부                            | 차입투자 비중       |
|          | 소비비중 감소량   |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               |
|          | 소득 증가 여부   | 자가주택유, 과거 채무불이행                  | 가족원 채무불이행 여부  |
|          | 소비비중 감소 여부 |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 가족원 채무불이행 여부  |
| 고용 노동 개선 | 신규취업 여부    | 남성 여부                            |               |
|          | 승진 여부      |                                  |               |
|          | 고용개선 여부    |                                  |               |
|          | 노동시간 증가 여부 |                                  |               |
| 심리 건강 증진 | 우울점수 감소량   | 신용대출·담보대출·차입투자금 비중, 결혼여부, 부모님 동거 |               |
|          | 극단 충동 감소량  | 담보대출 비중, 결혼여부                    |               |
|          | 우울 감소 여부   | 신용대출·담보대출·차입투자금 비중, 남성여부         |               |
|          | 극단충동 감소 여부 | 신용대출·담보대출 비중, 남성                 |               |
|          | 건강상태 개선 여부 |                                  | 자가보유          |
| 가족 사회 안정 | 대인관계 개선 여부 | 차입투자금·신용대출 비중                    | 부모동거          |
|          | 가족관계 개선 여부 | 신용대출·차입투자금 비중                    |               |
|          | 결혼의지 개선 여부 |                                  | 담보대출 비중       |
|          | 출산의향 개선 여부 |                                  | 결혼여부, 과거채무불이행 |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우울점수 감소량과 감소 여부에 신용대출 비중, 차입투자금 비중, 담보대출 비중이 모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세가지 이외

의 부분이 보증대출인데, 정책적 배려가 있는 학자금 대출이나 서민금융 대출과 달리, 이 세 가지 유형의 대출 비중은 청년의 정서 회복에 뚜렷한 방해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의 고금리 부담, 차입투자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담보대출의 자산 상실 두려움들이 청년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을 때 결혼의지 개선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담보대출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택 등의 자산을 확보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산 기반이 있는 청년이 결혼 준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4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상세 특성

본 절에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에 나타난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특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앞서 효과분석 결과를 해석한 내용들의 타당성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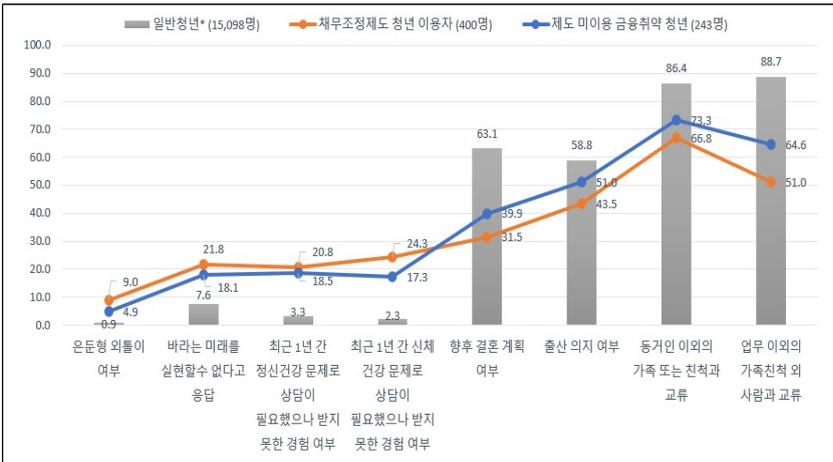
### 1. 심리·사회적 경험

[그림 4-7]은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나타낸다. 먼저, 사회적 고립 수준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은둔형 외톨이 비중은 9.0%, 제도 미이용 금융취약청년은 4.9%로, 일반 청년층(0.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가족이나 가족·친척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비중 역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66.8%, 51.0%)과 미이용 금융취약청년(73.3%, 64.6%) 모두 일반 청년(86.4%, 88.7%)보다 뚜렷이 낮아, 채무 과중 청년층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단절·고립된

생활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결혼 계획의 경우에도 제도 이용 청년(31.5%)과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39.9%)은 일반 청년(63.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부채 부담이 청년의 장기적 생애계획 수립과 가족형성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7] 상세특성 1: 심리·사회적 경험



출처: 일반청년은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그 외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한편,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또는 신체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제도 이용 청년이 각 20.8%, 24.3%,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이 18.5%, 17.3%로, 일반 청년(각 3.3%, 2.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금융취약 청년층이 심리적·신체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청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 결혼·출산 의향 위축, 정신·신체건강 악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채무조정

제도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복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기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 대출용도, 연체해결

### 가. 대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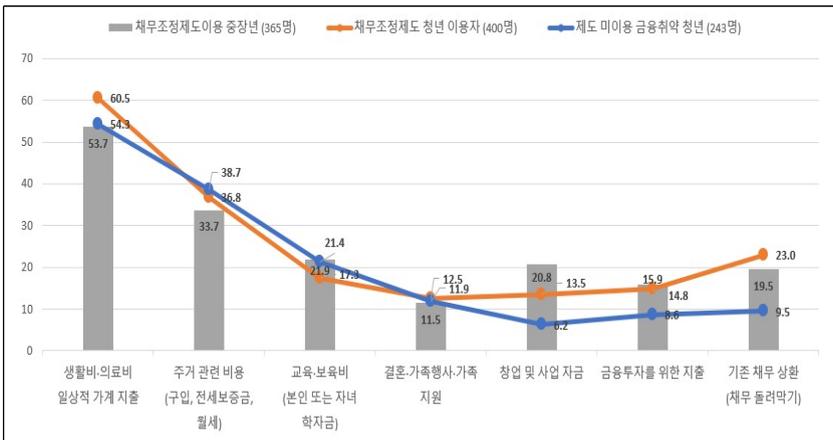
[그림 4-8]은 대출 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경우 생활비·의료비 등 일상적 가계 지출(청년 60.5%)과 주거 관련 비용(36.8%)의 비중이 높아,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 차입이 주요한 대출 원인으로 나타났다. 미이용 청년과 제도이용 중장년 역시, 생활비·의료비 및 주거비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유지 목적의 대출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은 대출용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23.0%)과 중장년(19.5%)은 미이용 청년(9.5%)에 비해 '기존 채무 상환(채무 돌려막기)' 목적 대출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부채의 누적과 상환 부담이 심화되어 채무의 악순환에 직면한 상태에서 제도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 역시 제도 이용자 집단(청년 14.8%, 중장년 15.9%)이 미이용 청년(8.6%)보다 높아, 투자 실패나 과도한 금융위험 노출이 부채 위기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장년층 제도 이용자의 경우 창업 및 사업 자금(20.8%)의 비중이 특히 높아, 자영업 또는 창업 실패로 인한 재정위기가 제도 이용의 주요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대출의 주요 목적은 생활비·의료비 및 주거비 등 생계유지성 지출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제도 이용 청년층의 경우, 기존 채무 상환(채무 돌려막기) 목적 대출 비중이 제도 미이용 청년보다 약 13.5%p, 제도 이용 중장년층보다도 3.5%p 높게 나타나, 부채 누적과 상환 부담이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반면 제도 미이용 청년층은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이 21.4%로 가장 높으며, 제도 이용 집단에 비해 금융투자(8.6%)와 기존 채무 상환(9.5%)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이용 중장년층은 창업 및 사업 자금(20.8%)과 기존 채무 상환(19.5%) 비중이 모두 높아, 자영업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위기가 주요한 부채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상세특성 2: 대출용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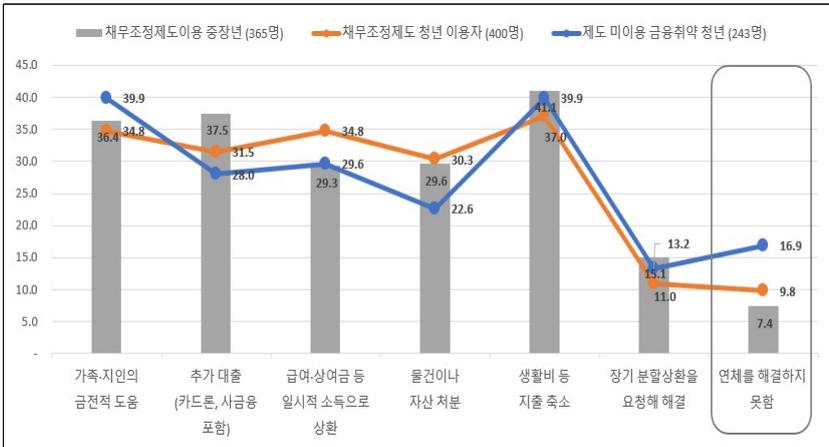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연체 해결 방식을 나타낸 [그림 4-9]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청년의 약 16.9%가 여전히 연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연체 해결을 위해 추가 대출(청년 31.5%, 중장년 37.5%)을 받거나 자산을 처분(청년 30.3%, 중장년 29.5%)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제도 미이용 청년은 가족·지인의 금전적 도움(39.9%)이나 생활비 지출 축소(39.9%)와 같이 비공식적·절약 중심의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집단이 연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반면, 제도 미이용 청년층은 가족의 지원이나 소비 조정 등 상대적으로 방어적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4-9] 상세특성 3: 연체해결 방식 (복수응답)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나. 연체 미해결 채무자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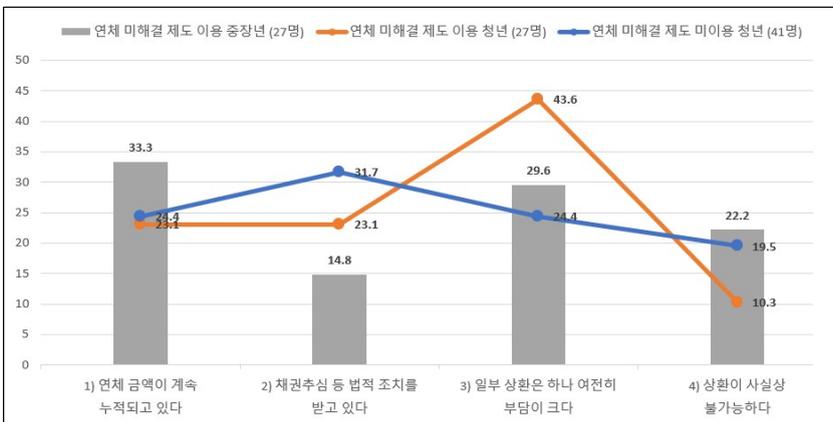
[그림 4-10]에서 연체가 미해결된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취약청년도 상당수(31.7%)가 채권추심 압박을 견디고 있으며, 19.5%의 해당하는 채무자가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에 비추어 보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취약청년들이 다른 해결방법이 있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보다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버티는 경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이 당장 채권 추심이라는 시급하고 직접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 중에서는 일부 상황은 하나 여전히 부담이 크다(43.6%)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제도를 통해 법적 조치는 일단 중단시키고 상황을 시작하여,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조정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의 경우 연체 금액이 계속 누적(33.3%)되거나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22.2%)고 느끼는 비중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제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 원금 자체가 너무 크거나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워 조정된 계획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상세특성 4: 연체 미해결자의 재정상태



주 : 연체 미해결 응답자 중 해당 항목에 응답한 비중(%)

출처: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제5절 소결

〈표 4-12〉는 성과지표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를 따로 정리하고 효과의 크기를 해석한 것이다. 22개 성과지표에 대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청년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여 채무조정제도가 청년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대부분 타당한 성과지표라 판단된다.

다만 가족·사회지표에 해당하는 결혼의지나 출산의향 증가의 지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제도가 직접적으로 목표표로 하기보다는 심리적·경제적 안정이 된 후에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간접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월소득 증가율이나 증가여부에도 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채무자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안정적인 현재의 소득원을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거나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소득의 증가로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채무조정이 완료되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소득을 크게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채무조정이 완료된 3년 4년 이후에 적용하는 장기성과 측정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2〉 성과지표별 채무조정 이용효과 추정값과 해석

| 성과            | 세부 지표      | 추정 방법 | 추정결과     | 효과 해석: 19~35세 청년이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미이용에 비해 |
|---------------|------------|-------|----------|---|
| 부채 감소         | 총대출 감소율    | OLS   | 0.154**  | 총대출 감소율이 15.4% 높아짐.                     |
|               | 신용대출 감소율   |       | 0.388*   | 신용대출 감소율이 38.8% 높아짐.                    |
|               | 총대출 감소 여부  | Logit | 0.163*** | 총대출 감소 확률이 16.3%p 높아짐..                 |
|               | 신용대출감소 여부  |       | 0.109*** | 신용대출 감소 확률이 10.9%p 높임.                  |
| 소득 증가·소비비중 감소 | 월소득 증가율    | OLS   | 0.142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소비비중 감소량   |       | 0.266**  |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26.6%p 감소                  |
|               | 소득 증가 여부   | Logit | -0.053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소비비중 감소 여부 |       | 0.036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고용·노동개선       | 신규취업 여부    | Logit | -0.005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승진 여부      |       | 0.008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고용개선 여부    |       | -0.003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노동시간증가 여부  |       | 0.029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노동의지증가 여부  |       | 0.106**  | 노동의지 개선 확률이 10.6%p 높아짐.                 |
| 심리·건강증진       | 우울점수 감소량   | OLS   | 0.784**  | PHQ-9 우울점수가 0.78 점 더 낮아짐.               |
|               | 극단 충동 감소량  |       | 0.146**  | 극단적 충동 점수가 0.146 더 낮아짐.                 |
|               | 우울 감소 여부   | Logit | 0.127*** | 극단충동 감소 확률이 12.7%p 높아짐.                 |
|               | 극단충동 감소 여부 |       | 0.109*** | 극단충동 감소 확률이 10.9%p 높아짐.                 |
|               | 건강상태 개선 여부 |       | 0.114*** | 건강상태 개선 확률이 11.4%p 높아짐.                 |
| 가족사회안정        | 대인관계 개선 여부 | Logit | 0.151*** | 대인관계 개선 확률이 15.1%p 높아짐.                 |
|               | 가족관계 개선 여부 |       | 0.087**  | 가족관계 개선 확률이 8.7%p 높아짐.                  |
|               | 결혼의지 개선 여부 |       | 0.060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               | 출산의향 개선 여부 |       | 0.027    | 통계적 유의한 효과 없음.                          |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극단행동 점수를 감소시키는데 채무조정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공표하고 관련 질문을 지속하는 것이 민감하고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보다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PHQ-9 우울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 측면에서는 노동의지가 개선되었다는 주관적 변화에 이외에 승진·신규취업·노동시간 증가와 같은 실직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목표인 만큼 해당 지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5장

###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의 질적 분석

제1절 FGI 설계

제2절 채무조정제도 한계

제3절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제4절 소결



## 제 5장

#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의 질적 분석

### 제1절 FGI 설계

본 절에서는 금융취약청년을 현장에서 상담·지원하는 종사자<sup>9)</sup>를 대상으로, 앞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채무조정제도의 효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성적 효과 및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의 주요 특성과 제도의 한계점, 그리고 청년이 제도 이용 전-후에 경험하는 변화와 더 나은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참여자 구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주요 제도나 사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집단의 구성은 <표 5-1>에 제시하였고, 집단을 구분한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지원제도를 공사로 구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주로 지원하는 종사자(집단1)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 2명, 상담 후 이용자격이 부적합하여 미이용한 청년 2명, 개인회생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 2명, 신청이 탈락한 청년 2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일부 참여자는 휴대전화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이사 문제로 조사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채무 연체로 인한 통신 제약, 대면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 생계와 일상생활의 과중한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면접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담당하는 종사자(집단2)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두 개 제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지원 종사자(집단3)를 구성하였다. 셋째,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공통적 한계인 통합적 재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집단 4, 5)로 구성하였다.

종사자 FGI는 모두 대면으로 총 5회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발송하여 연구 주제와 인터뷰 진행에 대해 준비해오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가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참석자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표 5-1〉 FGI 구성과 운영

| 구분 | 집단 특성        | 일시                           | 참석자(소속)                                       | 장소             |
|----|--------------|------------------------------|---|----------------|
| 1  | 개인회생제도 지원    | 2025.9.4.(목)<br>10:00-12:00  | A(법무사, 회생법원 상담위원)<br>B(청년동행센터 상담관)            | 서울역<br>스마트워크센터 |
| 2  | 신용회복제도 지원    | 2025.9.4.(목)<br>14:00-16:00  | C(서민금융진흥원)<br>D(신용회복위원회)                      | 서울역 회의실        |
| 3  | 채무조정제도 법률 지원 | 2025.9.18.(목)<br>10:00-12:00 | E(변호사)<br>F(법무사)                              | 서울역<br>스마트워크센터 |
| 4  | 청년채무문제 지원    | 2025.9.19.(금)<br>15:00-17:00 | G(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br>H(광주청년드림은행)<br>I(광주청년드림은행) | 광주청년<br>드림은행   |
| 5  | 금융통합지원       | 2025.9.26.(금)<br>10:00-12:00 | J(서민금융진흥원)<br>K(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역<br>스마트워크센터 |

출처: 연구진 작성

## 2. 질문지 구성

본 연구의 핵심 주제가 금융취약청년과 재기지원 이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발견하고 통합지원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FGI 질문지도 이를 중심으로 〈표 5-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5-2〉 FGI 질문지

- 
- 기관,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은 채무관련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 소속된 기관에서 청년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내용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차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제도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취약한 부분(불안정 고용, 낮은 소득·자산 등)과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청년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예: 취업, 학업, 사회활동 제한)은 무엇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속된 기관과 제도에서 청년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계는 무엇입니까?
  -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채무를 넘어 통합적 재기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더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본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 관련 제도의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까?
  - 특히 청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위해 어떤 차별화된 접근(예: 소득 연계 상환, 저축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통합적 재기 지원 과정에서 기관간 연계와 협업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혹은 기관별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절 채무조정제도의 한계

본 절에서는 5회의 FGI를 통해 도출된 채무조정제도와 통합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한계는 대출과 부채를 둘러싼 문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 그리고 통합적 재기지원 관점에서 연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와 한계

| 영역         | 범주                | 개념  |
|------------|-------------------|---|
| 대출과 부채     | 불건전 대출            |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 대출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청년의 낮은 신용도  |
|            |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부채    | 금융역량 부족,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
| 개인회생 제도    | 변제 요건의 불합리함       | 변제기간 단축요건에 주식코인도박 제외, 채무가중도 고려안함, 1인가구 불리   |
|            | 완제하기 힘든 구조        | 변제율에 따라 완제 다름, 상환 유예 불가, 무리하게 설정한 소득상환 계획, 소득감소 시 악성 대출받음                           |
|            | 초기 진입장벽과 행정편의주의   | 회생인가까지 장시간 소요, 서류복잡, 안정적 소득자만 이용 가능, 법률구조공단의 불충분한 상담, 열람가능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요구            |
|            | 지역간 실무준칙 적용의 차이   | 변제기간 단축 적용 차이, 배우자 재산 적용 다름, 청산가치 보전 다름, 주거비 인정비율 다름, 특별면책의 유무, 추심중단을 위한 금지명령 여부 다름 |
|            | 불건전한 대리인 시장       | 수임료 부담, 수임료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대출업체와 결탁, 수임료를 부채에 포함, 대형 법무법인 진입, 광고 범람                  |
| 신용회복 위원회   | 채무조정 기능 미흡        | 실질적 채무감면 낮음, 협약기관 채무만 감면, 채권자가 동의해야만 감면 가능  |
|            | 장기간 소요            | 장기간 소요, 미래계획 지연   |
|            | 변제 중 대출           | 변제 중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추가 대출 유도   |
| 채무조정 제도 전반 | 공공기록 삭제의 무의미      | 개인회생은 공공기록 삭제 안 됨, 공공기록 삭제되어도 금융기관 대출 불가, 재기 기회 차단                                  |
|            | 제도이용 중 개입 불충분     | 이용 전: 종합상담창구 없음<br>이용 중: 변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입 부재<br>이용 후: 사후관리 미흡                   |
|            |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인식과 무지 | 회생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선,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대한 낙인, 광고효과로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이용                           |
| 통합과 연계     | 통합과 연계 필요성        | 복합 문제에 노출   |
|            | 금융교육 불충분          |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형식적임,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
|            | 공급자 한계            | 통합연계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 데이터와 시스템 연동이 안 되면 실질적 연계 어려움, 종사자 역량 부족                      |
|            | 청년의 한계            | 안내 연계해도 가지 않음, 연계한 제도나 사업의 자격과 이수 요건 충족 못 함   |
|            | 컨트롤타워 부재          | 정부 부처 중 컨트롤타워 부재, 종합역할 담당할 기관 부족  |

출처: 연구진 작성

## 1. 대출과 부채를 둘러싼 전반적 문제

채무조정제도 및 통합지원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검토해야 하는 이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청년들이 부채를 진다는 것이다. 부채가 있거나 대출을 했더라도 그것을 기한 내 상환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이는 불건전 대출과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부채 등 2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불건전 대출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고정소득이 없거나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대출할 수 없는 청년에게 접근하는 브로커 시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청년을 위장 취업시켜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다.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근로자인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게 청년들한테.” ㄱ

한편, 건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청년에게는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문제도 존재한다. 갓 취직한 청년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결혼이나 전세대출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친구들한테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많이 안 쌓여 있고 신용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고금리로 빌려야 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도

나 이런 거 너무 낮아서. 또 그런 친구들은 돈 쓸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게 빌려야 되는..” \_K

둘째, 대출과 부채가 채무조정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융역량이 부족하여 본인이 채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의 확대에 의해 돈을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도 일부 나타남에 따라 채무조정제도가 정말 필요한 청년과 상황 의지 자체가 없어서 제도를 악용하려는 청년을 선별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돈을 빌려도 안 갚아도 된다. 약간 이런 인식도 많고 나라에서 뭔가 예전보다 더 복지 지원은 강화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_J

“신용회복이 필요하더라도 하는 청년은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왔을 때 신용 상태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로 막고 있는 상태가 일반인 거죠. 하지만 상담사들이 상담을 했을 때는 사실은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솔루션이 내려진 경우가 40%예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_G

## 2. 채무조정제도의 문제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와 한계는 우선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별 채무조정제도의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도 하단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 가.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점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변제 요건의 불합리함, 완제가 힘든 구조, 초기 진입장벽과 행정편의주의, 지역간 실무준칙 적용의 차이, 불건전한 대리인 시장의 확대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가받는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므로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가용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서울회생법원, 2025a, p.2). 또한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요건에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되는데, 주식과 코인이 자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임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도박은 불법이긴 하죠. 주식이랑 코인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닌 거를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또 옆에서 다 주식코인 해서 부자 되니까 했는데 그거를 했는데 단축기간 2년에서 배제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거는 좀 재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가가 그러면 금지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_E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든 간에 일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부담을 더 경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1인 생계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계비 인정의 폭이 작을 수가 있어요.” \_C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주어진 기간 안에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지만, 청년입장에서 완제까지 여러 위험이 있다. 개인회생제도 신

청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채무자의 완제가 아니라 개시 통과 여부를 성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홍보하므로, 인가를 위해 소득상환계획을 무리하게 세우게 된다. 이는 변제율이 높게 책정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완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에서 완제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청년기 특성상 소득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던 청년이 완제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변제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통과율을 본인 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상환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는.. 그래야 회생 파산 법원에서 더 인가를 해 주니까. 그래서 너무 높게 하거나. (중략)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꽤 오래 하였고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냥 워크아웃으로 전환한 청년도 있었어요.” \_I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변제금을 변동하고, 납입이 어려웠을 때 바로 유예를 한다거나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기능 자체가 아직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_H

셋째, 개인회생제도는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한계가 있다. 우선 신청하기까지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매우 많고, 회생 인가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최근 채무 문제가 급증하면서 회생제도 신청 건수는 매우 증가했지만, 법원마다 회생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인가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도 있다. 더불어 변제기간 안에 매월 돈을 갚아야 하므로 안정적인 소득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일용직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은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다. 이는 회생제도의 초기 진입장

벽을 높여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법원의 행정편의주의도 회생제도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이다.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채무자에게 요구하고 특히 가족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은 청년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5~6개월 동안 서류 검토하는 데만 50개씩 보고 있어. 의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요. 서울은 물론 한 달 안에 보통 5차 보정 공고 나오고 진행이 되는데 한 달 안에는 1차 보증 공고가 나와줘야 이제 보증서 준비해서 제출하고 검토받고 보통 2차까지는 가니까 3개월 안에 결정 나고 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가능한데 그렇게 나시는 분들이 요즘에 드물어요. 6개월 안에 인가 결정 나는 분들은 드물고 다 그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_A

“개인 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 치 6개월 치에 대한 소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가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 신청 요건적인 측면에서 법원은 문턱이 좀 높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_C

넷째, 회생제도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간 실무 준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변제기간 단축 적용 여부,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적용하는 여부, 주거비와 생계비 인정 비율과 기준, 특별면책 제도 적용의 여부, 추심 중단을 위한 금지명령 여부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다.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회생 위원에 따라서도 감면율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결국 어느 지방법원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금융취약청년이 갚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주소를 이전하기도 한다.

“변제기간 2년까지 단축 가능하게 해주는 게 서울에서 규칙 마련해서 지금 수원도 부산도 적용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하고 대전 같은 경우도 실무 준칙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른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안 따라요. 그래서 2년 단축도 저희가 최근에도 신청 해봤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른다고 만들어 놓고서는 막상 신청해 보면 우리는 아직 안 한다고 이런 식이어서 그 세 군데 빼고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중략) 변제율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회생위원이 결정하시는데 너무 재량이 많아서. 개인 회생부냐 파산부냐 따라 다르고 법원마다 틀리고 법원 안에서도 회생 위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 \_A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는 안 되는데 자신이 그런 가치 철학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_G

마지막으로는 개인회생제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청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대리인 시장을 둘러싼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수입료 부담은 청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수입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입료 격차 문제도 있었는데, 회생제도 수입료는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어떤 대리인이 정직한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싼 데는 지금도 15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데는 500.” \_A

특히 최근에는 채무가 심화함에 따라 대리인 시장이 건전하지 않게 변모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채무조정시장이 커지면서 대리인 광고가 범람하며, 대형 법무법인이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입료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대출업체와 회생제도를 지원하는 대리인 간 결탁도 나타나

는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에게 대출업체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소개하여 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수입료 일부를 소개비로 내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수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부채에 포함해 회생제도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여기저기 하다 보면 중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채무자한테 은인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돈을 구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봐서 여기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소개비 당연히 받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내야 될 수밖에 없죠. 수입료에 일단 실력이 검증되는 건지도 모른 데다가 보통 300에다 500으로 뛰어요.” \_E

“대부 업체로 또다시 빠져서 변호사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부채를 총액에 200만 원 150만 원 이런 금액까지 추가 부채가 생기는 거죠. 워낙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한테 가는지 모르잖아요.” \_G

####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설계한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조정기능 미흡, 장기간 소요, 변제 중 대출이라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감면 기능은 낮다는 한계가 있다. 협약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고, 그마저 채무자가 가진 총채무액 중에서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면할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원금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보면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게 없어요.” \_B

둘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비교적 생애 초기에 있는 청년기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들이 상환기간을 버티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무엇보다 빠른 재기지원 을 가로막고 미래 계획을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설계되는 제도에서 이게 적합한 경로인가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물론 청년을 설득하기에 유리하긴 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실제로 최근에 상담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청년 세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때문에 미래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선택이 어려워진다.. 시간이 담보되는 거예요.” \_G

셋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청년에게는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 있지만, FGI 참여자들은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대출 안 나오고 카드 못 쓰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래야 제대로 배워요. 대부분 업체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변제금 돌려막는 거 안 하게, 거기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야지 대출을 잘 나오게 해주는 거는 좋은 대책 절대 아니라고 봐요.” \_A

“채무조정을 하고 1년인가 지나면 채무자인데도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빚 내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_E

#### 다. 채무조정제도의 전반적 문제와 한계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각각의 한계가 아니더라도 채무조정제도 전반을 둘러싼 한계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공공정보 삭제의 무의미, 제도 이용 중 개입의 불충분,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인

식과 무지 등 3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년 후 공공기록을 삭제하고 있고, 이는 청년들에게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만드는 매우 큰 동인이다. 이에 최근 개인회생제도에서도 공공정보에서 관련 기록 삭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록이 삭제되더라도 CB사에서 연체기록은 5년간 보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연체를 하는 청년들의 채무발생 경로를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연체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에 대한 규약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용정보원 심의사들이 그 규약을 근거로 연체기록을 5년간 평가합니다.” \_B

“채무조정이, 회생을 했지만 다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상환을 하고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으면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원이 차단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갖고 있었던 은행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죠.” \_J

둘째, 제도 이용 중 개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는 제도 이용 전후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제도를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상황과 부채 속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종합상담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모두 해당 기관이 속한 제도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변제과정 중에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나 이에 대한 지원, 상담창구 역시 없고, 완제 이후에 청년이 다시 채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가면은 회생 파산만 상담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래도 좀 회생 정도까지도 같이 고려하지만, 대부분은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제도 선택이 좀 어려운 게” \_I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하고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도 상담하지만 상담이 어떤 제도 신청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신청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적합한 제도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신청주의로 가다 보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건만 되면 신청하고 유지 못하고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마주하거든요.” \_H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나서 변제하는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신용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현재 납입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선제적으로 뭔가 시그널 주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와서 상담을 받거나 저희가 적절한 제도 안내를 한 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 거거든요.” \_C

셋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용자들의 무지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는 나락까지 간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채무를 죄악시키는 풍조는 청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제도에 대해 무지한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더 이용하게 된다. 제도에 대한 무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는 청년에 대해 사회적인 시각에서 약간 실패자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융의 책임

도 있죠. 명확히 스코어링을 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으면 대출이 안 나갔겠죠.” \_D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마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_A

“선생님들 어디 가야 돼요? 물으면 단번에 나오는 게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회생파산제도 존재를 몰라요.” \_B

### 3. 통합적 재기지원 관점에서 기존 연계의 한계

개인회생제도나 워크아웃의 한계로 인해 통합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은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재단, 광주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정서, 고용, 주거, 식사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채무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합과 연계의 효과를 원활하지 않게 하는 상황으로 금융교육 불충분, 공급자 한계, 청년의 한계, 컨트롤타워 부재 등 4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첫째,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협의회가 있지만, 금융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놓았을 뿐 금융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로 인해 채무불이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생애주기에 기반한 금융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관련 체계가 없는 상황은 재기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더라도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서 플랫폼으로 콘텐츠는 모아놨어요. 금융감독원에 콘텐츠는 모아놨는데 그냥 콘텐츠를 모아놓은 것뿐이지 어떤 파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콘텐츠들은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교육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있지 않고.” \_D

둘째, 통합지원의 효과를 낮추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정부 부처나 산하 관의 고유한 업무와 기능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과외 업무와 기능이라는 인식이 있고, 해당 부처와 기관의 고유 실적에서도 주목받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통합과 연계의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부처 간, 기관 간 데이터 기반 전산망과 플랫폼의 연동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 연계협력은 어렵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이음과 연동이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전산망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 통합 안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다양한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 몇몇 제도로 안내가 쏠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통합관리는 고용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쪽도 메인 업무가 있으시고 하셔서 사후관리를 저희만큼 간절하지 않으신 거죠.” \_J

“상담사가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깐 그래서 안내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_K

셋째, 통합과 연계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량도 필요하다. 통합지원을 위해 안내하거나 연계하더라도 청년이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연계한 제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이수 요건이 너무 까다로울 때는 서비스 연계가 진행되기 어렵다.

“청년들도 취업 준비도 하고 직장 있으신 분들은 휴가를 내고 방문하시기 어려운 데 오셨다가 또 다른 센터로 가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_J

마지막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통합지원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정하고 조율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통합지원을 강화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며, 통합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도 주체에 따라 성격이 모두 다르다.

“전국적으로도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운영기관과 주체도 다 다른 거예요. 서울은 서울시가 운영을 하지만 지방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사업을 맡겨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전국에 컨트롤 하는 중앙 부처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_B

### 제3절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통합지원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토대로 FGI에서 제기된 의견에 기반하여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개선방안은 원칙과 방향, 기존 제도의 개선안, 그리고 통합지원과 연계 활성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금융취약청년 및 재기지원 이용자의 통합지원모델을 위한 방안

| 영역            | 범주                | 개선방안   |
|---------------|-------------------|--|
| 원칙과 방향        | 예방적 개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 강화</li> <li>• 청년친화방식의 자산형성지원과 대출상품 운용</li> </ul>   |
|               | 기존 제도와 사업의 장점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금융진흥원,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민간 통합지원사업의 장점</li> </ul>  |
|               | 채무조정을 넘어 통합적 재기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재설정: 채무조정이 아닌 삶 전반의 회복</li> <li>• 지원과정 정비: 준비 시간 보장, 성과 측정과 관리</li> </ul>  |
| 기존 제도의 개선     | 개인회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성과 보상성 확대</li> <li>• 지역 간 일관성 확보</li> <li>• 절차의 편의성 증대</li> <li>• 경제적 지원: 비용 지원과 소득지원</li> <li>• 변제기간 단축의 결격사유 완화</li> </ul>    |
|               | 신용회복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감면 외에 청년 대상 감면 적용 확대</li> <li>• 기간 단축</li> </ul>  |
|               | 채무조정제도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 중: 위험예측, 성실상환 인센티브, 이행 중심 상환유예 도입</li> <li>• 변제 후: 사후관리 추가, 변제완료자 별도 대출상품, 기록 삭제</li> <li>• 제도 전반: 연령 통일, 대리인 시장 정화</li> </ul> |
| 통합 지원과 연계 활성화 | 통합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진입 전 단계 재정비</li> <li>• 제도 인프라 재정비</li> </ul>   |
|               | 통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생계지원, 소비습관 개선 교육, 생활관리 교육, 주거문제 해결, 취업 지원</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1.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원칙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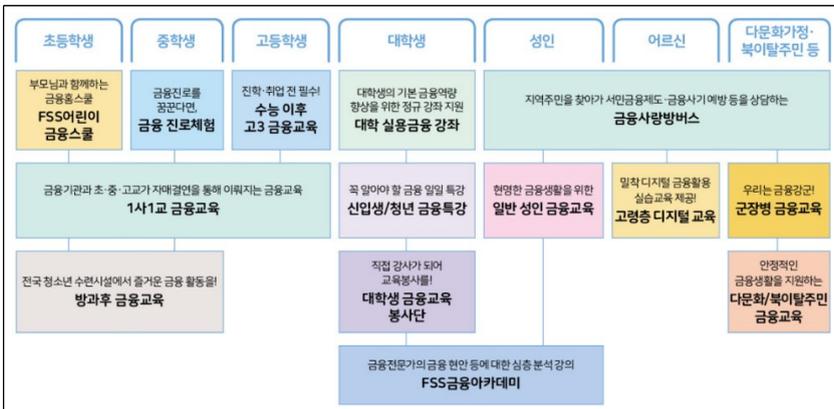
### 가. 예방적 개입 강화

재기지원을 위한 예방적 개입은 크게 금융교육 강화와 청년친화 방식을 강화한 자산 형성지원과 대출상품 도입이라는 두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금융교육 강화는 내용과 시기를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다. 우선 내용 면에서는 좋은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거

나 금융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e-금융센터에서는 금융교육콘텐츠를 모두 모아놓고 국내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림 5-1]과 같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현재 775개 업로드되어 있다(금융감독원, n.d.). 그러나 FGI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금융교육을 위한 전 생애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있고, 콘텐츠도 매우 다양하지만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의 수행 주체가 다양해서 체계적인 흐름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단순히 교육콘텐츠를 모아 놓는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설계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edu/main/contents.do?menuNo=300065>)

무엇보다 금융교육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 FGI에서는 성인진입기 전후, 대출 전, 채무조정제도 이용 기간 등 3개 시점이 강조되었다. 생애주기 중 특히 금융 접근성이 증가하는 성인 진입기 전후에 정규교육과정으로 금융교육을 하거나 대학교나 군대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대출을 받기 전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이 대출하면 당연히 상환 가능성이 감소하고, 이는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로 가기 전 안전장치로써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이 다시 제도에 재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금융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청년동행센터와 협약을 통해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시간 가량의 재무길잡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준다. 그런데 이는 변제 개시 인가 이전 시점에 해당하므로, 변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변제계획 인가조건으로 매년 금융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학교 금융교육이 제대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긴 거고, 4대 범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처럼 학교에 1년에 몇 번을 의무화하고 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공시해서 교육이 빠진 부분은 체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체계화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양쪽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 보니까.”\_D

“돈을 벌지 않는 친구들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해서 상환이 전제되도록, 빌리는 과정의 어려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20살부터 25살의 상품은 교육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야 해요”\_K

“변제계획 인가조건에 매년 교육을 받으라고 조건을 달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면책 단계에 통과하도록, 면책 단계

에서는 매년 교육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_F

둘째, 청년친화 방식을 강화한 자산 형성지원과 대출상품 도입은 청년 도약계좌와 햇살론유스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가입자의 납입액에 맞춰 정부가 월 최대 3.3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이다. 5년 만기이고 원칙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이 모두 소멸하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여금의 60%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이나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청년 대상 기여금의 일정 비율 인정은 청년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특히 청년은 일자리 특성상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월 납입액 개념이 아니라 연 납입액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모든 청년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250%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삭제할 필요가 있겠다.

“적금 같은 경우도 70만 원짜리지만 여력이 있을 때 몇 번 더 넣게 해 주세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다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연한도 두고 월한도를 정한다. 이게 은행에 오랫동안 적금 상품의 시스템인 건데 적금이라는 게 매월 12회 회차는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친구들은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740만원을 내가 넣을 수 있으면 1년 동안에 740 연제라도 넣게 해주는” \_D

자산형성지원에 이어 청년대상 대출상품 설계도 청년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청년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현재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 최장 7년 상환으로 5%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빌려준다. 이 때 금융교육과 연동하여 상환 중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금융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임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모두 햇살론 유스의 대출금리가 5%로 똑같이 설정되어 있으나, 사회초년생은 결혼자금이나 차량 구입 등 미래 계획을 위해 목돈이 들어갈 일이 더 많다. 따라서 소득이 안정적인 사회초년생 청년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취업자는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로 국한되어 있는데, 34세 이전에는 중소기업 재직 연한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9%에서 대출 시작을 했으면 이번 달 잘 갚고 다음 달 잘 갚으면 잘 갚을 때마다 금리를 깎아주고 세 달에 한 번씩은 금융교육을 들으면 좀 낮춰주고.” \_D

“청년이지만 같은 청년이 아니에요. 34살 직장 이하의 직장 다닌 친구는 그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금리는 비싸요. 34살 이하의 계층이 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개별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햇살로 유스를 취급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한테 1년 이상 근무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34살이 되는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햇살론 유스 안 되면 소득이 적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월급 30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금리가 또 10%대로 거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도리어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돈 쓸 일이 많거든요.” \_K

〈표 5-5〉 예방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 구분                 | 실행안   |
|--------------------|---|
| 금융교육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의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li> <li>• 성인진입기 전후: 금융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 및 운영, 금융교육의 의무화</li> <li>• 대출 전: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취업준비생 대상 금융교육 강화</li> <li>• 채무조정 전: 변제기간 중 정기적 금융교육 수요자에 한해 면책</li> </ul> |
| 청년친화 자산형성지원 및 대출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분위 설정 폐지, 월 단위에서 연 단위 금액 충족으로 적금방식 개선, 부분 인출 사유 확대</li> <li>• 햇살론 유스: 사회초년생 대상 대출금리 인하, 게임 방식 적용(정기적 금융교육 수요자 대상 금리 인하), 34세 이전 중소기업 재직 연한 폐지</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나. 기존 제도와 사업의 장점 반영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을 위한 두 번째 원칙과 방향은 기존 제도와 사업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표 채무조정제도와 통합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 자산형성지원사업로 대표되는 청년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 이주, 사업장의 폐업,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배우자) 출산 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 후 2년 경과자는 납입원금의 4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해지와 중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면책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제계획안 제출 시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인가가 되기 때문에 변제 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제금이 오르지 않는다. 또한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된다. 무엇보다 청년 입장에

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변제기간이 짧고 청년에게는 서울, 부산, 수원에만 해당하긴 하지만, 2년으로 단축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셋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3년 범위 안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금융취약청년에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제도 신청과 동시에 독촉, 불법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만 60세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실비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또한 채권자에 대해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월세나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하여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고, 결과적으로 가용소득이 더 낮게 책정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무조정 6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다. 행복이음을 통해 채무위기가자 동주민센터로 연계되는 건수는 연간 만 건에 달하고, 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된 경로로 작용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금융취약청년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조직 내부적으로 통합연계의 효과를 위해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청년드림은행처럼 민간조직에서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대 1 상담을 2회 받은 청년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연체해소 지원금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취약청년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제도 이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지 종합 안내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진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청년의 불안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구체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5-6〉 기존 채무조정제도 및 사업의 장점

| 제도 및 사업     | 장점   |
|-------------|--|
| 청년도약계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중도해지제도 이용 가능</li> <li>• 중도 인출서비스 도입</li> </ul>  |
| 개인회생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책규모 큼</li> <li>• 가용소득에 관계없이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li> <li>• 변제기간 짧고 청년에게 단축적용</li> </ul>   |
| 신용회복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상환 시 유예제도 운영</li> <li>• 수급자에게 수입료 면제, 채무 감면</li> <li>• 월세를 생계비에 반영</li> <li>• 제도 신청 시 즉각 추심 중단</li> <li>• 채무조정 기간에 급히 필요한 비용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연계)</li> </ul>        |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 시스템 연계</li> <li>• 고용노동부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li> <li>• 보건복지부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li> <li>• 통합지원 고도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li> </ul> |
| 민간 통합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접근성 높음</li> <li>• 채무조정기간 중 지원금 지급</li> <li>• 청년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선택안 제시</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다. 채무조정을 넘어 통합적 재기 지원

금융취약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원칙과 방향은 지원의 핵심 방향이 ‘채무조정’이 아니라 ‘삶 전반의 회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재기 지원의 방향은 단순히 이자

울을 조정하고 변제금액을 정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만든 상황과 조건,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 등 원인을 해결하고 채무조정제도에 재진입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제도와 사업이 채무 문제 원인이나 이것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나라고 했을 때는 좀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_H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복위나 혹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다시 세워져야 해요.” \_G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제도를 빨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생계를 꾸리기에도 벅찬 청년이 추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출 상환에 소진하기보다 청년수당 등 소득지원정책으로 연계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지원을 토대로 시간을 보장한 후 채무조정제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가는 거죠. 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지금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당장 밥 먹을 돈,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추심이 무서워서 연체가 무서워서 그걸 다 대출 상환에 소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당과 같은 정책을 연결하는 게 사실은 바로 취업을 하면 불안정한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충분한 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직업 훈련을 하는 시간 보장으로서의 정책이 그때 필요한 거죠. 6개월 동안은 일 경험 등에 진입해서 이 소득을 통해서 시간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보자고 하는 단계별 설정이 필요로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채무조정 선택으로만 둔다면 다시 채무가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_G

채무변제에서 삶의 회복과 변화로 재기지원사업 목표의 범위가 확대되면, 성과 측정과 관리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완제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존감, 심리정서적 회복, 일자리 변동, 주요 생애사건 이행(졸업, 결혼 등) 등을 통해 재기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와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장기 추적 관리도 전제되어야 한다.

## 2.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개선안

### 가. 개인회생제도 개선안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안은 제도의 유연성 및 보상제도 적용방안 도입, 지역 간 일관성 확보, 절차의 편의성 증대, 비용 지원, 변제기간 단축 적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완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가장 다른 점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체계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정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은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2025년부터 보상성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제도도 1년 성실 변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한 공공정보에 대한 조기 삭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개인 워크아웃처럼 변제기간 중 질병, 재난, 실직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 특별 면책제도의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도 있겠

다.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정,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후 판사는 1주 이내에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면책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 2025a).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현재 재량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한 질병에 걸리는 등 더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의 청년에게는 특별면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법원 통계로 보면 인가 결정 후에 면책 결정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폐지당하는 분들이 25%예요.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분들이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특히 청년들이 다시 대부 업체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변제금 돌려막는 거 안 하게 포커싱이 맞춰져서 보완책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_A

“회생 제도가 조금은 삶의 어떤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_I

“워크아웃은 상환유예 기간이 있어요. 6개월씩 두 번 네 번인가 해서 2년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생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36개월에 대한 기간 중 절반은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6개월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_B

“채무자인 청년이 피아노 강사였는데, 암에 걸려 가지고 학원 원장한테 전화를 직접 해 봤어요. 이분이 진짜 실력도 있고 학원에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 특별 면책해줬어요.” \_F

그 외에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에 따르면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및 금

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체 청년 혹은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금지명령을 자동 적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압류해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연체와 독촉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압류 문제거든요. 제도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압류해지 신청하는데 심지어 비용도 들어요. 그냥 회생이나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압류를 해지해주면..” \_H

둘째, 회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 간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회생제도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서울, 부산,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있고, 2026년도에 대전, 광주, 대구 지역에 회생법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모든 지역에 회생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생법원이 있더라도 지역별 실무준칙이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들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무준칙의 차이를 검토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절차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는 변제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달 내로 개시 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계획 인가가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채무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증가하면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 지방법원에 회생 위원 수를 늘릴 필요

가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고려할 수 있겠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신용상당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를 하고 신속 면책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회생 위원이 일일이 검토하지 않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중간지원조직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속 변제계획 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법원들하고는 신속면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파산 중에서 면책 제도로 면책을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을 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회생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가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파산 제도를 갖다 저희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서류 검증이라든지 요건 검증을 다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면책을 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요. 신속 면책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_C

또한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 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 최소 9가지이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열람가능하고, 재산목록과 재산증명 서류는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증명은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거나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직접 열람 가능하도록 법원에서 할 수 있는데 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채무자에게 요청을 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빠르니까.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서류도 법원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되죠.” \_F

넷째, 상술한 것처럼 청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는 회생제도 시작 전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변제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회생제도 시작 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송달료와 수입료 부담을 낮추주는 방안이 있다. 현재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비용 외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만큼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채권자 수가 많아 질수록 송달료 부담이 커진다. 채권자 수가 10명이면 송달료는 약 50만 원 발생한다. 이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1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부모가 없거나 가족돌봄청년 등 실질적으로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소송구조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지 송달료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20~3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예납금은 사실 외부 회생 비용 15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이제 소송 구조 결정을 받으면 100만 원으로 해줘요. 100만 원 갖고 변호사 해줘요. 부모가 없는 청년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_E

비용지원 외에 변제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제 중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변제기간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하게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위기 시 저금리로 일정 한도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협력 사항을 바탕으로 청년동행센터에서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에게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 적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사행성 게임에서 비롯되었거나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면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주식과 가상화폐는 사행성 게임과 성격이 다르고 불법이 아니므로 결국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실패는 성격상 채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총액의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혹은 채무액 한도를 정하지 않고 채무 규모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도박은 불법이긴 하죠. 주식이랑 코인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닌 거를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2년 단축에서 배제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거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그러면 금지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다시 기회를 안 줄 이유는 없거든요. 채무 한도가 1억 5천인가 그거 넘으면 또 그것도 단축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 발생이 건전하면 또 특히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채무액이 수

억 대이든 2억이든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채권자의 손실이 크다고 하는 건데 금융기관은 돈 빌려주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금융기관을 그렇게 고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_E

〈표 5-7〉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

| 개선방안               | 실행방안  |
|--------------------|---|
| 유연성과 보상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성실 변제 후 공공정보 삭제(2025년 도입)</li> <li>• 성실상환자, 위기 상황(재난, 실직, 질병 등) 시 상환유예제도 도입</li> <li>• 중증질환 등의 청년 대상 특별면책제도 적용 확대</li> <li>• 실무준칙 403호 금지명령의 적극 활용, 회생 신청과 동시에 압류 및 추심 중지 적용</li> </ul> |
| 일관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법원 간 실무준칙의 차이 확인 및 통일성 확보방안 마련</li> </ul>  |
| 절차의 편의성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기간 단축: 회생위원 증원, 패스트트랙제도(신속인가 결정) 도입</li> <li>•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간소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소득증명, 재산증명 서류 등</li> </ul>  |
| 경제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대상 추가</li> <li>• 변제기간 저금리 대출 도입 검토</li> </ul>  |
| 변제기간 단축<br>결격사유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발생원인: 주식과 코인 제외</li> <li>• 채무총액 상향 조정</li> <li>• 채무총액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채무규모에 따라 변제기간 설정</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나. 개인 워크아웃 개선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청년의 재기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겠다. 협약 제6장 28조부터 36조까지는 개인채무조정의 특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29조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례조항이다(신용회복위원회, n.d.). 2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0세 이상자,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입대 예정인 자를 금융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n.d.).

특례조항에 따르면 청년은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등 2개 집단이 있다. 대학생은 재학 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상환유예가 적용되고 유예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로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유예 이자를 면제받는다. 또한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청년, 군복무자는 무담보채권은 원금 최대 30% 범위 내, 담보 채권은 원금 최대 70% 범위 안에서 채무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용회복위원회, n.d.).

무담보채권의 감면 비율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90%이고 70세 이상은 80%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개인 워크아웃할 때 기초수급자들이 사회 취약 학생이잖아 원금의 90%까지 감면을 해 주거든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면을 좀 많이 해 주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_F

#### 다. 전반적 채무조정제도 개선안

반드시 개인회생제도가나 워크아웃처럼 개별제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채무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변제 중, 변제 후, 그리고 제도 적용 전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의 핵심 성과는 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제 중에 청년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위기를 추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 대출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변제 중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상담을 받고 이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도 고려

할 수 있겠다. 또한 변제 중 반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정밀하게 잘 분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저희가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정 신청할 때 약간 포괄적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납입 변제기간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뭔가를 안내할 수 있는, 채무자를 이해해서 뭔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데이터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나서 변제하는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신용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현재 납입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선제적으로 뭔가 시그널 주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와서 답을 받거나 저희가 적절한 제도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없는 거거든요.” C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상황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에게는 제도 안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도 개시 시점에 채무감면을 확정하지 않고 성실 상황을 하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처음부터 뭐 원금을 많이 탕감해 주는 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단계를 뒤서 이 사람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상환을 하면 감면율을 더 낮춰주고 연동 감면을 더 파격적으로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이용하더라도 상환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이탈하지 않게 계속 상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

또한 상환유예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기간 중심이 아니라 이행 중심을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용회복협약 특례에 따라 대학생,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기간을 중심으로 한 설계이다. 매달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년은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방식처럼 취업 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청년의 입장이라면은 빨리 그걸 갚기까지 경제 활동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1년 6개월 상환을 했으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이제 빨리 모든 걸 다 삭제를 해주고 다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학자금처럼. 아예 그걸 통으로 떼가지고 아예 뒤로 미루는 식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될 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J

둘째,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특히 창업, 결혼 등 생애 중요한 이행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다시 불건전한 대출을 이용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공정보처럼 성실상환 1년 경과 후 바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렵다면 변제 후 일정 기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후 변제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청년 사업자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열심히 다 갚고 공공정보까지 다 삭제가 됐는데도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하는데 당연히 민간 은행은 기대를 안 했는데 공공 쪽에서도 그분이 회생을 하면서 피해를 봤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채권자로 된 기관에서 그걸 아예 공공정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시 재지원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정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갖고 있었던 은행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죠.” \_J

또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어떤 제도에서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변제 종료 후 일정 기간에는 정기적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금융취약청년의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을 때야. 정말 어떻게든 안 갚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거고 인지가 되지만 끝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마지막에 어떤 상담이나 무슨 클로징 하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도 커요. 원래 추적조사나 그런 것도 하면서 그래야 다음에 뭐가 하는데 아예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지원이나, 어떤 컨설팅이나 상담이 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_D

셋째, 채무조정제도 전반을 둘러싸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다. 우선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연령이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기간 단축 적용을 받는 청년은 만 29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례 적용을 받는 청년은 연령이 아니라 군복무, 미취업, 대학생 등 상태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도 간 청년의 개념을 통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적용 연령도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회생 채무집정이 프로그램에서도 29세 이하가 아니라 최소한 청년 기본법 34세 이하로 5년 정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_A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대리인시장의 정확도 필요하다. 파산 절차를 악용해 수입료를 챙긴 법조인들이 법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가 계속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하여 대리인 시장을 정확할 필요가 있다. 혹은 법원에서 화이트 변호사와 법무사 목록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좋은 대리인을 만나야 해요. 법원에서 화이트 목록 화이트 변호사 화이트 법무사 목록 만들어서 공표하면..” \_E

〈표 5-8〉 전반적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 개선방안  | 실행방안  |
|-------|---|
| 변제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대출 등 행정데이터와 연동을 통해 위험예측 및 대응 기능</li> <li>변제 중 정기적 상담</li> <li>채무 감면 재설계: 개시 시점이 아니라 성실상환하면 단계적으로 감면을 조정</li> <li>기간 중심의 상환유예가 아닌 이행 중심의 상환유예 적용</li> </ul> |
| 변제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제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후관리 기능 추가</li> <li>신용보증재단 기록 삭제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대</li> <li>변제 완료자 대상 별도 대출상품 운용</li> </ul>  |
| 제도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제도의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과 통일</li> <li>대리인 시장 정확방안 마련</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3.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

#### 가. 통합 인프라 구축

금융취약청년의 통합적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통합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 진입 전 단계 재정비와 제도인프라 재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이 채무를 기한 안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조정제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우선 청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안내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회생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속한 제도를 중심으로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제도에 진입하기 전 단계를 마련하고 종합상담창구나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저는 무조건 앞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채무 문제가 발생한 앞단에서 잘 상담해 주고 애가 적절한 제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줘야.”\_B

“채무자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방문하지는 못하잖아요.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_C

“복합적인 게 좀 안타깝죠.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안내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_F

“제도 신청과 별개로 독립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걸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_H

통합적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사정(assessment)과 판단의 내용과 범위가 채무조정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사정할 필요가 있

다. 삶 전반을 사정하려면 채무조정과정에서 현재 활용하는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정보 외에 채무를 지게 된 원인, 정신건강, 청년이 가진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활용하는 위기도 조사표처럼 복합적인 영역에서 청년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구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보건복지부, 2025, p.190).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가 이분의 이직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일을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자리에 대한 소득 부분들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도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채의 원인이 가족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자산 현황이라든지 주거 상태라든지 저축 현황이라든지 부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 그 뒤에는 소비 습관이 어떠신지 이것도 확인하는 이유가 이분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수입 내에서 지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건강.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이분의 삶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_H

“디테일하게 청년의 상황을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 부채가 아니라. 지금 통합지원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고객에 대해 좀 더 알면 연계성이나 연결성에 대한 확률이 높습니다.” \_K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채무조정 업무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 기능은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해당 과업 수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채무조정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람하고 만나서 왜 조정을 해요.

대출도 이제 시스템이 하잖아요. 조정은 시스템이 하고 그 조정자한테 필요한 것들을 상담과정에서 찾아내는 거죠.” \_K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21종을 받아와서 그 사람 정보를 불러와서 분석한 다음에 알고리즘, 로직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고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가 필요한지 뭐 다른 정신건강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지를 로직으로 만들어놨어요.” \_J

둘째, 통합지원을 위해 제도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와 전산시스템 공유를 바탕으로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복지와의 연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연계는 행복이음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산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기본적으로 통합지원에 포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 간 전산시스템 공유 및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데이터를 관리할 주무 부처와 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 청년대상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전세자금대출이나 햇살론 유스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연체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은 통합전산망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 전세 보증금이나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 쪽에서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장 자산경영 정책에서의 성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행하는데 사실 그걸 또 만나는 거는 은행이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걸 관리만 할 뿐 공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_G

통합전산망을 구축과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을 위해 인프라를 재정비하

더라도 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합사정과 지원 안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재기지원이 단순한 안내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계와 통합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고용, 복지, 금융과 관련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도 필요하다. 결국 종사자는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가 아니라 복합설계사(Complex Planner) 역할을 해야 한다. 종사자의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확보도 안정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하는데 필요하다.

“단순히 연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청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한 명의 상담사가 금융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제도도 알아야 되고 복지 대한 문제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J

“계약직 직원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상담사가 이야기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상담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만만다고 생각해야 이것도 계속할 수 있는데 2년 3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지, 상담이나 기능 하나 연동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G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관련 제도와 사업의 성과도 수행 조직에서 제각각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 성과지표의 성격이 기관이나 제도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 따라서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완제율이나 이용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연계와 전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과목

표와 지표를 관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단순하게 금융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업무 비중을 90%가 연계고 나머지 10% 정도만 채무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달률을 높여서 고객이 연계가 됐을 때 최대한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 센터나 뭐 가장 나아갈 길이 아닌가” \_K

## 나. 통합지원

금융취약청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채무조정 범위를 넘어 청년 삶 전반의 회복을 목표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정신건강 지원과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청년 개인의 생활 및 소비 습관 개선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제도나 사업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지자체 청년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연동할 수 있겠다.

둘째,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그 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상을 지정하여 별도 지원하는 방식처럼 취약청년을 지정하여 임대주택 추천권을 일부 부여할 수도 있겠다. 또한 매년 회생법원에서 발표하는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에 명시된 추가 주거비 인정한도 적용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 1인가구의 한 달

주거비를 255,467원으로 적용하고,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를 513,887원으로 고시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2024, p.3). 그러나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으로 명시됨에 따라 현실적 수준의 주거비가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고, 결국 가용소득이 상승하여 청년이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간다. 따라서 추가주거비 인정으로 고시된 금액만큼 생계비로 일괄 반영하는 것도 금융취약청년의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고려할 수 있겠다.

“가장 큰 돈 들어가는 게 주거잖아요. 회생 파산 면책을 받거나 신복위 이용을 하면 임대주택 조건에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를 어려운 분들은 제공하면 좋겠어요. TO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선별적으로 해 줄 때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이나 인지 송달료 같은 거를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애 봐서 법원에서 이 사람 너무 딱하다 이러면은 임대주택 추천권을 법원에 줘가지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_E

셋째,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재기 지원의 핵심은 취업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컨설팅, 직업교육 및 훈련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고용지원사업을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가 많은데, 해당 제도에서는 신용회복지원자를 2유형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2유형에 속한 청년은 상담 3회 이상 진행 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초기상담수당을 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만 4천원(최대 6개월)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며 취업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받

는다. FGI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 연계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과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취약청년만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 과정에서 청년들의 진로 성숙도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년의 취업이나 교육 이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신건강 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지원사업으로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배움카드나. 근데 이분들이 채무 조정하려고 왔는데 연계를 해도 국취가 생각보다 허들이 높아요. 중간 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기간 교육받고 이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_K

마지막으로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채무를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 습관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들하고 데이터를 연동해서 20~30대에 대한 신용평가. 어디에서 많이 지출하고 지출 수준도 만들고, 소비 패턴이 어떤지 패턴도 보고” \_G

“개인회생 가서 하고 가치관이나 소비 습관이 아예 바뀌어야 제도가 의미가 있어요.” \_E

〈표 5-9〉 통합적 지원과 연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개선방안        | 실행방안   |
|-------------|--|
| 통합인프라<br>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진입 전 단계 재정비: 종합상담창구 마련 운영, 종합 사정, AI를 활용한 채무조정안 마련</li> <li>• 제도 인프라 재정비: 데이터 공유 및 제도간 연계성 강화, 통합데이터 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종사자 전문성과 고용안정성 확보, 성과 지표 개선</li> </ul>                         |
| 통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자체 청년수당 연계</li> <li>•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법원에 임대주택 추천권 부여, 채무자 추가생계비 인정에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 공통 적용</li> <li>•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계 사업설계 필요</li> <li>• 생활관리 교육</li> </ul> |

출처: 연구진 작성

## 제4절 소결

본 장은 정량분석에서 포착되지 않는 청년 채무조정의 제감효과와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민금융, 지자체 현장의 종사자 FGI를 통해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금융취약청년 대상 FGI는 연락두절, 이사, 통신제약, 심리적 부담, 시간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장 종사자 집단면접을 통해 제도 진입 전후의 한계와 제도간 연계 문제 등 현제도의 한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출발점은 ‘부채 이후’가 아니라 이미 ‘부채 이전 단계’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청년층은 사회 진입과 동시에 학자금대출, 생활비성 대출 등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지만, 이를 감당할 충분한 소득 기반이나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채의 악순환에 노출된다. 특히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부채가 취업 지연, 불안정 노동, 전세사기 피해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즉, 부채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되물림과 구조적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이며, 이

는 청년층의 신용취약,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제도 단계로 들어오면 개인회생은 변제요건의 경직성(채무가중, 1인가구 생계비 반영 미흡, 투자기원 채무 배제), 진입장벽과 심사 지연, 지역·재판부별 실무 편차, 불건전 대리인 시장 등으로 완제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협약·동의 구조 탓에 실질 감면 폭이 제한되고, 장기 상환이 청년의 재기를 지연시키며, 1년 경과 후 카드·대출 허용은 재부채 유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 제도 전반에서는 공공기록 삭제의 실효성 한계(CB 5년 기록 유지), 전·중·후 과정에서의 중립적 종합상담·모니터링·사후관리 부재, 낙인과 정보 비대칭이 접근을 왜곡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통합·연계 차원에서는 금융교육 컨트롤타워의 부재, 공급자(기관) 동기·역량·전산연계의 한계, 청년 측 이수·참여 역량 제약,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누적되어, ‘채무조정-재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목표를 ‘채무조정’이 아니라 삶 전반의 회복으로 재정의하는 사회투자형 전환이 필요하다. 성인진입·대출 전·변제 중의 세 시점을 축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년도약계좌·햇살론 유스 등 청년친화 상품을 유연하게 개선해 예방적 개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제도별 장점을 결합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회생의 큰 면책·단축, 워크아웃의 유예·생계비 인정, 통합지원센터의 행복이음·고용연계, 민간 모델의 접근성과 촘촘한 동행은 ‘표준 경로’로 엮어, 생애주기, 채무규모, 소득유형별 맞춤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회생은 성실상환 인센티브, 위기 시 상환유예·특별면책 확대, 신청 즉시 금지·압류해지 자동화, 서류 간소화·패스트트랙, 지역 간 실무준칙 통일로 ‘완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워크아웃은 취약청년 감면을 상향과 유예

의 이행연동 설계를 검토하고, 재부채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변제 중에는 위험예측·정기상담·단계형 감면을, 변제 후에는 사후관리·보증·완제자 특화대출을 마련해 재진입을 막아야 하며, 청년 연령 정의의 제도 간 통일과 대리인 시장의 공신력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인프라 측면에서, 중립적 원스톱 종합상담창구와 다차원 사정도구(재무·고용·주거·정신건강)를 제도 진입 앞단에 배치하고, 서민금융·복지·고용 전산의 양방향 데이터 연계와 EWS를 통해 위험신호를 선제 포착·개입하는 구조를 상설화해야 한다. 통합상담 인력의 전문성·고용안정과 함께 성과지표는 완제율 중심에서 연계율, 재연체율, 고용복귀, 심리회복 등 성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청년 채무 문제는 신용기술의 미세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전식별·법·제도 표준화·데이터 통합·통합지원으로 이어지는 사회투자형 체계를 구축할 때, 채무조정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견인하는 ‘재기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 제 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 복지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재정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사회투자적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은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부채 문제를 단순한 '채무 감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즉, 청년층의 재정적 회복이 곧 노동시장 복귀, 사회참여 확대, 정신건강 회복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제도를 사회적 투자정책의 실천 사례로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사회투자적 관점의 적용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청년 부채가 급증하고, 사회 초년생·비정규직 청년·자영업 청년 등을 중심으로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가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데이터(KoDATA), 청년 금융생활 실태조사, 전문가 인터뷰(FGI)를 결합한 혼합연구(Mixed Methods) 접근을 통해, 청년층의 신용행태 변화와 제도 이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다. 사회보장정책의 전통적 목적이 소득보전과 위험대응에 있었다면, 사회투자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축적하고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투자 정책은 ‘복지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과 포용을 위한 투자’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청년 부채 문제를 이 틀 속에서 재해석하였다.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교육비 채무, 금융지식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다중채무에 취약하며, 이러한 부채는 사회적 배제와 생애이행 지연을 초래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의 기능을 넘어, 청년층이 다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 촉진형 사회서비스’로 이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국민 신용평가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의 금융 및 신용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기준 분석에 사용된 신용정보 보유자는 총 3,639만여 명으로,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약 86% 수준에 해당한다. 즉,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국민의 신용활동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집단 기반 분석자료임을 의미한다. 2000~2024년 사이에 청년층의 대출 보유 비중은 약 55~57% 수준으로 청년의 절반 이상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30대부터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20대는 학자금대출(39.0%)과 신용대출(37.2%)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학업 및 사회진입 초기 단계에서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성 대출 의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신용대출 보유 비율이 50.2%로 절반에 달하며,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21.3%)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30대 이후에는 신용 기반의 소비성 대출에서 주거 및 자산형성 중심의 장기대출 구조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민금융상품 이용률은 낮아, 청년 대출자 중 ‘햇살론 Youth’를 이용하는 비율은 7.1%(20

대는 10.7%)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책금융의 실질적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청년층의 증가 폭이 0.4%p로 가장 높았다. 채무불이행 등록 비율 역시 0.2%에서 0.4%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체 해제율은 2020년 약 18~20% 수준에서 2024년 45~50% 수준으로 상승하여, 제도적 개입을 통한 상환 유도 및 신용회복지원의 확산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금융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고위험 청년층이 존재한다. 특히 20대(19~29세)의 약 5분의 1이 864~900점 구간(5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위 신용 구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와 청년 전체(19~34세) 역시 901~927점 구간(4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아 21.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5등급이 21.4%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전반적으로 중위권(4~5등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신용층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인 구조를 보인다.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의 금융취약성의 동태적 변화 분석 결과, 제도 가입 직후에는 신용평점의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약 4년 경과 시점부터 점진적인 신용평점 회복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사회투자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청년 400명, 중년 200명, 장년 165명), 금융취약청년으로 정의한 제도 미이용자(243명)로 총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적 효과 측면에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자에 비해 고용 상태 개선, 근로시간 증가, 소득회복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효과에서는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의식, 가족관계 회복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심리적 효과 측면에서는 채무조정 이후 스트레스 수준이 완화되고 자립의지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단순한 부채조정 기능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활동 초기의 청년층에게 있어 채무조정은 단순한 재정적 구제가 아니라,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었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30~40대의 개인회생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경제활동 중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계층의 법적 회생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채무 중심이었고, 개인회생은 중·대규모 채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파산면책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집중되어 있었으며, 장기 상환불능 상태의 고령층이 법적 면책을 통해 채무를 종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부채의 성격이 '소액생활비성 → 주거·사업성 → 구조적 불이행성'으로 전환되는 세대별 부채이행 구조를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제도의 운영상 한계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지자체, 상담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전문가인터뷰(FGI) 결과, 채무조정제도는 실질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제약, 복잡한 절차, 사회적 낙인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채무를 숨기려는 경향과 행정적 절차 부담으로 인해 제도 진입이 늦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제도 이용 후에도 취업지원, 심리상담, 금융교육 등 후속지원이 미비하여, 실질

적인 사회복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고용-심리회복-금융교육”이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지원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채무조정 이후 청년층의 재기활동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채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직도 채무조정제도를 ‘도덕적 해이’나 ‘면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이 정책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감면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상담·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부채 구조와 신용위험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재정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청년의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재통합, 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의 실천모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층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률은 여전히 높지만, 제도 이용자의 연체해제율과 신용회복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정책효과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제도 유형별 특성과 연령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년 중심의 통합적 채무관리·재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제5장에서 이미 제도의 한계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 바 있으나, 중점적으로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년층의 금융취약성은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심리·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금융취약청년 다수는 신용점수 788점 이하(8~10등급), 90일 이상 연체 경험, 대출 대비 연체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상당수가 복합취약계층의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립청년과 같은 관리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취약청년을 조기 식별 및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금융취약성 지표(예: 신용점수 하락폭, 연체일수, 연체금액비율,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지자체 청년복지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청년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사후적 구조를 넘어,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개입형 복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의 금융위험은 생애주기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20대 초반은 학자금·생활비 중심의 단기채무에 대응하는 경량형 채무조정(Early Debt Intervention), 20대 후반~30대 초반은 사회진입 및 주거대출 혼재형으로 근로소득연계 상환제도(Income-Contingent Repayment)

병행, 30대 이후는 구조적 부채 중심으로 법원 회생제도와 자영업 재기지원 연계형 지원모델 구축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통합지원센터(예: 동행센터, 청년드림은행)의 성과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청년 금융취약자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본 연구의 5장에서 종사자 FGI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제도 접근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인력부족으로 개인회생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청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사설 법률대리인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입료를 부담하거나, 불법 중개·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이고 통합된 법률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별도의 청년 개인회생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서류작성·법원 접수·사후 신용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수입료가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간 협약을 통한 표준수임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저소득청년 수입료 지원제도(Debt Relief Legal Ai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비공식적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국가가 보증하는 합법적 경로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3. 지방법원 간 통일된 실무준칙(Standard Guideline) 마련

현재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실무는 법률상 동일하더라도, 지방법원별로 처리기준·절차·심사속도·인가율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법원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청년 신청자가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있으며, 서류요건·심사기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같은 조건의 채무자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주도로 전국 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준수할 수 있는 ‘청년 개인회생 표준실무준칙(Standard Operating Guideline)’을 제정해야 한다.

표준준칙에는 ① 청년채무자의 서류 간소화, ② 사건 접수 및 심사기간의 상한 설정(예: 3개월 이내), ③ 사회복지 연계 고려, ④ 신용회복 지원기관과의 자동 연동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 내 청년 전담 심리관 또는 회생보좌관을 배치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의 통일은 청년층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복지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다.

### 4.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가 각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연계와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각 기관의 데이터 구조와 지표체계가 상이해, 동일인이 중복 지원을 받거나 제도 이용 후의 신용회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채무조정 통합데이터 플랫폼

(Youth Debt Data Hub)”을 구축하여, 개인 단위로 채무조정 이력·신용점수·고용·소득·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연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통계 관리가 아니라, 정책효과 분석과 제도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DB를 기반으로 성과평가 체계(performance evaluation system)를 정립해야 한다. 기존의 단순 지원건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제도 이용 후 신용점수 개선율, 재연체율 감소율, 고용복귀율, 심리적 회복 지표(예: 삶의 만족도, 자립의식) 등 사회적투자 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채무감면 수단이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회복·사회적 자립·정신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연명, 김교성, 김영순, 마이클 쉐라든, 박순우, 백선희, 성은미, 양재진, 우명숙, 윤희식, 이주희, 최영, 한창근, 피터 테일러-구비. (2009). 사회투자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 관계부처 합동. (2025).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2025.04). <https://www.youthcenter.go.kr/bbs02View/50/10270?srchParam=&curPageNum=1&srchParamEtc1=&srchParamEtc2=&srchParamEtc3=&srchParamEtc4=>에서 2025.8.10. 인출.
- 광주청년드림은행. (2024). 우리에게 남은 빛.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은행.
- 구철희, 손병덕, 문덕영. (2019). 청년층 사회보장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곽윤경, 하은솔, 오욱찬, 신영규. (202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융위원회. (2020.12.08.).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5101>
- 김성아, 김문길, 나원희, 한영섭, 강예은. (202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태완, 한수진. (202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수시) 2023-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백아름, 권하늬, 박정민. (2022). 채무조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53(2), 5-36.
- 노혜진. (2025). 금융취약청년의 채무 경험과 채무조정 과정: 개인회생제도 이용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41(2), 113-144.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

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백아름, 노혜진, 박정민. (2022). 청년 과중채무의 본질과 채무조정 경험: 갈망, 불안  
정성, 그리고 희망. 사회복지연구, 53(3), 139-181.

보건복지부. (2025). 2025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7.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30&mid=a10503000000#](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30&mid=a10503000000#)

서울회생법원. (2024.12.27.).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인정기준 발표**  
[보도자료].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137&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2](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137&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2)에서 2025.10.23. 인출.

서울회생법원. (2025a).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2025b). 2024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회생  
법원.

서울시복지재단. (2025.4.14.). **서울시, 대출사기·불법 사금융 피해청년 재기 돕  
는다 ... 심리상담도 지원** [보도자료].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6.do?&schFld=1&schStr=%EB%8C%80%EC%B6%9C&schM=view&page=1&viewCount=10&id=26281&schBdcode=&schGroupCode=>

신규수. (2019). 소득·자산 기준 빈곤 지위별 부채 보유특성. 사회복지정책,  
46(2), 289-309.

신진욱, 박정민, 최승주, 홍석철. (2020).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자아존중감, 우  
울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종단분석. 사회보장연  
구, 36(4), 109-130.

오윤섭, 강지원, 이규환. (2017).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7-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16-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병주. (2013). 청년 실업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4), 197-224.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혜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2025-07.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정. (2015).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의 사각지대 문제 및 대응체제. *사회복지경영연구*, 2(1), 1-28.
- 탁장한, 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 상황. 서울: 한국은행.
- Betti, G., Dourmashkin, N., Rossi, M., & Ping Yin, Y. (2007). Consumer over-indebtedness in the EU: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4(2), 136-156.  
<https://doi.org/10.1108/01443580710745371>
- d'Alessio, G., & Iezzi, S.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Bank of Italy Occasional Papers No. 149.
- Disney, R., Bridges, S., & Gathergood, J.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Report to the UK Department for Business.
- Dobbie, W., & Song, J. (2020). Targeted debt relief and the origins of financial distress: Experimental evidence from distressed credit card borrow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4), 984-1018.  
<https://doi.org/10.1257/aer.20171541>
- Dobbie, W., Goldsmith-Pinkham, P., & Yang, C. S. (2017). CONSUMER

BANKRUPTCY AND FINANCIAL HEALT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5), 853-869.

[https://doi.org/10.1162/REST\\_a\\_00669](https://doi.org/10.1162/REST_a_00669)

European Union (2020). Addressing Household Over-Indebtednes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Gross, D. B., & Souleles, N. S. (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5(1), 319-347. <https://doi.org/10.1093/rfs/15.1.319>

Jordà, Ò. (2005). Estimation and Inference of Impulse Responses by Local Proj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5(1), 161-182. <https://doi.org/10.1257/0002828053828518>

<데이터셋>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셋].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통계청. (2025). 「장래인구추계」. 2072,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 A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 A001&conn_path=I2)에서 2025.7.13. 인출.

통계청. (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11,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 에서 2025.10.10. 인출.

<웹사이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n.d). 자체사업 검색.

<http://gjymh.co.kr/intro/intro04.asp?scrID=0000000161&page Num=1&subNum=4&ssubNum=1>에서 2025.10.02. 인출.

금융감독원. (n.d.). 금융감독원 대표 금융교육프로그램.

<https://www.fss.or.kr/edu/main/contents.do?menuNo=300065>에서 2025.10.02. 인출.

금융위원회. (n.d.). 주요정책문답-햇살론카드 출시 주요 Q&A.

<https://www.fsc.go.kr/po020201/7674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에서 2025.09.03. 인출

서민금융진흥원. (n.d.-a). 센터소개. 검색.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centerIntroduction.do>에서 2025.10.02. 인출,

서민금융진흥원. (n.d.-b). 햇살론유스.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Yoos.do>에서 2025.08.10. 인출.

서민금융진흥원. (n.d.-c). 햇살론카드.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Card.do>에서 2025.09.03. 인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n.d.). 청년동행센터 센터소개.

<https://sfwc.welfare.seoul.kr/web/contents/introYouth.do>에서 2025.08.10. 인출.

서울회생법원. (n.d.-a).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에서 2025.10.02. 인출.

서울회생법원. (n.d.-b). 개인회생 절차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a). 신용회복지원협약.

<https://www.ccrs.or.kr/debt/system/recovery/info.do#list06>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b). 개인채무조정 절차.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c).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절차.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20&CO  
NTENTS\\_NO=1](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20&CONTENTS_NO=1)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d). 채무조정제도 비교.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e).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별 특례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f). 개인회생·파산제도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50](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50)에서  
2025.10.02.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n.d.-g).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https://www.ccrs.or.kr/debt/relief/advant/info.do>에서 2025.10.02.  
인출.

한국신용평가데이터. (n.d.). KODATA 홍보관.

<http://www.kodata.co.kr/cr/CRPRS03R0.do>에서 2025.08.05. 인출.



## [부록 1]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사전 Screener / 표본 추출을 위한 문항)

※ 이 문항을 통해 처치집단(채무조정 이용자)과  
비교집단(미이용 금융취약청년)을 선정함

SQ01.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SQ01\_2. 귀하의 연령을 선택해주세요

- 1) 만 18세 이하 ---> 설문종료
- 2) 만 19~34세 ☞ 설문 계속
- 3) 만 35~49세 ☞ 설문 계속
- 4) 만 50-59세 ☞ 설문 계속
- 5) 만 60세 이상 ---> 설문종료

SQ02.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경기도 3) 인천 4) 지방 광역시/세종특별시 5) 그 외 지역

SQ03.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남성
- 2) 여성

SQ04. 귀 닻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등록 기재 기준)

\_\_\_\_\_명

**SQ05. 귀하는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 시점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원금 일부를 줄여주어 과대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 법원의 개인파산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남은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자를 인하·상환기간 연장해주고, 연체이자 및 원금 등을 감면

(※ '진행 중' = 약정 체결 또는 법원 개시/신고 이후로 현재 변제 수행·심리·인가/면책 대기 등으로 절차가 계속되는 상태. 각하/기각/취하 등은 '진행 중' 아님)

- 1) (최근 1년 반 이내) 2024-03-01~2025-08-31 사이에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 [A, B 완료 후 D로 이동]
- 2) (최근 1년 반 이내) 2024-03-01~2025-08-31 사이에 신청했고, 현재 종료 (완제·면책 확정·변제완료·합의해지 등)되었다.  
→ [A, B 완료 후 D로 이동]
- 3) (1년 반 이전) 2024-02-29 이전에 신청했다.  
→ [설문 종료] (타깃 기간 외 진행자)
- 4) 이용한 경험이 없다.  
→ [만 19~34세의 경우, <금융취약청년 스크린문항 SQ2-SQ7 응답, A 완료 후 C로 이동]  
→ [만 19~34세 이외의 경우, 설문종료]

**SQ06.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셨습니까?**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설문종료
-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A 완료 후 BA 문항으로 이동]
-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A 완료 후 BA 문항으로 이동]
- 4) 법원 개인회생 [□A 완료 후 BB 문항으로 이동]
- 5) 법원 개인파산 [□A 완료 후 BC 문항으로 이동]
- 6) 기타( ) ---> 설문종료

[19-34세 & 미이용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금융취약 청년” 사전 Screener SQ7-13 응답 후⇒A 응답 후⇒C로 이동]

**SQ07. 귀하는 현재(2025년 8월 말까지) 금융기관(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직장, 장학재단, 개인 등에 상환해야 할 대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 1) 대출 잔액이 있다.
- 2) 대출 잔액이 없다. ---> 설문종료

SQ08. 귀하는 현재(2025년 8월 말 기준) 총 몇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계신 경우에도, 각 금융회사·기관별 대출을  
 각각 1건씩 계산해 주십시오. (예: 은행 2건 + 카드사 1건 = 총 3건)

- 1) 1건 ---> 설문종료
- 2) 2건
- 3) 3~4건
- 4) 5건 이상

SQ09.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25년 9월 초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금융기관(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 포함), 직장, 장학재단, 개인 등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연체 경험이 있다
- 2) 연체 경험이 없다 ---> 설문종료

SQ10. [SQ09=1,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가장 길었던 연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1) 4일 이내 ---> 설문종료
- 2) 5~29일 ---> 설문종료
- 3) 30~59일
- 4) 60~89일
- 5) 90일 이상
- 6) 기억나지 않음. ---> 설문종료

SQ11.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2023년 9월 초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실물자산 담보대출(주택·자동차·예·적금·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신용대출이나 정책·보증부 대출(학자금대출, 햇살론 등)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 1) 신용대출이나 정책·보증부 대출이 있었다.
- 2) 담보대출만 있었다. ---> 설문종료

SQ12. 현재(2025년 8월 말) 귀하가 보유한 부채의 원리금 합계는 얼마입니까?

부채는 정책·보증부 대출(학자금대출, 햇살론 등), 신용대출, 실물자산 담보대출(주택·자동차·예·적금·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접 입력 (                    )만원 ---> 없거나 499만원 이하라고 응답할 경우 설문 종료

SQ13. 귀하 본인의 3개월 평균 세후 월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월급, 보너스, 임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 1) 100만원 이하 (소득없음 포함)
- 2)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3)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4)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만 19~34세 일 경우, 설문종료
- 5)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설문종료
- 6) 600만원 초과 ---> 설문종료

**A. (공통설문) 대출 및 연체**

**A01. 귀하는 현재 다음의 대출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1) 신용대출
  - 2) 정책·보증부 대출
  - 3) 담보대출
  - 4) 해당 없음
- 신용대출 보유 → A2-a 진행
  - 정책·보증부 대출 보유 → A2-b 진행
  - 담보대출 보유 → A2-c 진행
  - 세 가지 모두 무응답(4번만 체크) → 설문 종료
  - 담보대출만 체크 → 설문 종료

**A02. 현재(2025년 8월 기준) 귀하가 보유한 대출의 종류별 잔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 A02\_1. 신용대출: 사금융 신용대출, 대부업 신용대출, 신용카드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 저축은행 신용대출, 은행/상호금융 신용대출 등
- A02\_2. 정책·보증부 대출: 장학재단 보증서 대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기타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등) 등
- A02\_3. 담보대출: 주택담보, 자동차 담보, 동산(예적금/보험/증권 등) 담보대출, 상가/토지 등 기타 담포 등)

| 대출종류               | 잔액(현재 기준)                             |
|--------------------|---------------------------------------|
| A02_1. 신용대출        | 잔액: _____ (만원)<br><b>(있을 경우 A2-d)</b> |
| A02_2. 정책·보증부 대출   | 잔액: _____ (만원)                        |
| A02_3. 담보대출        | 잔액: _____ (만원)                        |
| <b>총계(자동합계 로직)</b> | 잔액: _____ (만원)                        |

A02\_1. 현재(2025년 8월 기준) 귀하가 보유한 대출의 세부 종류별 보유현황은 어떠한가요?

| 대출종류                | 대출별 보유 현황(모두 선택)                                   |  |
|---------------------|--|--|
| A02_1. 신용대출         | <input type="checkbox"/> 사금융 신용대출                  |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신용대출          |
|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br>단기대출(현금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br>장기대출(카드론) |
|                     |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신용대출                 | <input type="checkbox"/> 은행/상호금융 신용대출      |
| A02_2. 정책·보증부<br>대출 | <input type="checkbox"/> 장학재단 보증서 대출 (있을 경우 A04)   |  |
|                     | <input type="checkbox"/>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있을 경우 A05)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기관 (신보/기보/지역신보 등)    |  |
| A02_3. 담보대출         | <input type="checkbox"/> 주택 담보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담보            |
|                     | <input type="checkbox"/> 동산(예적금/보험/증권등) 담보대출       |  |
|                     | <input type="checkbox"/> 상가/토지 등 기타 담보             |  |

[ A01 보유 기준에 따라 항목 나오도록 설정]

A03.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신용대출 가운데 적용된 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연 이자율, %)

- 1) 4% 이하
- 2) 4% 초과 ~ 7% 이하
- 3) 7% 초과 ~ 11% 이하
- 4) 11% 초과 ~ 15% 이하
- 5) 15% 초과 ~ 20% 이하
- 6) 20% 초과

A04. 학자금 대출 발급 당시의 대출원금과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              |      |
|--------------|------|
| 1) 학자금대출 원금  | (만원) |
| 2) 학자금 대출 잔액 | (만원) |

A05.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 발급 당시의 원금과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                    |      |
|--------------------|------|
| 1)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원금 | (만원) |
| 2)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잔액 | (만원) |

**A06.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4년 8월 말 기준) 귀하가 보유한 대출의 종류별 잔액과 전체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                                 |      |
|---------------------------------|------|
| 신용대출(사금융, 대부업,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잔액 | (만원) |
| 정책·보증부 대출(장학재단 보증서, 햇살론 등) 잔액   | (만원) |
| 담보대출(주택, 자동차, 동산, 상가/토지 등) 잔액   | (만원) |
| 총 잔액                            | (만원) |

**A07. 귀하가 가장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대출의 용도는 무엇 때문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1) 생활비·의료비 등 일상적 가계 지출
- 2) 주거 관련 비용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월세 등)
- 3) 교육·보육비 (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 포함)
- 4) 결혼·가족행사·가족 지원
- 5) 창업 및 사업 자금
- 6) 금융투자를 위한 지출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
- ☛ 여기 응답자만 A07\_1, A07\_2, A07\_3
- 7) 기존 채무 상환 (채무 돌려막기)
- 8) 기타 (직접 기입: \_\_\_\_\_)

**A07\_1. 대출을 받아 금융투자를 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1)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해서
- 2) 과거 투자에서 수익 경험이 있어서
- 3) 주변 권유/분위기(가족, 친구, 커뮤니티 등) 때문에
- 4) 다른 소득원으로는 충분한 수익이 어려워서
- 5) 손실을 만회하거나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 6) 투자에 자신이 있어서(자기과신)
- 7) 이미 커진 집값·자산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 8) 기타(직접 기입: \_\_\_\_\_)

**A07\_2. 당시 투자 대상은 무엇이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국내주식     해외주식     코인/가상자산     파생/레버리지/선물·옵션  
 펀드/ETF     도박/베팅류     기타(\_\_\_\_\_)

**A07\_3. 대출로 투입한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였으며, 전체 투자금 중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1) 대출투자 금액: (        )만원
- 2) 그때 총 투자금 중 대출 비중: (    )%

**A08. 지난 1년 동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것이 있다면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1) 일상생활 필수소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 2) 건강관리 (병원진료, 운동, 건강식 등)
- 3) 인간관계·사회활동 (모임, 경조사, 친교 등)
- 4) 문화·여가활동 (영화, 외식, 여행, 취미 등)
- 5) 자기계발·교육 (자격증, 공부 등)
- 6) 생애주기 계획 (결혼, 출산, 자녀계획, 내집 마련 등)
- 7) 가족 지원·효도 (부모님·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
- 8) 없음

**A09. 귀하가 보유한 대출에서 처음으로 연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1) 2023년 이전
- 2) 2023년
- 3) 2024년 상반기
- 4) 2024년 하반기
- 5) 2025년 이후

**A10. <연체 사유> 연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소득 감소 (실직, 이직, 사업 실패 등)
- 2) 지출 증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 3) 다른 부채 상환 부담
- 4) 투자 실패 (주식, 가상화폐 등)
- 5) 사기·사고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 6) 높은 이자율·보증채무 등 금융비용 증가
- 7) 질환·장애·간병 등으로 소득 창출 불가
- 8) 기타: \_\_\_\_\_

**A11. <연체 해결 방식> 연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까? (복수 응답 가능)**

- 1) 가족·지인의 금전적 도움
- 2) 추가 대출(카드론, 사금융 포함)
- 3) 급여·상여금 등 일시적 소득으로 상환
- 4) 물건이나 자산 처분
- 5) 생활비 등 지출 축소
- 6) 장기 분할상황을 요청해 해결
- 7) 연체를 해결하지 못함  (A13으로 이동)
- 8) 기타: \_\_\_\_\_

**A12. <현재 재정 상태> 연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 이후, 현재 귀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 1)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다
- 2) 연체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
- 3) 상환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담이 크다
- 4)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13. (A11=7 응답자의 경우) 연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귀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 1) 연체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 2)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 3) 일부 상환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담이 크다
- 4)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14. 귀하는 작년(2024년 8월) 이전, 즉 그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금융채무불이행(90일 이상 연체)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A14\_1로 이동)
- 2) 없다 (□ A15로 이동)

**A14\_1. 귀하께서 과거 금융채무불이행(90일 이상 연체)을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1년 ~ 2년 전
- 2) 2년 ~ 4년 전
- 3) 4년 ~ 7년 전
- 4) 7년 ~ 10년 전
- 5) 10년 이상 전

**A15. 귀하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90일 이상 연체)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A16. 귀하를 제외하고, 귀하의 가족 중에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를 이용한 경험자가 있습니까?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가족 기준)**

- 1) 현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다
- 2) 과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 3) 이용한 경험이 없다

## B. 채무조정 이용자 전용

## BA.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전용

## BA01. 신용회복위원회의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셨습니까?

- 1) 신속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지원)  
 SQ=1, 설문종료이어야 하는데, 설문계속되고 있으므로 오류
- 2) 사전채무조정(연체 전·단기 연체자 대상, 상환유예·이자율 조정으로 연체 예방)
- 3) 개인워크아웃(장기연체자 대상, 원금 일부 감면·장기 분할상환)

## BA0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시기 \_\_\_\_년 \_\_\_\_월

## BA03. 제도신청 후 지원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 2주 미만
- 2) 2주 이상~4주 미만
- 3) 4주 이상~6주 미만
- 4) 6주 이상~8주 미만
- 5) 8주 이상~10주 미만
- 6) 10주 이상~12주 미만
- 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8) 6개월 이상
- 9) 아직 지원확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 BA04. 채무조정제도 이용하기 이전과 채무총액과 조정 이후의 감면된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구분                 | 금액         |
|--------------------|------------|
| 조정 전 총 채무액(원리금 합계) | _____ (만원) |
| 조정으로 감면된 금액        | _____ (만원) |
| 변제 기간              | ( )개월      |
| 월 변제금              | _____ (만원) |

## BA05. 귀하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환계획을 어떤 상태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연체 없이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다.
- 2) 일시적으로 연체한 적은 있으나, 현재 계속 상환 중이다.
- 3) 계획보다 일찍 상환을 마쳤다. (조기 완료)
- 4) 계획에 따라 상환을 모두 마쳤다. (정상 완료)
- 5) 상환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었다. (실패/탈락)
- 6) 기타 (직접 기재: \_\_\_\_\_)

**BA06. 귀하께서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법원 절차보다 신청이 간단하고 절차가 빠를 것 같아서
- 2)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이 적게 들어서
- 3) 법원 절차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이용하기 쉬워서
- 4)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 5) 주변 권유(가족, 지인, 상담사 등)
- 6) 법원 절차는 부담감·심리적 저항이 커서 피하고 싶어서
- 7) 개인회생·파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8) 기타 (\_\_\_\_\_)

**BA07. 귀하가 이용한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적절하지<br>않다 | 적절<br>하지 않다 | 보통<br>이다 | 적절한<br>편이다 | 매우 적절<br>하다 |
|--------------------------------|------------------|-------------|----------|------------|-------------|
| 1) 채무 원금 감면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자 감면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상환기간(분할상환 기간) 조정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월 상환금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전체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내 상황에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BA08. 제도 이용에 있어 어려웠던 점은? (복수응답)**

- 복잡한 절차     낙인감     정보 부족     상담 부족  
 상담 예약의 불편     접근성(거리, 시간)     기타

**BA09. 귀하는 이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법원 등의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음 (BA10으로 이동)
- 2) 없음 (BA09\_1로 이동)

**BA09\_1.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절차가 복잡해 보이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서  
 채무조정 제도 이용에 대한 낙인감·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상환부담이 여전해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사회적 불이익(신용·대출 제한 등)이 걱정돼서  
 비용(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본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직접 기재) : \_\_\_\_\_

**BA10.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1) 신청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 2)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 3) 감면 폭이 너무 적다
- 4) 상환 기간이 너무 길다
- 5) 상담 및 안내가 부족하다
- 6)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점검·피드백)이 미흡하다
- 7) 비용·수수료 부담이 크다
- 8) 디지털 접근성/신청 편의가 낮다.
- 9) 기타: \_\_\_\_\_

**BA11.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개 선택 — 우선순위 파악 목적)**

- 1) 감면 수준 확대
- 2) 상환 조건 다양화(유예기간 확대, 맞춤형 플랜 등)
- 3)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상담 강화
- 4) 절차 간소화·처리기간 단축
- 5) 사후 모니터링 및 지속 지원 강화
- 6) 비용·수수료 경감
- 7) 디지털·비대면 신청 고도화

**BB. 법원 개인회생 제도 전용**

**BB01.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한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시기 \_\_\_\_\_년 \_\_\_\_\_월

**BB02.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1) 4주 미만
- 2)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3)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6) 12개월 이상
- 7) 개시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BB03.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1) 1개월 미만
- 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4) 6개월 이상~1년 미만
- 5) 1년 이상
- 6) 인가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BB04. 개인회생제도 이용하기 전후의 채무규모와 변제계획을 입력해주세요.**

| 구분                              | 금액         |
|---------------------------------|------------|
| 개인회생제도 신청 당시, 총 채무액<br>(원리금 합계) | _____ (만원) |
| 개인회생으로 감면된 금액                   | _____ (만원) |
| 변제 기간                           | ( )개월      |
| 월 변제금                           | _____ (만원) |

**BB05. 귀하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법원 변제계획)를 어떤 상태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연체 없이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 2) 변제 도중 일시적으로 연체한 적은 있으나, 현재 계속 상환 중이다.
- 3)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 4)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했으나, 면책 결정은 아직 받지 않았다.
- 5) 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종료되었다.
- 6) 기타 (직접 기재: \_\_\_\_\_)

**BB06. 귀하께서는 여러 채무조정 방법(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파산 등) 가운데 개인회생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 채무 감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 2) 개인파산보다는 일부라도 상환 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 3)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 4) 다른 제도(신복위·파산)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 5) 법원 개인파산 절차는 부담감·심리적 저항이 커서 피하고 싶어서
- 6) 상담·주변 권유(가족, 지인, 법률전문가 등)
- 7) 기타 (\_\_\_\_\_)

**BB07. 귀하가 이용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확정된 변제계획(조정안)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적절하지<br>않다 | 적절<br>하지 않다 | 보통<br>이다 | 적절한<br>편이다 | 매우 적절<br>하다 |
|------------------------------------|------------------|-------------|----------|------------|-------------|
| 1) 채무 원금 감면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자 감면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상환기간(3~5년 분할상환)이 적절<br>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월 변제금 수준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전체적으로 개인회생 조정안이 내<br>상황에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BB08. 귀하는 이번 법원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다른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음 (--> BB09로 이동)
- 2) 없음 (--> BB08\_1로 이동)

**BB08\_1.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절차가 복잡해 보이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서
- 채무조정 제도 이용에 대한 낙인감·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상황부담이 여전해서)
-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 사회적 불이익(신용·대출 제한 등)이 걱정돼서
- 비용(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 본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기타(직접 기재) : \_\_\_\_\_

**BB09. 개인회생 절차 이용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복잡한 법원 절차
- 준비서류·정보 부족
- 상담·법률 지원 부족
-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부담
- 절차 지연(심사·인가까지 시간 소요)
- 낙인감·심리적 부담
- 기타: \_\_\_\_\_

**BB10. 개인회생 절차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1) 신청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 2) 서류·절차가 복잡하거나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 3) 감면 폭이 충분하지 않다
- 4) 상환기간(3~5년)이 지나치게 길다
- 5) 법원·회생위원·관재인의 상담·안내가 부족하다
- 6) 사후관리(변제 이행 점검, 상담) 제도가 미흡하다
- 7) 신청 비용·수수료 부담이 크다
- 8) 디지털 신청·비대면 절차가 불편하다
- 9) 기타: \_\_\_\_\_

**BB11. 개인회생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최대 2개 선택 가능)**

- 1)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보정 명령·서류 제출 간소화, 인가까지 기간 단축)
- 2) 신청 비용 경감(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 3) 변제기간 단축 및 조건 다양화(3~5년 변제기간 축소, 맞춤형 상환계획 도입)
- 4) 채무 감면 폭 확대(특히 이자·연체이자 조정 강화)
- 5) 상환계획 조정의 유연성 강화(실직·질병 등 상황 변화 시 조정 절차 신속 처리)
- 6) 정보 제공·상담 지원 확대(법률·채무 상담 강화,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제공)

- 7) 사후 관리 및 신용회복 지원(변제 중 신용거래 제한 완화, 변제 종료 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 8) 기타 (\_\_\_\_\_)

BC. 법원 개인파산 이용자 전용

**BC01.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신청시기 \_\_\_\_\_년 \_\_\_\_\_월

**BC02. 개인파산 신청 후 개시 결정(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4주 미만
- 2)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3)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6) 12개월 이상
- 7) 개시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BC03.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채무 면책 여부 최종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1년 미만
- 4) 1년 이상~2년 미만
- 5) 2년 이상
- 6) 면책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BC04. 개인파산 이용 전후의 채무규모와 면책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구분                           | 금액         |
|------------------------------|------------|
| 개인파산 신청 당시, 총 채무액(원리금 합계)    | _____ (만원) |
| 개인파산으로 면책(탕감)된 금액            | _____ (만원) |
| 이용 후 남은 채무액(있다면 기입, 없으면 "0") | _____ (만원) |

**BC05 귀하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 1)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 2)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가 면제되었다.
- 3)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있다.
- 4)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 결정은 아직 받지 못했다.
- 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 결정이 불허되었다.
- 6)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었다.
- 7) 기타 (직접 기재: \_\_\_\_\_)

**BC06. 귀하께서는 여러 채무조정 방법(신복위, 개인회생 등) 중 개인파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 2) 개인회생 요건(소득, 상환 가능성 등)에 맞지 않아서
- 3) 가장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서
- 4) 채권자 추심·압류를 즉시 중단하기 위해서
- 5) 주변 권유(가족, 지인, 상담사·법률전문가 등)
- 6) 기타 ( )

**BC07. 귀하가 이용한 개인파산 절차와 결과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br>적절하지<br>않다 | 적절<br>하지 않다 | 보통<br>이다 | 적절한<br>편이다 | 매우 적절<br>하다 |
|---------------------------------------|------------------|-------------|----------|------------|-------------|
| 1) 파산 신청 요건과 기준은 합리적이<br>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절차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은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면책 후 남은 채무 부담이 없어져<br>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전체적으로 개인파산 제도가 내 상<br>황에 적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BC08. 개인파산 절차 이용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복잡한 법원 절차와 서류 준비
-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부담
- 절차 지연(면책까지 긴 시간 소요)
- 정보 부족·상담 부족
- 낙인감·심리적 부담
- 생활 유지(소득·재산 사용 제한 등) 어려움
- 기타 ( )

**BC09. 귀하는 이번 개인파산 신청 이전에, 다른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이나 신용회  
복위원회)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음 (->BC10으로 이동)
- 2) 없음 (->BC09\_1로 이동)

**BC09\_1.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절차가 복잡해 보이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서
- 채무조정 제도 이용에 대한 낙인감·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상환부담이 여전히)
-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 사회적 불이익(신용·대출 제한 등)이 걱정돼서

- 비용(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 본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기타(직접 기재) : \_\_\_\_\_

**BC10. 개인파산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  
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최대 2개 선택 가능)**

- 1)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면책 결정까지 기간 단축)
- 2) 신청 비용 경감 (인지대·송달료·법률 지원 확대)
- 3) 요건 완화 (자격·재산 기준 등)
- 4) 법원·관재인의 안내 및 상담 강화
- 5) 사후 지원 확대 (신용회복 프로그램, 사회적 재기 지원 등)
- 6) 낙인감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처리, 상담 프로그램 등)
- 7) 디지털·비대면 신청 절차 도입 강화
- 8) 기타 (\_\_\_\_\_)

**B. 공통질문 다시 (BA, BB, BC 응답자 모두)**

**B01.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결과, 본인의 상환 가능성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황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행 중이다
- 2) 어느 정도 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 3) 큰 변화는 없다
- 4)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
- 5)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B02. 귀하께서는 채무조정 제도 이용 이후, 다음과 같은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신용관리 교육(신용점수 관리, 대출·카드 사용법, 연체 예방 등)
- 2) 채무·예산 관리 교육(가계부 작성, 지출 줄이기, 저축 습관 형성 등)
- 3) 전문가 상담 지원(법률 상담, 채무·신용 관련 맞춤형 상담)
- 4) 취업·소득지원 연계(재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 5) 심리·정서 상담 지원(부채로 인한 스트레스·우울감 해소)
- 6) 사후 모니터링·체크인(상환 중 어려움 발생 시 제도적 조정·피드백)
- 7) 기타 (\_\_\_\_\_)

**B03. 귀하께서 향후 3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주요 경제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당 되는 항목 모두 선택 가능)**

- 1) 채무 상환 완료
- 2) 자산 축적(저축·투자 등)
- 3) 신용 회복(신용점수·금융거래 정상화)
- 4) 창업·자영업 시작
- 5) 안정적인 직장·소득 확보 (추가 권장)
- 6) 기타 (\_\_\_\_\_)

**C. 채무조정 비이용자군 전용 문항 ☞ “청년만” 해당**

**C01. 채무조정 제도 인지 여부: 귀하는 채무조정 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 회생·개인파산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C01\_1 이동)
- 2) 이번에 처음 들었다

**C01\_1. 신청 경험 (C01=1 응답자만, 응답)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1) 신청한 적 있다 (심사 탈락·중도 포기 포함)
- 2) 신청하려 했으나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 알고는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C01\_2. 신청하지 않은 이유 (C01\_1=3 응답자만, 복수응답 가능)**

- 절차가 복잡해 보이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서
- 채무조정 제도 이용에 대한 낙인감·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상환부담이 여전해서)
-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 사회적 불이익(신용·대출 제한 등)이 걱정돼서
-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돌려막기, 가족 지원 등)
- 정상 상환 중이라 연체가 없어 필요 없었다
- 기타 (\_\_\_\_\_)

**C02. 귀하께서는 채무조정제도 이용하지 않고, 연체를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해결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방식을 1순위로 2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1) 가족이나 지인의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
- 2)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 했다 (카드론, 사금융 포함)
- 3) 일시적 소득(급여·상여금 등)으로 갚았다
- 4) 물건을 팔거나 자산을 처분했다
- 5) 생활비 등 소비를 줄여 상환했다
- 6) 채권자에게 장기 분할상환을 요청하여 해결했다
- 7) 연체를 해결하지 못함 **☞(C04으로 이동)**
- 8) 기타 (\_\_\_\_\_)

**C0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체를 해결하신 뒤, 현재 귀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 1)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다
- 2) 다시 연체가 반복되고 있다
- 3) 상황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담이 크다
- 4)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04. (C02=7 응답자의 경우) 연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귀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 1) 연체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 2)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 3) 일부 상황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담이 크다
- 4)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05. 신청 조건 충족 인식: 귀하는 현재 본인이 채무조정 제도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C06.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C07. 채무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강화 (홍보·안내 자료 확대 등)  
 채무 감면 수준 확대  
 상환 조건 다양화 (예: 유예기간, 맞춤형 상환 플랜 등)  
 낙인감 완화 대책 (비밀보장, 인식 개선 등)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신청 비용·수수료 경감  
 디지털·비대면 신청 편의 강화  
 기타 ( )

#### D. (공통설문) 자산/소득/지출

**D0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1) 미혼
- 2) 기혼(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 또는 동거
- 3) 별거 또는 이혼
- 4) 사별

**D02.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 4) 대학(4년제) 졸업
- 5) 대학원 이상

**D03. 귀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D04. 귀하의 가구에는 현재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없으면 0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 미취학 자녀(만 0~5세): \_\_\_ 명
- 학령기 자녀(초·중·고, 만 6~18세): \_\_\_ 명

**D05.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자가
- 2) 전세
- 3) 월세
- 4) 기숙사
- 5) 기타 ( )

**D06. 귀하의 현재 주된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정규직
- 2) 비정규직(계약직·기간제·시간제)
- 3) 임시·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 4) 자영업(고용원이 없음)
- 5) 자영업(고용원이 있음)
- 6) 학생
- 7) 가사·돌봄 전업
- 8) 무직 (구직 중 포함)
- 9) 기타

(\*1)~(6)응답자는 D06\_1로 이동/ 7~9)는 D06\_2로 이동/ 6)은 D07로 이동)

**D06\_1. 현 직업의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 1) 6개월 미만
-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 1년 이상~ 3년 미만
- 4) 3년 이상

**D06\_2.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구직 중이다
- 2)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
- 3) 육아·가사 등 가정 내 돌봄 활동 때문에
- 4) 학업·진학 준비 중이다
- 5) 일할 의사가 없다
- 6) 기타 ( )

**D07. 1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3개월간 세후 월평균 소득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월급, 보너스,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 구분   | 금액         |
|--|------------|
| 1년 전 월평균 소득(세후)<br>(2024년 6월~8월 기준, 3개월 평균)  | _____ (만원) |
| 현재 월평균 소득(세후)<br>(2025년 6월~8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 _____ (만원) |

**D08. 귀하께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고용조건이 개선이 있으셨습니까?**

- 1) 고용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 또는 신규취업하였다
- 2) 현 직장에서 승진하였다
- 3) 고용조건에 큰 변화가 없었다
- 4) 고용조건이 더 나쁜 직장으로 전직하였다
- 5) 실직하였다.
- 6) 기타 ( )

D09. 1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최근 월평균 지출을 입력해 주세요. (식료품/외식비, 주거비, 교육비/보육비, 교통 통신비, 문화사교비, 저축, 부채상환비 등)

| 구분  | 금액         |
|---|------------|
| 1년 전 월평균 지출<br>(2024년 6월~8월 기준, 3개월 평균)     | _____ (만원) |
| 현재 기준 월평균 지출<br>(2025년 6월~8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 _____ (만원) |

D10. 최근 귀하의 월 평균 지출액 중 다음의 각 항목에는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 0 이상 입력 가능)

| 구분                                    | 금액         |
|---------------------------------------|------------|
| 1) 식료품/외식비 (곡물, 육류, 채소, 음료, 외식비 등)    | _____ (만원) |
|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 _____ (만원) |
| 3) 교육비/보육료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 혹은 보습교육 등) | _____ (만원) |
| 4) 의료비                                | _____ (만원) |
| 5) 부채상환비 (원금, 이자금 등)                  | _____ (만원) |

D11.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1) 소비를 줄인다
- 2)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 3)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4)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 5) 소액대출을 이용한다
- 6)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로 일한다
- 7) 기타 ( )
- 8)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D12. 귀하께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 면접 준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일반적인 생활비는 제외하고 교육 및 훈련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만원

D13. 귀하의 총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 예·적금, 청약통장, 적립식 펀드, 개인연금, 보험 적립금 등 포함. 주식·가상화폐 투자 제외)

총 \_\_\_\_\_만원

D14. [총 저축액>0 이상 응답자] 귀하께서는 월 평균 얼마나 저축을 하십니까?

(※ 예·적금, 적립식 펀드, 연금·보험 적립금 등 포함)

월 평균 \_\_\_\_\_만원

D15. 귀 닥의 3개월 평균 세후 월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소득을 합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월급, 보너스,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

- 1) 100만원 이하 (소득없음 포함)
- 2)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3)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4)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5)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6) 7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7) 1,000만원 초과

→ SQ03 응답보다 작게 응답한 경우 오류, 본인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 계산하도록 안내

D16. 귀하께서는 귀 닥의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1) 본인
- 2) 배우자
- 3) 자녀
- 4) 부모
- 5) 기타 (\_\_\_\_\_)

D17. 귀 닥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소득원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근로소득 (급여, 임금 등)
- 2)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3) 가족·지인의 지원
- 4) 정부지원금·복지급여 (기초생활수급, 연금, 보조금 등)
- 5) 기타 (\_\_\_\_\_)
- 6) 현재 소득 없음

D18. 귀 닥의 현재 순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 금융자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퇴직연금 등
- 부동산자산: 주택, 토지, 상가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등

- 1) 순자산 없음 / 마이너스(부채 > 자산)
- 2) 0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3)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4)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5)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7) 5억 원 이상
- 8) 잘 모르겠다

### E. (공통설문) 심리/행동경제학 접근

※ 다음은 채무조정제도 이용하기 이전과 현재의 귀하의 생활 만족도 및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E01\_1. (채무조정제도(신복위, 법원 모두 해당) 이용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각 항목별 만족도 수준의 변화는? 아래 보기에서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매우 악화됨 | 다소 악화됨 | 변화 없음 | 약간 개선됨 | 매우 개선됨 |
|------------------------------|--------|--------|-------|--------|--------|
| 대인관계 만족(사회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가족관계 안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건강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동시간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동참여 의지 고취                   | ①      | ②      | ③     | ④      | ⑤      |
| 결혼 의향 증가<br>(기혼일 경우는 “변화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출산 의향 증가 (49세 이하에만)          | ①      | ②      | ③     | ④      | ⑤      |

**E01\_2. (채무조정제도(신복위, 법원 모두 해당) 미이용자 대상) 1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각 항목별 만족도 수준의 변화는? 아래 보기에서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매우 악화됨 | 다소 악화됨 | 변화 없음 | 약간 개선됨 | 매우 개선됨 |
|------------------------------|--------|--------|-------|--------|--------|
| 대인관계 만족(사회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가족관계 안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건강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동시간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동참여 의지 고취                   | ①      | ②      | ③     | ④      | ⑤      |
| 결혼 의향 증가<br>(기혼일 경우는 “변화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출산 의향 증가 (49세 이하에만)          | ①      | ②      | ③     | ④      | ⑤      |

**E02. 귀하께서는 향후 1~2년 안에 본인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1) 기대한다 (-> E02\_1로 이동)
- 2) 기대하지 않는다 (-> E02\_2로 이동)

**E02\_1. (E02=1 응답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소득 안정·추가 소득원 확보 (안정적 고용, 부업 등)
- 2) 부채 구조 개선 (월 변제금 감당 가능, 감면·이자조정 효과)
- 3) 지출·예산 관리 개선 (생활비 절감, 가계 흑자 전환)
- 4) 가족·지인·기관의 지원 (현금 지원, 돌봄 등)
- 5) 가계 여건 개선 (건강 회복, 부양 부담 완화, 주거·자산 안정)
- 6) 경기·금리 등 외부 환경 개선 기대
- 7) 기타: \_\_\_\_\_

**E02\_2. (E02=2 응답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소득·고용 불안정 (실직 위험, 불안정한 일자리 등)
- 2) 월 변제금 부담 과중 (상환 계획 자체가 무리라고 느껴서)
- 3) 감면 부족·고금리 지속으로 부담이 커서
- 4) 생활비·물가·주거비 상승으로 여력이 없어서
- 5) 건강 악화·부양 부담 증가 등 가계 사정 악화
- 6) 신용제한·금융 접근 곤란 (대출·카드 사용 제한 등)
- 7) 법적·제도적 문제 (채권자 분쟁, 압류·소송, 상담·정보 부족 등)
- 8) 기타: \_\_\_\_\_

**E03. 귀하께서 향후 3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주요 경제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당 되는 항목 모두 선택 가능)**

- 1) 채무 상환 완료
- 2) 자산 축적(저축·투자 등)
- 3) 신용 회복(신용접수·금융거래 정상화)
- 4) 창업·자영업 시작
- 5) 안정적인 직장·소득 확보 (추가 권장)
- 6) 기타 (\_\_\_\_\_)

**E04. “다음 문항은 돈을 지금 받는 것과, 조금 기다렸다가 더 큰 돈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E04\_1. 귀하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오늘 바로 10만원 받기
- 2) 한 달 뒤 11만원 받기

**E04\_2. 귀하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1년 뒤 10만원 받기
- 2) 1년 1개월 뒤 11만원 받기

E05.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일상적인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내가 하는 노력보다는 운이 성공을 결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만약 내가 열심히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미래가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앞으로도 나의 삶이 잘 될 것이라 확신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E06. 귀하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의 재정 상황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처럼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그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저축할 돈이 오래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한 달이 끝날 때 돈이 남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의 재정상태가 내 삶을 크게 좌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공과금·세금 납부가 부담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여윌돈(비상금, 저축)이 없어 늘 생활이 불안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교육을 포기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E07. 다음 문항들은 금융과 관련된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셔도 괜찮습니다.**

**E07\_1. 100만원을 연 2%의 복리 이자로 5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 원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 1) 102만원보다 적다
- 2) 정확히 102만원이다
- 3) 102만원보다 많다
- 4) 잘 모르겠다

**E07\_2. 물가가 매년 2% 오르고, 귀하의 소득은 매년 1% 오른다면, 1년 후에 귀하의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 1) 감소한다
- 2) 같다
- 3) 증가한다
- 4) 잘 모르겠다

**E07\_3. 한 회사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여러 회사 주식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 1) 맞다
- 2) 틀리다
- 3) 잘 모르겠다

**E07\_4. 100만원을 빌려 연 20% 이자를 내야 한다면, 1년 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1) 120만원
- 2) 200만원
- 3) 잘 모르겠다

**E07\_5. 시중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1) 오른다
- 2) 내린다
- 3) 변하지 않는다
- 4) 잘 모르겠다

본 설문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는 것이 낫겠다거나 자해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만약 응답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기관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24시간, 무료)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청소년전화 ☎ 1388(청소년·청년 전용)  
 응급상황 시 ☎ 112또는 119

E08.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  
 니다. 정답은 없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항목  | 현재(지난 2주 동안) |                     |           |          |
|---|--------------|---------------------|-----------|----------|
|   | 전혀<br>없음     | 여러날<br>동안<br>(1~6일) | 일주일<br>이상 | 거의<br>매일 |
|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br>없음   | ①            | ②                   | ③         | ④        |
|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 ①            | ②                   | ③         | ④        |
|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br>많이 잠   | ①            | ②                   | ③         | ④        |
|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 ①            | ②                   | ③         | ④        |
|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 ①            | ②                   | ③         | ④        |
|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br>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br>문에 나 자신이랑 내 가족이 불행하게<br>되었다는 느낌 | ①            | ②                   | ③         | ④        |
|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br>려움   | ①            | ②                   | ③         | ④        |
|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br>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br>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br>서성거림   | ①            | ②                   | ③         | ④        |
|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br>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br>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 ①            | ②                   | ③         | ④        |

출처: PHQ-9 © Pfizer Inc. All rights reserved. No permission required to reproduce,  
 translate, display, or distribute;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문항을 근거로  
 작성함

E09. 귀하가 지난 1년(12개월) 동안 가장 길게 지속된 연체가 있었던 시기를 떠올려주세요. 그중 가장 힘들었다고 느낀 달을 기준으로, 그달의 2주간 상태를 아래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현재(지난 2주 동안) |                     |           |          |
|---|--------------|---------------------|-----------|----------|
|   | 전혀<br>없음     | 여러날<br>동안<br>(1~6일) | 일주일<br>이상 | 거의<br>매일 |
|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 ①            | ②                   | ③         | ④        |
|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 ①            | ②                   | ③         | ④        |
|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 ①            | ②                   | ③         | ④        |
|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 ①            | ②                   | ③         | ④        |
|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 ①            | ②                   | ③         | ④        |
|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랑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 ①            | ②                   | ③         | ④        |
|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 ①            | ②                   | ③         | ④        |
|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 ①            | ②                   | ③         | ④        |

출처: PHQ-9 © Pfizer Inc. All rights reserved. No permission required to reproduce, translate, display, or distribute;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문항을 근거로 작성함

F. (공통설문) 정부정책 및 건강, 미래설계 등

F01. 다음에 열거된 정부의 청년 대상 부채 관련 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보기 | 해결방안        | 상세설명  |
|----|-------------|---|
| ①  | 재무역량강화교육    | 대규모 수업에 참여하여 소비, 저축, 자산, 대출, 신용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                             |
| ②  | 1:1 재무상담    | 재무설계 전문가가 1:1로 재무상태 진단, 재무목표 수립, 재무관리 지원                                      |
| ③  | 장학금 확대      | 장학금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확대  |
| ④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원  |
| ⑤  | 햇살론 유스      | 청년 대상 저금리로 대출 지원  |
| ⑥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 대상 저금리로 대출 지원   |
| ⑦  | 자산형성지원      | 저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자(인센티브)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 ⑧  | 긴급 현금 지원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내의 현금 1회 지원                      |
| ⑨  | 신용회복제도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생활자금 대출   |
| ⑩  | 법원 제도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

F02. 다음에 열거된 정부의 청년 대상 부채 관련 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이용하였던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해결방안        | 상세설명  |
|----|-------------|---|
| ①  | 재무역량강화교육    | 대규모 수업에 참여하여 소비, 저축, 자산, 대출, 신용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                             |
| ②  | 1:1 재무상담    | 재무설계 전문가가 1:1로 재무상태 진단, 재무목표 수립, 재무관리 지원                                      |
| ③  | 장학금 확대      | 장학금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확대  |
| ④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원  |
| ⑤  | 햇살론 유스      | 청년 대상 저금리로 대출 지원  |
| ⑥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 대상 저금리로 대출 지원   |
| ⑦  | 자산형성지원      | 저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자(인센티브)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 ⑧  | 긴급 현금 지원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내의 현금 1회 지원                      |
| ⑨  | 신용회복제도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생활자금 대출   |
| ⑩  | 법원 제도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

F03. 귀하께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가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취업·소득 지원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 2) 주거 지원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
- 3) 생활비 직접 지원 (현금·바우처 등)
- 4) 법률·채무조정 지원 (법률 대리인 비용,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 등)
- 5) 금융교육·재무상담 (수입·지출 관리, 금융 이해력 향상 등)
- 6) 심리·정서 지원 (심리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등)
- 7)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복지급여, 사회보장 서비스 정보 제공)
- 8) 기타: \_\_\_\_\_

**F04. 귀하가 이용해본 적 있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 주세요.**

- 1) 취업·소득 지원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 2) 주거 지원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
- 3) 생활비 직접 지원 (현금·바우처 등)
- 4) 법률·채무조정 지원 (법률 대리인 비용,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 등)
- 5) 금융교육·재무상담 (수입·지출 관리, 금융 이해력 향상 등)
- 6) 심리·정서 지원 (심리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등)
- 7)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복지급여, 사회보장 서비스 정보 제공)
- 8) 기타: \_\_\_\_\_

**F05. 귀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있나요?**

- 1) 예
- 2) 아니오

**F06.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다면, 누구(어디) 입니까? 모두 골라 주세요**

- 1) 가족이나 친인척
- 2) 친구나 지인
- 3) 공공기관
- 4) 온라인
- 5) 종교/복지단체
- 6) 기타 ( )

**F07.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면 왜 요청하지 못했나요?**

- 1) 말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 2)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 3) 자존심 상해서
- 4) 기타 ( )

**F08.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 1) 해당없음(-)중복응답 불가능)
- 2) 장애인
- 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4) 가족돌봄청년(장애,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 5) 한부모 가구
- 6) 북한이탈주민
- 7) 다문화가족 자녀
- 8)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 F09~F21 문항은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문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취약청년과 일반 청년 집단 간 응답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F0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또는 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 F09\_1로 이동)
- 2) 아니오 (-> F10으로 이동)
- 3)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F10으로 이동)

**F09\_1.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서
- 2) 주변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3) 혼자 가기 어려워서
- 4)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
- 5)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 6)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 7)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 8) 기타 ( )

**F10.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 F10\_1로 이동)
- 2) 아니오 (-> F11으로 이동)
- 3)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F11으로 이동)

**F10\_1.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서
- 2)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 3)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
- 4)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경제적 부담)
- 5)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 6) 기타 ( )

**F1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① 있다      ② 없다
-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 ① 있다      ② 없다

F12.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F13.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                             |   |   |   |   |   |   |   |   |   |  |
|-----------------------------|---|---|---|---|---|---|---|---|---|--|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매우 행복했다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F1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                                 |   |   |   |   |   |   |   |   |   |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F15.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 구분             | 갈등이 매우 많다 | 갈등이 많은 편이다 | 갈등이 없는 편이다 | 갈등이 거의 없다 |
|----------------|-----------|------------|------------|-----------|
| 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①         | ②          | ③          | ④         |
| 2) 부유층과 서민층    | ①         | ②          | ③          | ④         |
| 3) 수도권과 비수도권   | ①         | ②          | ③          | ④         |
| 4) 남성과 여성      | ①         | ②          | ③          | ④         |
| 5) 내국인과 외국인    | ①         | ②          | ③          | ④         |

F1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F17.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 |   |   |   |   |   |   |   |   |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 |  |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F18. 귀하는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   |         |   |   |   |   |   |   |   |   |                             |  |
|------------------------|---|---------|---|---|---|---|---|---|---|---|-----------------------------|--|
|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당사자가 자기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F19. 귀하의 의견은 다음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                          |   |         |   |   |   |   |   |   |   |   |         |  |
|--------------------------|---|---------|---|---|---|---|---|---|---|---|---------|--|
|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   |   |   |   |   |   |   |   |         |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매우 동의한다 |  |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F20.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연애           | ①          | ②       | ③    | ④       |
| 2) 결혼           | ①          | ②       | ③    | ④       |
| 3) 자녀 출산과 양육    | ①          | ②       | ③    | ④       |
| 4) 높은 학력수준      | ①          | ②       | ③    | ④       |
| 5) 내가 원하는 일자리   | ①          | ②       | ③    | ④       |
| 6)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 ①          | ②       | ③    | ④       |
| 7)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 8) 사회 기여        | ①          | ②       | ③    | ④       |
| 9) 명예와 권력       | ①          | ②       | ③    | ④       |

F21.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2)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 3)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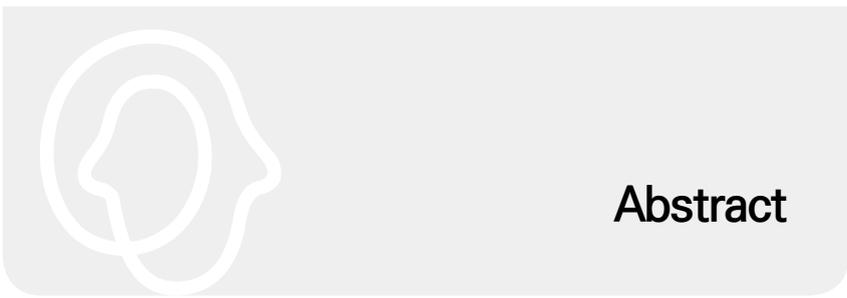
F2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께서는 향후 결혼계획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F23.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응답해 주시고,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1) 있다
- 2) 없다



## Abstract

### **Social Investment Effects of Social Security Policy**

#### **: Debt Restructuring Programs for Financially Vulnerable Youth**

Project Head: Na, WONHEE

Youth debt has increasingly evolved into a structural social risk intertwined with employment instability, housing burdens, and broader socioeconomic vulnera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ebt restructuring programs for financially vulnerable youth from a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Using comprehensive credit bureau data from Korea Credit Bureau (KoDATA), combined with survey data and expert interviews, the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conditions of youth and the effectiveness of debt adjustment programs. The results indicate that young people tend to have a higher prevalence of multiple loans and greater reliance on entry-level financial products such as student loans, unsecured credit, and housing-related loans. Youth also experienced a larger increase in delinquency rate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with mid-term delinquencies of one to three years particularly concentrated among them. Participation in debt restructuring programs was associated with improvements in employment status, income recovery prospects,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However, institutional limitations were also identified, includ-

ing limited accessibility to programs and insufficient post-program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responses to youth debt should shift from a reactive debt relief approach toward a preventive and recovery-oriented social investment framework. Key policy directions include establishing early monitoring systems for financially vulnerable youth, strengthening public legal support mechanisms, and standardizing debt restructuring procedures. In addition, integrated support systems linking employment services,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after debt restructuring are needed. Ultimately, a data-driven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should be developed to transform debt restructuring programs into effective recovery platforms that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reintegration of young people.

Key words: Financially Vulnerable Youth; Debt Restructuring Programs; Credit Recovery;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Youth Policy